

目 次

第1章 沿革 및 現況

I. 區 沿革 및 現況	35
1. 西大門區 沿革	35
2. 區政現況	37
II. 行政與件	40
1. 行政機構 및 人力	40
2. 財政與件	41
III. 議會 沿革 및 現況	43
1. 地方議會의 意義	43
2. 우리나라 地方議會의 沿革	43
3. 議會現況	44

第2章 議會 運營

I. 本議會 運營	49
1. 本議會 · 集會 · 會期	49
2. 構成	50
3. 案件處理	51
II. 委員會 運營	74
1. 議會運營委員會	74
2. 總務委員會	84

3. 市民建設委員會	139
4. 特別委員會	187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I. 區政質問	253
1. 意義	253
2. 現況	253
3. 質問 및 答辯	254
II. 行政事務 監査	338
1. 議會運營委員會	338
2. 總務委員會	340
3. 市民建設委員會	356
III. 民願處理	370
1. 現況	370
2. 請願處理	371
3. 陳情處理	373
IV. 海外 訪問 視察 및 세미나	375
1. 議員 海外訪問視察	375
2. 議員 세미나	377

附 錄	379
-----------	-----

제1장 연혁 및 현황부터 제3장 기타 분야별 활동까지는 제2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沿革 및 現況 (1997.1.1~1998.6.30)

- I. 區 沿革 및 現況
- II. 行政與件
- III. 議會 沿革 및 現況

I. 第1章 區 沿革 및 現況

년 대	연 혁
1948. 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연희면 18개리 (은평면 11리, 연희면 7리 면적 46km²)를 편입 ○ 은평출장소 설치
1950. 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가 등으로 개편됨과 동시 홍제외리를 홍은동으로 개칭
1955. 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제(洞制) 실시 → 53개동
1962.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신동 신설 → 54개동
1964.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고산동과 대현동 일부 지역이 마포구에 편입되고 마포구 아현동 일부지역이 서대문구로 편입 → 53개동
1970. 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명칭과 관할구역 변경 (53개동 → 41개동)
1973.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관동 신설 (41개동 → 42개동)
1975.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명칭과 관할구역 변경 (42개동 → 37개동)
1977.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가좌2동, 증산동 신설 (37개동 → 39개동)
1978.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천동 폐동
1979.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구 중 녹번동, 불광동, 갈현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동, 역촌동, 신사동, 증산동, 진관내동, 구파발동, 수색동 일원을 은평구에 편입 (39개동 → 23개동) ○ 은평출장소 폐지
198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은4동이 홍은2동에 편입 (23개동 → 22개동)

I. 沿革 및 現況



2. 區政 現況

가. 일반현황

1) 위 치

구청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 명	극 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68-6	동단	서대문구 마근동 315-5	북위 37° 33' 33" 012 동경 126° 58' 08" 022	동서간 6.154km
	서단	서대문구 북가좌동 254-1	북위 37° 34' 23" 761 동경 126° 54' 04" 616	
	남단	서대문구 창천동 30-16	북위 37° 33' 08" 408 동경 126° 56' 09" 822	남북간 6.275km
	북단	서대문구 홍은동 산1-70	북위 37° 33' 36" 28 동경 126° 56' 08" 225	

2) 면 적

총 면 적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녹 지 지 역
17.6km ² (100%)	15.62km ² (88.8%)	0.25km ² (1.4%)	1.73km ² (9.8%)

I. 第1章 區 沿革 및 現況

3) 동별 행정조직 및 인구 현황

(’98. 6. 30 현재)

동 명	면 적	행 정 조 직		세 대 수	인 구 수
		통	반		
22개동	17.60	576	4,356	123,519	354,383
충 정 로 동	0.51	22	146	3,557	9,585
천 연 동	0.45	29	219	5,285	14,559
현 저 동	0.52	6	40	861	2,300
북아현1동	0.28	21	152	4,351	11,790
북아현2동	0.18	15	108	3,077	8,513
북아현3동	0.62	26	189	5,671	16,380
대 신 동	2.02	23	130	3,450	8,340
창 천 동	0.61	22	154	4,880	11,853
연 회 1 동	0.90	27	202	5,682	15,994
연 회 2 동	0.58	25	180	4,673	13,689
연 회 3 동	1.57	17	133	5,132	12,602
홍 제 1 동	0.64	26	188	5,573	15,996
홍 제 2 동	0.59	22	168	4,509	13,004
홍 제 3 동	0.82	37	260	7,207	20,891
홍 제 4 동	1.06	17	112	3,309	9,742
홍 은 1 동	0.38	22	142	3,879	12,045
홍 은 2 동	1.22	39	278	7,440	22,559
홍 은 3 동	2.07	38	337	10,090	29,989
남 가 좌 1 동	0.49	37	281	7,396	20,922
남 가 좌 2 동	0.79	37	332	9,250	27,626
북 가 좌 1 동	0.54	28	242	7,002	21,268
북 가 좌 2 동	0.85	40	363	11,250	34,337

I. 沿革 및 現況

..... ▲

4) 주요시설

- 공공기관 - 88개기관(구·동23, 파출소 30, 소방서4, 우체국16, 기타15)
- 교육기관 - 51개교(대학8, 고등학교10, 중학교15, 초등학교18)
- 의료시설 - 629개소(종합병원2, 병·의원299, 약국 등 기타 328)
- 문화재 - 16개소(사적6, 유형3, 무형6, 기념물1)
- 복지시설 - 188개소(도서관1, 사회복지6, 경로당59, 보육시설122)
- 도시기간시설
 - 도로연장 290km (도로율 17.6%)
 - 도로포장 2.28km² (포장률 93%)
 - 상수도 933.5km (보급률 100%)
 - 하수도 398km (보급률 100%)
 - 지하철 8.2km (2,3,5호선)
 - 도시가스보급 83,451가구 (보급률 67%)

II. 行政與件

1. 行政機構 및 人力

- 기 구 - 1실 5국 1소 3담당관 27과 22동 143계
- 인 력 - 정원 1,451명, 현원 1,44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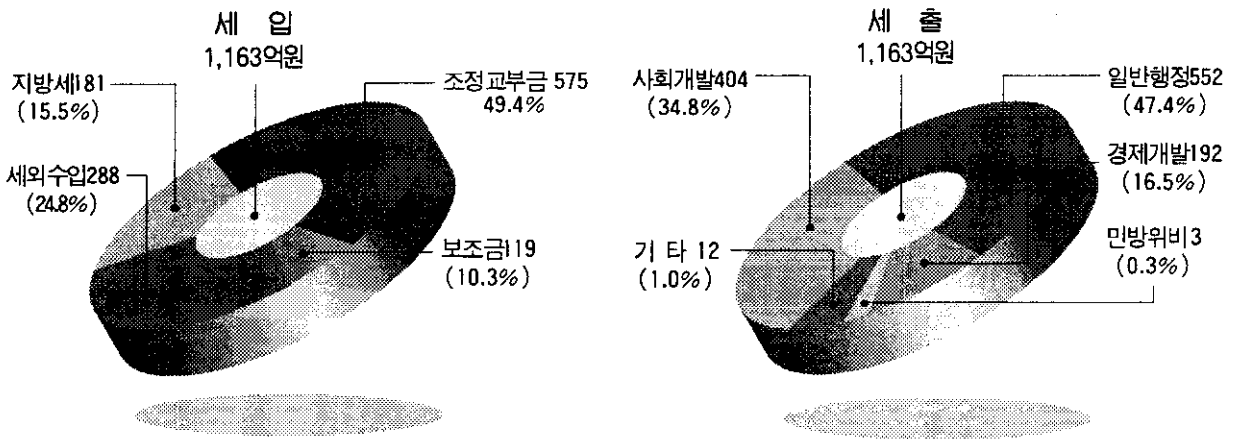
(’98. 6. 30 현재)

구 분		계	행정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비고
구	정 원	877	334	125	13	258	140	7(전문)
	현 원	861	371	129	14	269	72	6(전문)
동	정 원	465	395	22	4	22	22	
	현 원	476	346	15	6	43	66	
보건소	정 원	83	7	51		20		5(의사)
	현 원	81	7	50		17	2	5(의사)
구의회	정 원	26	11		8	7		
	현 원	26	12		8	6		

2. 財政與件

1998년도 최종예산규모는 1,27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163억원(91%), 특별회계가 111억원(9%)으로 편성되었다

1)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규모는 아래 도표와 같다



2)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총 3종으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14억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7억원), 주차장 특별회계(90억원)로 구분되어 있으며, 1998회계년도 규모는 111억원이다.

3) 연도별 예산규모 - 최근 5년

(단위 : 억원)

연도별	'94	'95	'96	'97	'98
계	747 (4.2%)	852 (14.0%)	966 (13.4%)	1,117 (15.6%)	1,274 (14.0%)
일반회계	698	781	897	1,040	1,163
특별회계	49	71	69	77	111

()은 증가율

I. 第1章 區沿革 및 現況

□ '98 자치구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구별	총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98 예산	'97 예산	증감 (%)	'98 예산	'97 예산	'98 예산	'97 예산
계	3,389,241	351,945	11.05	3,022,244	2,739,394	366,797	312,551
종로	153,165	134,939	13.51	126,850	110,615	26,315	24,324
중구	143,531	144,072	-0.38	124,327	124,375	19,204	19,697
용산	125,400	111,257	12.71	110,560	100,622	14,840	10,635
성동	124,189	112,881	10.02	108,827	100,706	15,362	12,175
광진	112,670	103,567	8.97	100,102	96,896	12,568	6,671
동대문	148,513	123,332	20.42	133,883	108,200	14,630	15,132
중랑	120,927	117,143	3.23	108,694	106,465	12,223	10,678
성북	154,378	129,447	19.26	143,395	120,129	10,983	9,318
강북	102,781	95,424	7.71	94,438	88,712	8,343	6,712
도봉	93,735	85,248	9.96	89,674	81,019	4,061	4,157
노원	156,699	136,110	15.13	135,214	117,909	21,485	18,201
은평	128,645	106,750	20.51	116,228	96,700	12,417	10,050
서대문	127,433	111,696	14.09	116,300	103,981	11,133	7,715
마포	152,697	130,663	16.86	136,592	116,087	16,105	14,576
양천	116,437	107,977	7.84	111,974	103,500	4,463	4,477
강서	140,061	120,426	16.30	121,755	105,336	18,306	15,090
구로	117,475	106,032	10.79	108,299	96,786	9,176	9,246
금천	90,634	79,901	13.43	86,246	75,898	4,388	4,003
영등포	141,758	129,961	9.08	109,258	103,126	32,500	26,835
동작	119,158	108,272	10.05	109,368	93,881	9,790	14,391
관악	132,749	117,332	13.14	119,910	107,001	12,839	10,331
서초	146,912	143,125	2.65	125,061	123,686	21,851	19,439
강남	258,342	237,863	8.61	230,036	219,126	28,306	18,737
송파	159,759	150,590	6.09	148,609	139,439	11,150	11,151
강동	121,193	107,937	12.28	106,844	99,127	14,349	8,810



Ⅲ. 議會 沿革 및 現況

1. 地方議會의 意義

지방의회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근대적인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한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2. 우리나라 地方議會의 沿革

조선시대 지방행정에서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일종의 대의제도가 존재하였다. 제약적이거나 주민의 의견을 지방행정에 반영하려는 제도가 있었는데, 고려시대의 유향소를 발전시킨 것으로 행정기관의 일부로 설치된 향청은 민선제와 명예직제로 구성되어 지방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오늘날의 지방의회와는 동일시 할 수 없다.

갑오경장이후 1895년 11월 향회규정과 향약별무규정을 공포하여 각 지역단위로 주민이 선출한 공선인(公選人)등으로 구성된 향회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방주민이 당해 지방행정단위의 공공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향회의 구성이나 역할수행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909년 한일합방이후 일제시대에 있어서 지방제도는 형식상으로 어느정도 지방자치와 비슷한 제도가 많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식민통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시대의 지방제도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 당시 현재의 의회기능을 수행한 것은 도회, 부회, 읍회이다.

1933년 4월 1일부터 도제(道制)가 실시되었는데 도(道)라는 집행기관에 대응하는 의결기관으로 도회(道會)가 구성되었으며, 부제(府制)는 오늘날의 시(市)와 같은 행정구역이라 할 수 있는데 1930년에 의결기관으로서 부회(府會)를 설치하였으며, 1931년 지방제도의 개정으로 읍

면제(畵面制)가 시행되면서 그 지역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결기관인 읍회(畵會)를 설치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현대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대의민주제 원리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시행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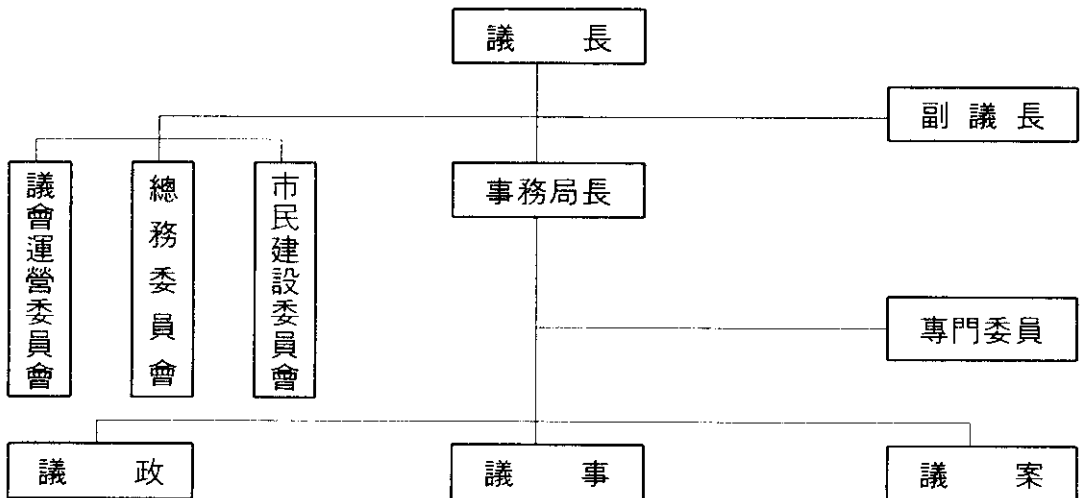
제1대 지방의회는 1952년 4월과 5월에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와 도의회의원 선거가 각각 실시됨으로써 구성되었다. 제2대 지방의회(1956-1960)는 1956년 8월에 지방의원선거가 실시됨으로써 구성되었으며, 1960년 12월에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제3대 지방의회(1960-1961)가 구성·운영되다가 1961년 5.16 혁명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그후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어 1991년 3월 26일에 시·군·구의회의원선거가 동년 6월 20일에 시·도의회의원선거가 각각 실시되어 제4대지방의회(1991-1995)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1995년 7월부터는 제5대 지방의회(1995-1998)가 구성되었고, 제6대 지방의회가 1998년 7월에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에서도 관내 22개 동에서 당선된 29명의 의원으로 1991년 4월 15일 제1대 서대문구의회를 개원하였으며, 제2대 의회가 1995. 6. 27 동시선거에 의거 1995. 7. 1 구성하였으며, 제3대 의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가 개정되어 의원수가 축소됨에 따라 관내 22개동에서 당선된 21명의 의원으로 1998. 6. 4 동시선거에 의거 1998. 7. 1부터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다.

3. 議會 現況

가. 組織



Ⅲ. 議會沿革 및 現況



나. 構 成

- 議 員 : 총 27명
- 構 成
 - 議 長 : 林在鮮 議員
 - 副議長 : 曹甲鉉 議員
 - 常任委員會
 - 議會運營委員會 (9명)
 - 總務委員會 (13명)
 - 市民建設委員會 (13명)

다. 事務局 職員 現況

('98. 6. 30 現재)

구분	계	일 반 직					별 정 직				기 능 직				
		4급	6급	7급	8급	9급	5급	7급	8급	9급	타자	운전	방호	표결	위생
정원	26	1	3	3	2	2	2	1	4	1	2	2	2	1	
현원	26	1	3	5	3		2	2	2	2	1	2	1	1	1
과부족				+2	+1	△2		+1	△2	+1	△1		△1		+1

라. 議會廳舍 現況

- 위 치 : 서대문구 현저동 산5-5
- 시설물 : 약 345평

(단위 : 평)

3층 (201)	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	제 1 회의실	제 2 회의실	사무국	사 무 국장실	전 문 위원실	자료실	방 호 원실	복 도 기 타
	13.8	11	4.6	23	23	32	11	8.6	9	4	61
4층 (143)	본 회의장		방청석		위원장실(3)		의원휴게실		복도, 기타		
	63		10		9		16		45		



議會 運營 (1997.1.1~1998.6.30)

- I. 本會議 運營
- II. 委員會 運營

第 2 章 議 會 運 營

I. 本會議 運營

1. 本會議 · 集會 · 會期

가. 本會議

- 본회의는 당해 地方議會의 의원 전원으로 構成되는 회의체이며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지방議會는 定期會와 臨時會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며 議會運營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 本會議는 在籍議員 1/3이상 出席으로 개의되며, 議會의 의사를 決定하는 최고 議決기관이다.
- 議會運營委員會가 있는 의회의 경우 本會議 개의시간은 本會議 의결 또는 議長이 동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동위원회가 없는 의회의 경우는 本會議 의결 또는 議長이 정하며 이를 變更할 때도 같다.
- 本會議에서 발언할 때에는 미리 議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質疑, 補充發言, 議事進行發言, 身上 發言時間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集 會

- 地方議會는 항상 活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 活動하게 되는데 議會고유의 권능을 行事하기 위하여 일정한 場所에 모이는 行爲를 말한다. 會期期間에는 本會議와 위원회가 活動하게 되는데 委員會는 閉會期間에도 本會議 議決, 在籍議員 1/3이상의 요구, 의장 및 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최하여 案件을 審査·議決할 수 있다.
定期會와 臨時會를 합한 연간 總會期の 일수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 會 期

- 定期會는 매년 11월20일(광역)과 11월25일(기초)에 정기적으로 集會하지만, 臨時會는 地方自治團體의 장이나, 在籍議員 1/3이상의 要求가 있을때 議長이 15일 이내에 臨時會를 召集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 會期는 定期會의 경우 35일 이내, 臨時會의 경우 45일 이내로 하며, 定期會와 臨時會를 합한 연간 總會期の 일수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構 成

第2代 前半期 議會가 '95. 7.19 構成하여 '97. 1.18일 滿了되었고, 후반기 의회가 '97. 1.19 構成하여 '98. 6.30 滿了되었으며 議長단 및 議員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區 分		議 長 團		議 員	備 考
半期別	期 間	議 長	副議長		
제2대 (후반기)	'97. 1.19 ~ '98. 6.30	임재선 의 원	조갑현 의 원	송영우 기창표 김동덕 이기봉 정현철 전성장 김종섭 김종철 김정현 정혜연 이석문 김영일 정연식 이진수 이성배 최광진 박덕균 조재구 강석준 정일출 권재일 홍성덕 오환인 허준구 정일수 의원	총 27명

I. 本會議 運營

3. 案件處理

가. 現 況

區 分	會議 日數	計	條 例			豫算案	決議案 承認案	請願	陳情	其他
			制定	改正	不決					
計	109	208	8	56	12	6	11	1	12	102
臨 時 會	제48회	1	3							3
	제49회	1	5						1	4
	제50회	9	21	2	11				2	6
	제51회	10	29		1	3		4	1	20
	제52회	7	17		9	1		1		6
	제53회	9	13				1		2	10
	제54회	11	29		15	3	1	2		8
	제55회	4	11	2	6					3
	제57회	6	10		3	1		1	1	4
	제58회	13	20		2	1			4	13
	제59회	9	12	2	6	1		1		2
제60회	1	3		1					2	
定期會	제56회	28	35	2	2	2	4	2	2	21

1) 集會現況

회기별	집회공고일	개회일	폐회일
제48회 임시회	'96. 12. 31	'97. 1. 8	'97. 1. 8
제49회 임시회	'97. 1. 15	'97. 1. 21	'97. 1. 21
제50회 임시회	'97. 2. 13	'97. 2. 19	'97. 2. 27
제51회 임시회	'97. 4. 8	'97. 4. 19	'97. 4. 28
제52회 임시회	'97. 6. 16	'97. 6. 24	'97. 6. 30
제53회 임시회	'97. 7. 14	'97. 7. 23	'97. 7. 31
제54회 임시회	'97. 9. 12	'97. 9. 20	'97. 9. 30
제55회 임시회	'97. 10. 29	'97. 11. 4	'97. 11. 7
제56회 정기회	'97. 11. 19	'97. 11. 25	'97. 12. 22
제57회 임시회	'98. 1. 13	'98. 1. 19	'98. 1. 24
제58회 임시회	'98. 3. 5	'98. 3. 11	'98. 3. 23
제59회 임시회	'98. 4. 28	'98. 5. 4	'98. 5. 12
제60회 임시회	'98. 6. 22	'98. 6. 29	'98. 6. 29

第2章 議會運營

2) 會期別 開議日數와 會議時間

○ 本會議

會議別	會期	開議日數	總會議時間
제48회 임시회	1	1	6시간 59분
제49회 임시회	1	1	6시간 30분
제50회 임시회	9	2	2시간 57분
제51회 임시회	10	7	12시간 02분
제52회 임시회	7	2	1시간 28분
제53회 임시회	9	3	1시간 07분
제54회 임시회	11	4	16시간 05분
제55회 임시회	4	2	시간 44분
제56회 정기회	28	10	14시간 31분
제57회 임시회	6	2	시간 53분
제58회 임시회	13	6	8시간 35분
제59회 임시회	9	2	1시간 08분
제60회 임시회	1	1	시간 08분

○ 常任委員會

委員會 會期別	議會運營委員會		總務委員會		市民建設委員會		計	
	개의 일수	회의 시간	개의 일수	회의 시간	개의 일수	회의 시간	개의 일수	회의 시간
제48회 임시회	2	1시간36분					2	1시간36분
제49회 임시회	3	2시간47분	1	시간06분	1	시간12분	5	3시간05분
제50회 임시회	4	4시간15분	6	19시간33분	6	16시간 분	16	39시간48분
제51회 임시회	3	2시간23분	1	1시간27분	1	3시간26분	5	7시간16분
제52회 임시회	2	1시간08분	4	2시간42분	4	1시간22분	10	5시간12분
제53회 임시회	2	1시간35분	4	7시간22분	4	6시간26분	10	15시간23분
제54회 임시회	3	시간46분	5	15시간50분	5	15시간19분	13	31시간55분
제55회 임시회	2	시간25분	2	1시간55분	2	1시간51분	6	4시간11분
제56회 정기회	4	3시간36분	13	52시간26분	14	53시간31분	31	109시간33분
제57회 임시회	3	1시간26분	4	4시간49분	4	8시간45분	11	15시간 분
제58회 임시회	1	시간34분	5	12시간49분	5	5시간10분	11	18시간33분
제59회 임시회	1	시간06분	5	3시간23분	5	1시간25분	11	4시간54분

I. 本會議 運營



3) 會期別 集會要求 現況

회기별	집회 공고일	집회 요구자	집회요구 이유
제48회 임시회	'96. 12. 31	오환인의원의 21인	의장, 부의장선거외 4건
제49회 임시회	'97. 1. 15	전성장의원의 10인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외 1건
제50회 임시회	'97. 2. 13	이성배의원의 9인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외 13건
제51회 임시회	'97. 4. 8	이성배의원의 9인	구정질문외 3건
제52회 임시회	'97. 6. 16	이성배의원의 9인	결산검사위원선임외 11건
제53회 임시회	'97. 7. 14	이성배의원의 9인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4회 임시회	'97. 9. 12	이성배의원의 9인	구정질문 및 구정업무보고 청취외 20건
제55회 임시회	'97. 10. 29	이석문의원의 10인	직무발명보상개정조례안의 7건
제56회 정기회	'97. 11. 19	지방자치법 제38조	'97년도 정기회
제57회 임시회	'98. 1. 13	최광진의원의 8인	지명위원회개정조례안의 5건
제58회 임시회	'98. 3. 5	박덕균의원의 9인	구정질문 및 결산검사위원선임
제59회 임시회	'98. 4. 28	정혜연의원의 8인	'98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9건
제60회 임시회	'98. 6. 22	오환인의원의 9인	의회위원회개정조계안

○ 집회 요구자별 현황

('97. 1. 1 ~ '98. 6.30)

요 구 자	횟 수	비 고
의 원	12회	임시회
지방자치법 제38조	1회	정기회
계	13회	

第2章 議會 運營

4) 議會 運營 現況

○ 本會議

개 회 회 수			개 회 일 수			처 리 안 건			
계	정기회	임시회	계	정기회	임시회	계	조례안	예산안	기타안
13	1	12	109	28	81	208	76	6	126

○ 委員會

상 임 위 원 회			
계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162회	30회	50회	51회

특 별 위 원 회					
예산결산	의사당건립	조례정비	일반폐기물	재해대책	재정자립 발전
2회	4회	6회	3회	3회	1회

특 별 위 원 회				
윤리특위	징계자격	주민용신문조사	주차장위탁조사	홍제3,4구역조사
5회	3회	1회	2회	1회

I. 本會議 運營



○ 特別委員會

委員會 會期別	예산결산		조례정비		일반폐기물		재해대책	
	개의 일수	회의 시간	개의 일수	회의 시간	개의 일수	회의 시간	개의 일수	회의 시간
제50회임사회		시간 분	1	시간45분	1	시간11분	1	시간31분
제51회임사회		시간 분	5	5시간46분	4	3시간12분	6	4시간15분
제52회임사회		시간 분	3	3시간35분	3	시간38분	2	시간40분
제53회임사회	3	2시간53분	3	4시간59분		시간 분		시간 분
제54회임사회		시간 분	3	7시간09분		시간 분		시간 분
제55회임사회		시간 분	1	시간34분		시간 분		시간 분
제56회정기회	5	12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委員會 會期別	의사당건립		윤리특위		재정자립		징계자격	
	개의 일수	회의 시간	개의 일수	회의 시간	개의 일수	회의 시간	개의 일수	회의 시간
제49회임사회	1	시간42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제50회임사회	1	시간45분	2	시간47분		시간 분		시간 분
제51회임사회		시간 분	1	시간17분	3	1시간59분		시간 분
제52회임사회		시간 분	1	시간08분		시간 분		시간 분
제53회임사회		시간 분	1	시간37분		시간 분		시간 분
제54회임사회	1	시간50분	3	1시간13분		시간 분	2	1시간15분
제55회임사회	1	시간19분		시간 분		시간 분	2	시간18분
제56회정기회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1	시간 8분

委員會 會期別	주민용신문조사		주차장위탁조사		홍제3,4구역조사		비 고
	개의 일수	회의 시간	개의 일수	회의 시간	개의 일수	회의 시간	
제54회임사회		시간 분	2	시간43분		시간 분	
제55회임사회	7	2시간18분	5	8시간23분		시간 분	
제57회임사회		시간 분		시간 분	2	시간51분	

第2章 議會運營

나. 主要案件 處理內容

1) 本會議(第48回 ~ 第60回)

會議名	會 期	次數	主 要 內 容	備考
제48회 임시회	'97. 1. 8 (1일간)	제1차 1. 8 (수)	1. 第48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期 決定의件 - 회기결정 : '97.1. 8 (1일간) 2. 議長·副議長選舉 - 의 장 : 임재선 의원 - 부의장 : 조갑현 의원 3. 第48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件 - 서명의원 : 김동덕, 이기봉 의원	
제49회 임시회	'97. 1.21 (1일간)	제1차 1.21 (화)	1. 第49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期 決定의件 - 회기결정 : '97. 1.21 (1일간) 2. 常任委員會委員 選任의 件 - 의회운영위원회 : 정현철, 김종철, 정혜연, 이석문, 정연식, 이성배, 정일출, 권재일, 정일수 의원(9명) - 총무위원회 : 송영우, 기창표, 이기봉, 전성장, 김종철, 김정현, 정혜연, 조갑현, 이석문, 박덕균, 조재구, 정일출, 권재일의원(13명) - 시민건설위원회 : 김동덕, 정현철, 김종섭, 김영일, 정연식, 이진수, 이성배, 최광진, 강석준, 홍성덕, 오환인, 김평락, 허준구, 정일수 의원 (14명) 3. 常任委員會 委員長 選舉 - 의회운영위원장 : 정연식 의원	

I. 本會議 運營

會議名	會 期	次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49회 임사회	'97. 1.21 (1일간)	제1차 1.21 (화)	- 총무위원장 : 기창표 의원 - 시민건설위원장 : 오환인 의원 4. 第49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件 - 서명의원 : 정현철, 전성장 의원	
제50회 임사회	'97. 2.19 ~ '97. 2.27 (9일간)	제1차 1.19 (수)	1. 第50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期 決定의件 - 회기결정 : '97.2.19~2.27(9일간) 2. 1997년도區政主要業務報告의件 - 보고자 : 기획실장 금동영 - 보고내용 : 구정현황과 주요시책사업 3. 第50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件(의장제의) - 서명의원 : 김종섭, 김종철 의원 4. 西大門區議會議員辭職의件 - 사직의원 : 김평락 의원 5. 休會의件 - 본회의 휴회기간 : '97.2.20~2.26	
		제2차 2.27 (목)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위원회조례중 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행정기구설치조례 중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재정계획심의 위원회조례중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행정법규상담실 조례중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務員직무발명 보상조례중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토지평가위원회 운영條例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第2章 議會運營

會議名	會期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50회 임사회	'97. 2.19 ~ '97. 2.27 (9일간)	제2차 2.27 (목)	7. 서울特別市西大門區稅감면條例中改正 條例案 8. 서울特別市西大門區구유재산관리조례 중改正條例案 9. 서울特別市西大門區광고게재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10. 서울特別市西大門區환경기본조례 제정안 11. 서울特別市西大門區건축조례개정 條例案 12. 서울特別市西大門區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운영에 관한조례안 13. 서울特別市西大門區도시가스사업기금 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4. 마포로5구역6지구再開發區域變更 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件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51회 임사회	'97. 4.19 ~ '97. 4.28 (10일간)	제1차 4.19 (토)	1. 第51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期 決定의件 - 회기결정 : '97.4.19~4.28(10일간) 2. 第51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件(의장제의) - 서명의원 : 김정현, 정혜연 의원 3. 倫理特別委員會運營期間연장承認의件 - 중간보고자 : 정연식 특위위원장 - 표결결과 : 부결(과반수 미달) 4. 條例整備特別委員會運營計劃承認의件 - 중간보고자 : 전성장 특위위원장 - 기간연장 : '97.4.21~9.21(5월간) 5. 一般廢棄物處理對策特別委員會運營 計劃承認의件 - 중간보고자 : 김정현 특위위원장	(원안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I. 本會議 運營

會議名	會 期	次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51회 임사회	'97. 4.19 ~ '97. 4.28 (10일간)	제1차 4.19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연장 : '97.4.19~7.18(3월간) 6. 災害對策特別委員會運營計劃承認의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보고자 : 이석문 특위간사 - 기간연장 : '97.4.19~7.20(3월간) 7. 特別委員會재구성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특별위원회 : 정연식, 이성배, 정혜연, 김동덕, 박덕균, 이석문, 최광진 의원 (7명)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전성장, 이기봉, 정일출, 박덕균, 김종섭, 허준구, 김종철, 조재구, 김영일 의원 (9명) - 일반폐기물처리특별위원회: 김정현, 김동덕, 정혜연, 전성장, 이진수, 정일수, 송영우, 정일출, 권재일 의원 (9명) -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 강석준, 김종섭, 김동덕, 이진수, 권재일, 이성배, 최광진, 홍성덕, 이기봉 의원 (9명) 8. 財政自立發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자 : 이성배 의원 - 구성의원 : 이성배, 정혜연, 김종섭, 최광진, 이석문, 박덕균, 김동덕, 김정현, 정일수 의원 (9명) 9.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일자 : '97.4.23~4.25(3일간) - 출석장소 : 본회의장 - 출석대상 :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각 국장, 보건소장, 각 담당관 및 과장 	(원안가결)
		제2차 4.21 (월)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윤리강령 채택의건	

第2章 議會運營

會議名	會期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51회 임사회	'97. 4.19 ~ '97. 4.28 (10일간)	제2차 4.21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설명자 : 이성배 특위간사 - 의결 결과 : 원안채택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報告廳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설명 : 박문규 시민국장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運營計劃報告廳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설명 : 박문규 시민국장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運用計劃報告廳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설명 : 박문규 시민국장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도시가스사업기금 運營計劃報告廳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설명 : 박문규 시민국장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중소기업육성기금 運營計劃報告廳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설명 : 박문규 시민국장 	
		제3차 4.22 (화)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경영투자사업기금 運用計劃報告廳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설명 :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災害對策기금운용 計劃報告廳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설명 : 전원배 건설국장 	
		제4차 4.23 (수)	1. 區政에 관한質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의원 : 홍성덕, 전성장, 이석문, 김동덕, 기창표 의원 - 답변자 : 이정규 구청장 - 보충답변 : 최홍진 도시정비국장 	
		제5차 4.24 (목)	1. 區政에 관한質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의원 : 이진수, 이성배, 정혜연, 오환인, 김종섭 의원 	

I. 本會議 運營



會議名	會 期	次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51회 임사회	'97. 4.19 ~ '97. 4.28 (10일간)	제5차 4.24 (목)	- 답 변 자 : 옥유영 부구청장 최홍진 도시정비국장 전원배 건설국장	
		제6차 4.25 (금)	1. 區政에 관한 質問 - 질문의원 : 권재일, 최광진, 박덕균, 정일수, 강석준, 정일출의원 - 답 변 자 : 금동영 기획실장 박문규 시민국장 전원배 건설국장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민원심의委員會 條例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3. 弘濟3區域內일부토지제척요구請願 (원안가결) 4. 연세대 학교관내道路通行에 대한 교통 요금징수조례의 퇴촉구決議案 (원안가결) 5. 經濟살리기運動推進촉구決議案 (원안가결)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 재정자립발전特別 委員會運營計劃案 (원안가결) 7. 地方議會 비교방문結果報告의件 - 보 고 자 : 유인물로 대치 ※ 3개 상임위원회	
제52회 임사회	'97. 6.24 ~ '97. 6.30 (7일간)	제1차 6.24 (화)	1. 第52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期 決定의件 - 회기결정 : '97.6.24~6.30(7일간) 2. 第52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件 - 서명의원 : 이석문, 김영일 의원 3. 休會의件 - 기간 : '97. 6.25~6.29(5일간)	
		제2차 6.30 (월)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務員복무 條例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第2章 議會運營

會議名	會期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52회 임사회	'97. 6.24 ~ '97. 6.30 (7일간)	제2차 6.30 (월)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稅감면條例中改正 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구유재산관리條例中 改正條例案 4. 1997年度區有財産관리계획변경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공인條例中改正 條例案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무허가건물정비사업 에대한보상금지금條例中改正條例案 7. 서울特別市西大門區노인복지기금설치및 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8.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권한위임條例中 改正條例案 9. 서울特別市西大門區교통안전대책委員會 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 서울역-西大門3區域제1지구도심재개발 구역변경지정에대한意見聽取案 1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에出席하여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12.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윤리특별委員會 構成決議案 - 위원선임 : 조재구, 김종섭, 정혜연, 김종철, 김동덕, 최광진, 이기봉 의원(7명) 13. 1996年度決算檢査委員선임의견 - 위원선임 { 의원 : 허준구 공인회계사 : 서명원 전직공무원 : 김영찬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53회 임사회	'97. 7.23 ~ '97. 7.31 (9일간)	제1차 7.23 (수)	1. 第53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期決定 의件 - 회기결정 : '97.7.23~7.31(9일간)	

I. 本會議 運營

會議名	會 期	次 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53회 임사회	'97. 7.23 ~ '97. 7.31 (9일간)	제1차 7.23 (수)	2. 1997年度第1回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 제안설명 : 금동영 기획실장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선임의件 - 위원선임 : 이기봉, 권재일, 이석문, 정일출, 박덕균, 이진수, 김종섭, 정일수, 김영일, 최광진, 이성배 의원(11명) 4. 第53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件 - 서명의원 : 정연식, 이진수 의원 5. 休會의件 - 기간 : '97. 7.24~7.28(5일간)	
		제2차 7.29 (화)	1. 西大門區刑務所역사관개관추진사항 報告聽取의件 - 제안설명 : 금동영 기획실장	
		제3차 7.30 (수)	1. 一般廢棄物處理對策特別委員會活動 報告書 채택의件 - 제안설명: 김정현 폐기물특위위원장 2. 災害對策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 채택 의件 - 제안설명 : 이석문 재해특위간사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4차 7.31 (목)	1. 1997年度第1回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2. 1997年度區有財産管理計劃변경안 3. 倫理特別委員會運營計劃案 - 제안설명 : 조재구 윤리특위위원장	(수정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제54회 임사회	'97. 9.20 ~ '97. 9.30 (11일간)	제1차 9.20 (토)	1. 第54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期 決定의件 - 회기결정 : '97.9.20~9.30(11일간)	

第2章 議會運營

會議名	會 期	次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54회 임사회	'97. 9.20 ~ '97. 9.30 (11일간)	제1차 9.20 (토)	2. 條例整備特別委員會運營結果報告및活動 期間연장承認의件 - 제안설명 : 전성장 조례특위위원장 - 기간연장 : '97.9.22~11.24(2월간) 3.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 출석일자 : '97.9.25~9.26(2일간) - 출석장소 : 본회의장 - 출석대상 : 구청장,부구청장, 기획실장, 각 국장, 보건소장, 각 담당관 및 과장 4. 西大門區駐車場委託管理에관한실태 調査特別委員會구성決議案 - 위원구성 : 김동덕, 최광진, 김종섭, 김영일, 이진수, 이성배, 허준구 의원 (7명)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住民用新聞購讀에 대한행정사무調査要求案 - 위원구성 : 박덕균, 이기봉, 이석문, 정혜연, 김정현, 정일출, 권재일 의원 (7명) 6. 第54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件 - 서명의원 : 이성배, 최광진 의원	(원안가결)
		제2차 9.25 (목)	1. 區政에관한質問 - 질문의원 : 박덕균, 전성장, 조재구, 홍성덕, 이성배, 이기봉, 김종섭, 권재일, 최광진, 정일출, 기창표 의원 - 답변자 : 이정규 구청장	(원안가결)
		제3차 9.26 (금)	1. 區政에관한質問 - 질문의원 : 박덕균, 전성장, 조재구, 홍성덕, 이성배, 이진수,	(원안가결)

I. 本會議 運營



會議名	會 期	次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54회 임사회	'97. 9.20 ~ '97. 9.30 (11일간)	제3차 9.26 (금)	김중섭, 권재일, 최광진, 정일수, 정일출 의원 - 답 변 자 : 금동영 기획실장 전원배 총무국장 임칠현 재무국장 박문규 시민국장 최홍진 도시정비국장 이종순 건설국장 이미완 보건소장	
		제4차 9.30 (화)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건축민원조정위원회 條例廢止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西大門문화체육회관 사용료징수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여비條例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수수료징수條例中 改正條例案 7. 서울特別市西大門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 條例案 8.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 9. 서울特別市西大門區회계관계公務員재정 보증條例中改正條例案 10.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수가條例中 改正條例案 11. 서울特別市西大門區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條例中改正條例案 12. 서울特別市西大門區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과태료징수條例폐지條例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第2章 議會運營

會議名	會 期	次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54회 임사회	'97. 9.20 ~ '97. 9.30 (11일간)	제4차 9.30 (화)	13. 서울特別市西大門區의료보호기금 特別 회계설치및운용條例中改正 條例案 14. 서울特別市西大門區아동위원회의회설치 및운영등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15.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一般폐기물관리條例 中改正條例案 16. 住民用新聞購讀에대한行政事務調查計劃 承認案 17. 西大門區駐車場委託管理에관한실태조사 운영計劃承認案 18. 徵戒資格特別委員會構成要求案 - 구성위원 : 김종철, 이기봉, 강석준, 김동덕, 이진수 의원(5명)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55회 임사회	'97.11. 4 ~ '97.11. 7 (4일간)	제1차 11. 4 (화)	1. 第55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期決定 의件 - 회기결정 : '97.11. 4~11.7(4일간) 2. 第55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件 - 서명의원 : 이성배, 최광진 의원	
		제2차 11. 7 (금)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務員직무발명보상 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사무위임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域保健의료심의 委員會構成및운영에관한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老人福祉기금설치 및운용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공중이용시설과태료 징수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衆營業허가등에 관한수수료징수條例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第2章 議會運營



會議名	會期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56회 정기회	'97.11.25 ~ '97.12.22 (28일간)	제2차 12. 9 (화)	1. 區政에 관한 質問 - 질문의원 : 전성장, 이석문, 이기봉, 박덕균, 김종섭, 이성배, 이진수, 홍성덕, 권재일, 김종철, 강석준, 기창표, 김종철의원 - 답 변 자 : 이정규 구청장	
		제3차 12.10 (수)	1. 區政에 관한 質問 - 질문의원 : 전성장, 김종섭, 김종철의원 - 답 변 자 : 금동영 기획실장 임철현 재무국장 박문규 시민국장 최홍진 도시정비국장 이종순 건설국장	
		제4차 12.11 (목)	1. 第56回西大門區議會定期會의사일정 변경의건 2. 經濟살리기運動推進促求決議案 - 제안설명 : 정연식 운영위원장 3. 區政에 관한 質問 - 질문의원 : 강석준, 허준구, 김정현 의원 - 답 변 자 : 전원배 총무국장	
		제5차 12.12 (금)	1. 議事堂敷地買入推進現況聽取件 - 제안설명: 강석준 의사당특위위원장	
		제6차 12.13 (토)	1. 條例整備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 採擇의件 - 제안설명 : 전성장 조례특위위원장	(원안가결)
		제7차 12.15 (월)	1. 住民用新聞購讀에 대한 行政事務調査 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 채택의건 - 제안설명 : 권재일 조사특위위원장	(원안가결)

I. 本會議 運營



會議名	會 期	次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56회 정기회	'97.11.25 ~ '97.12.22 (28일간)	제8차 12.16 (화)	1. 駐車場委託管理에 관한 실태調查特別 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 채택 의 건 - 제안설명 : 김동덕 조사특위위원장 2. 保健所廳舍를 區議會廳舍로 관리 전환 結果報告 - 제안설명 : 강석준 청사특위위원장 3. 休會의 件 - 기간 : '97.12.17~12.19(3일간)	(원안가결)
		제9차 12.20 (토)	1. 1998年度 區有財產管理計劃案 2. 1996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案 3. 1996年度 豫備費支出承認案 4. 1996年度 歲入歲出豫算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제10차 12.22 (월)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 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稅減免條例中改正 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障礙人福祉기금설치 및운용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오수분뇨및축산폐수 의처리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自動車運輸事業에 관한過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麻浦路5구역제6-2지구再開發區域變更 지정에 대한의 건聽取案 7. 麻浦路4구역제6-2지구再開發區域變更 지정에 대한의 건聽取案 8. 1997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채택 의 건 9. 議員懲戒要求의 件 - 제안설명 : 김종철 징계특위위원장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57회 임사회	98. 1.19 ~ 98. 1.24 (6일간)	제1차 1.19 (월)	1. 第57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期決定 의 件 - 회기결정: 98. 1.19~ 1.24(6일간)	

第2章 議會運營

會議名	會期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57회 임시회	98. 1.19 ~ 98. 1.24 (6일간)	제1차 1.19 (월)	2. 第57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件 - 서명의원 : 권재일, 홍성덕 의원 3. 休會의件 - 기간 : 98. 1.20~ 1.23(4일간)	
		제2차 1.24 (토)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지명委員會條例中 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務員定員條例中 改正條例案 3. 1998年度區有財産管理變更計劃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一般폐기물 관리條例 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홍제3-4구역住宅改良 再開發區域內市有地매각에대한行政事務 調査要求案 - 제안설명 : 이진수 의원 - 구성위원 : 이진수, 정일출, 조재구, 전성장, 이기봉, 이성배, 박덕균, 최광진, 김동덕 의원(9명)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58회 임시회	98. 3.11 ~ 98. 3.23 (13일간)	제1차 3.11 (수)	1. 第58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期 決定의件 - 회기결정:98. 3.11~ 3.23(13일간) 2.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 출석일자 : 98.3.13~3.21(8일간) - 출석장소 : 본회의장 - 출석대상 :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각 국장, 보건소장, 각 담당관,과장,동장 3. 第58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件 - 서명의원 : 오환인, 허준구 의원	

I. 本會議 運營

會議名	會 期	次 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58회 임시회	98. 3.11 ~ 98. 3.23 (13일간)	제2차 3.12 (목)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障礙人福祉基金 設置및運用條例案再議의件 2. 決算檢査委員選任 - 위원선임 { 의 원 : 이기봉 공인회계사 : 서명원 전직공무원 : 김영찬 3. 休會의件 - 기간 : '97.3.13 ~ 3.18(6일간)	(원안부결)
		제3차 3.19 (목)	1. 區政에관한質問 - 질문의원 : 전성장, 이기봉, 박덕균, 최광진, 김정현, 이성배, 조재구, 정혜연, 기창표 의원 - 답 변 자 : 금동영 기획실장 전원배 총무국장 박문규 시민복지국장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최홍진 건설교통국장 이미완 보건소장	
		제4차 3.20 (금)	1. 區政에관한質問 - 질문의원 : 오환인, 김종섭, 권재일, 이석문, 정일출 의원 - 답 변 자 : 전원배 총무국장 임철현 재무국장 박문규 시민복지국장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최홍진 건설교통국장	
		제5차 3.21 (토)	1. 區政에관한質問 - 질문의원 : 전성장, 이기봉, 박덕균, 이진수, 이성배, 홍성덕, 김종철 의원 - 답 변 자 : 이정규 구청장 2. 休會의件 - 기 간 : 98.3.22 (1일간)	

第2章 議會運營



會議名	會期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58회 임사회	98. 3.11 ~ 98. 3.23 (13일간)	제6차 3.22 (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지방청소년구성및 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운영에관한 條例 中改正條例案 3. 弘恩第2洞第8區域再開發區域指定에대한 意見聽取案 4. 弘恩第2洞第9區域再開發區域指定에대한 意見聽取案 5. 弘恩第2洞第11區域再開發區域指定에대한 意見聽取案 6. 弘濟3,4區域住宅再開發區域內市有地賣各 에대한行政事務調事特別委員會活動中間 報告의件 - 제안설명 : 최광진 조사특위위원장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59회 임사회	98. 5. 4 ~ 98. 5.12 (9일간)	제1차 5. 4 (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59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期決定 의件 - 회기결정:98. 5.4~ 5.12(9일간) 2. 第59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議錄署 名議員 選出의件 - 서명의원 : 정일수, 송영우 의원
제2차 5.12 (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98年度地域保健醫療計劃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民會館設置및運營 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手數料徵收條例中 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새마을獎學金支給 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西大門刑務所歷史館 設置및運營條例案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稅條例中改正 條例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I. 本會議 運營



會議名	會 期	次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59회 임사회	98. 5. 4 ~	제2차 5.12	7. 서울特別市西大門區稅減免條例中改正 條例案	(원안가결)
	98. 5.12 (9일간)	(화)	8.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가스事業基金 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9. 서울特別市西大門區飲食物쓰레기收集 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案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60회 임사회	98. 6.29 (1일간)	제1차 6.29 (월)	1. 第60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期 決定의件 - 회기결정:98. 6.29 (1일간) 2. 第60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件 - 서명의원 : 기창표, 김동덕 의원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委員會條例中 改正條例案	(원안가결) (원안가결)

II. 委員會運營

1. 議會運營委員會

가. 構成

區分	運營期間	委員長	幹事	委員	備考
제 2 대 (후반기)	'97. 1.19 ~ 98. 6.30	정연식 의원	이성배 의원	기창표 오환인 정현철 김종철 정혜연 이석문 정일출 권재일 정일수 의원	총 11명

나. 案件處理 現況

議會運營委員會는 제47회 定期會 폐회중('97. 1. 3) 최초 開議하여 제60회 임시회까지 議事日程 협의의 건 등 45건을 처리하였으며, 제2대 後半期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 위원회 活動을 새롭게 전개하여 각종 條例案 및 算案 審査와 경제살리기운동결의 등 區政發展 및 住民福祉向上에 역점을 두고 활발한 議政活動을 展開하였다.

計	條例案	制定案	承認案	決議案	建議案	豫算案	請願	其他
45	2			2		4		37

II. 委員會運營

D. 會期別 案件 處理內容

會 期 別	次 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47회정기회 (폐회중)	제 1 차 (’97.1.3)	1. 第48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 협의의견 - 회기결정:’97.1. 8 (1일간)	
제48회임시회 (폐회중)	제 1 차 (’97.1.15)	1. 第49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 협의의견 - 회기결정:’97.1.21 (1일간)	
제49회임시회 (폐회중)	제 1 차 (’97.1.21)	1. 幹事選任의件 - 간사선임 : 이성배 의원	
	제 2 차 (’97.2.14)	1. 第50回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臨時會) 議事日程協議의件 - 회기결정:’97.2.19~2.27(9일간)	
	제 3 차 (’97.2.18)	1. 本會議場議席配定案 2. 議會案内冊子計劃案 3. 議會訪問記念品購入計劃案 4. ’97年議會運營共通業務推進費支出 計劃案	
제50회임시회 (폐회중)	제 1 차 (’97.2.22)	1. 1997年度區政業務報告 - 대 상 : 의회사무국	
	제 2 차 (’97.3. 7)	1. 共通經費執行計劃協議의件	
	제 3 차 (’97.3.14)	1. ’97議政運營共通業務推進費執行 計劃案 2. ’97上半期委員會別세미나開催의件	
	제 4 차 (’97.4. 7)	1. 第51回(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 의사일정:’97.4.19~4.28(10일간)	

第2章 議會運營



會期別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51회임시회	제 1 차 (’97.4.24)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에出席하여 答辯할수있는公務員의범위에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2. 經濟살리기運動推進促求決議案採澤 의件	(수정안가결) (수정안가결)
	제 2 차 (’97.6.16)	1. 第52回(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 의사일정:’97.6.24~6.30(7일간)	
제51회임시회 (폐회중)	제 3 차 (’97.6.23)	1. 議事日程協議의件	
	제 1 차 (’97.6.27)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倫理特別委員 會構成決議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表彰規定案	(원안가결) (다음회기로 연기)
제52회임시회 (폐회중)	제 2 차 (’97.7.14)	1. 第53回(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 의사일정:’97.7.23~7.31(9일간)	
제53회임시회	제 1 차 (’97.7.28)	1. 1997年度第1回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수정안가결)
제53회임시회 (폐회중)	제 2 차 (’97.9.12)	1. 第54回(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 의사일정:’97.9.20~9.30(11일간)	
제54회임시회	제 1 차 (’97.9.24)	1. 區政業務報告聽取의件 - 대상부서 : 의회사무국	
제54회임시회 (폐회중)	제 2 차 (’97.10.23)	1. 議員體育大會計劃案 2. 議會訪問記念牌製作計劃案 3. 議會案內誌製作計劃案	(계획안채택) (계획안채택) (계획안채택)
	제 3 차 (’97.10.29)	1. 第55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議事 日程案 - 의사일정:’97.11.4~11. 7(4일간)	
제55회임시회	제 1 차 (’97.11. 6)	1. ’97年度行政事務監查計劃作成의件	(계획안채택)

II. 委員會運營

會 期 別	次 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55회임시회 (폐회중)	제 2 차 (’97.11.14)	1. 第56回西大門區議會(定期會)議事日程 · 協議의件 - 회기결정:’97.11.25~12.22 (28일간)	
제56회정기회	(’97.12.1)	1. 1997年度行政事務監査 - 대상부서 : 의회사무국 - 기 간 : ’97.12.1(1일간)	
	제 1 차 (’97.12. 8)	1. 1996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2. 1996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3. 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제 2 차 (’97.12.10)	1. 第56回西大門區議會(定期會)議事日程 變更의件 2.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	(원안가결)
	제 3 차 (’97.12.19)	1. 1997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採擇의件	(원안가결)
제57회임시회	제 1 차 (’98. 1.22)	1. 1998年度業務報告聽取의件 - 대상부서 : 의회사무국	
제57회임시회 (폐회중)	제 2 차 (’98. 2. 9)	1. 弘報비디오製作에 관한件 2. 議會案内誌製作및配府計劃에 관한件 3. 議員手帖製作에 관한件 4. 議員·事務局職員親睦圖謨行事에 관한件	(원안채택) (원안채택) (원안부결) (원안부결)
	제 3 차 (’98. 3. 4)	1. 第58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 協議의件 - 회기결정:98.3.11~3.23(13일간)	
제58회임시회 (폐회중)	제 1 차 (’98. 4.27)	1. 第59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 協議의件 - 회기결정:98.5. 4~5.12(9일간)	

第2章 議會運營



會期別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59회임시회 (폐회중)	제 1 차 ('98. 6.18)	1. 第60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 協議의件 - 회기결정:98. 6.29 (1일간)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委員會條例 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라. 議案審查 內容

■ 條例案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2. 22 이성배의원외 1인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97. 2. 22 제5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의회위원회조례를 정비코자 함.

나) 主要骨子

-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의해 “기획실”이 신설됨에 따라 의회위원회 조례중 총무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중에서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며,
-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민봉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삭제코자 함.

2) 審查結果

- 재석위원 11명 전원만장일치로 이성배의원외 1인이 발의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1) 提案

'97. 4. 24 이석문의원의 1인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97. 4. 24 제5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정비코자 함.

나) 主要骨子

- 「국·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을 「실·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담당관·과장급」으로 한다.(안 제2조 제2호)
-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안 제2조 제3호)
- 제2조(범위)에 「하부행정기관의장인 동장」을 추가 신설함.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11명 전원만장일치로 이석문의원의 1인이 발의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 決議案

◇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 ◇

1) 提案

'97. 4. 24 이성배의원의 1인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동년 동월 동일 제5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최근 전반적인 경제불황으로 실업자들이 사상 유례없이 늘어나고 한해 외국산 술을 수입하는 데만 수조원 이상을 소모하여 소비품토가 만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의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로 인한 우리의 경제가 일파만파로 추락할 위험수위에 달하는 등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맞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전국민에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함.

나) 主要骨子

- 경제살리기에 온힘을 경주하고 외제수입품 사용근절
- 근검절약 운동 및 국민의식 개혁운동에 앞장
- 건전한 국가문화정착 및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집행부 및 관계기관에 촉구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11명 전원만장일치로 이성배의원의 1인이 발의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1) 提案

'97. 6. 23 조재구의원의 6인으로부터 제출된 이 결의안은 '97. 6. 27 제5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서대문구의회의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이며 구민의 대표자이자 동시에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

나) 主要骨子

-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실천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 함.
-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코자 함.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11명 전원만장일치로 조재구의원의 6인이 발의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 ◆

1) 提案

'97. 12. 8 정혜연의원의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이 결의안은 '97. 12. 10 제56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우리 대한민국은 유구한 반만년 역사를 자랑으로 삼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도 슬기롭게 극복해왔으며 특히70년대에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여 선진국 대열에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으나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 경제는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국가위기를 갖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경제살리기 운동추진 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전 국민에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함.

나) 主要骨子

- 국산품을 애용하여 근검절약 풍토조성
- 과소비를 억제하고 경제살리기 저축운동에 앞장
- 자기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국민의식 개혁운동에 앞장
- 이러한 운동이 각 가정까지 확산되도록 범국민 운동 전개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9명 전원만장일치로 정혜연의원의 10인이 발의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2. 總務委員會

가. 構成

區分	運營期間	委員長	幹事	委員	備考
제 2 대 (후반기)	'97. 1.19 ~ 98. 6.30	기창표 의원	박덕균 의원	송영우 이기봉 전성장 김종철 김정현 정혜연 조갑현 이석문 조재구 정일출 권재일 의원	총13명

나. 案件處理 現況

總務委員會는 제49회臨時會폐회중('97.1.21) 최초 開議하여 제59회 임시회까지 각종 條例案 심사등 69건을 처리하였으며, 제2대 後半期 總務委員會 원구성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 위원회 活動을 적극 추진하여 각종 條例案 및 豫算案審査와 區行政事務監査등 구민편에 서서 왕성한 議政活動을 展開하여 區政發展과 住民福祉向上에 크게 기여하였다.

計	條例案	制定案	承認案	決議案	建議案	豫算案	請願	其他
69	36	7	4			4		18

II. 委員會運營

다. 會期別 案件 處理內容

會 期 別	次 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49회임사회 (폐회중)	제 1 차 (’97.1.21)	1. 幹事選任의件 - 간사선임 : 박덕균 의원	
제50회임사회	제 1 차 (’97.2.20)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條例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제 2 차 (’97.2.21)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稅減免조례중改正 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産관리條例中 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財政計劃심의위원회 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法規상담실條例 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務員職務發明補償 條例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 3 차 (’97.2.22)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廣告掲載에 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제 4 차 (’97.2.24)	1. 1997年度區政業務報告 - 대상부서 : 기획실, 보건소	
	제 5 차 (’97.2.25)	1. 1997年度區政業務報告 - 대상부서 : 총무국	
	제 6 차 (’97.2.26)	1. 1997年度區政業務報告 - 대상부서 : 재무국	
	제51회임사회	제 1 차 (’97.4.26)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民願審議委員會條例 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 安定資金운영관리條例案

第2章 議會運營

會期別	次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52회임시회	제 1 차 (’97.6.25)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 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제 2 차 (’97.6.26)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稅減免條例中改正 條例案	(원안가결)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產관리條例中 改正條例案 3. 1997年度區有財產管理變更案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 3 차 (’97.6.27)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域保健醫療審議 委員會構成및運營에 관한條例案	(본회의에부 의하지아니 하기로의결)
제 4 차 (’97.6.28)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認條例中改定 條例案	(원안가결)	
제53회임시회	제 1 차 (’97.7.24)	1. 1997年度第1回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 제안설명 : 소관과장	
	제 2 차 (’97.7.25)	1. 1997年度第1回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 제안설명 : 소관과장	
	제 3 차 (’97.7.26)	1. 1997年度第1回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 계수조정	(수정안가결)
	제 4 차 (’97.7.28)	1. 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案	(원안가결)
제54회임시회	제 1 차 (’97.9.22)	1. 區政業務報告聽取의件 - 대상부서 : 기획실, 재무국	
	제 2 차 (’97.9.23)	1. 區政業務報告聽取의件 - 대상부서 : 총무국	
	제 3 차 (’97.9.24)	1. 區政業務報告聽取의件 - 대상부서 : 보건소	

II. 委員會運營

會 期 別	次 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54회임사회	제 4 차 (’97.9.27)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다음회기로 연기)
	제 5 차 (’97.9.29)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建築民願調整委員會條例폐지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西大門文化體育會館 사용료징수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旅費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서울特別市西大門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8. 서울特別市西大門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 서울特別市西大門區會計關係公務員財政保證條例中改正條例案 11.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會構成 및 運營에 關한 條例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55회임사회	제 1 차 (’97.11. 5)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務員職務發明報償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事務委任條例案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 2 차 (’97.11. 6)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會構成 및 運營에 關한 條例案 2. 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質疑作成件	(수정안가결)

第2章 議會運營

會期別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56회정기회	('97.11.26 ~ '97.12.2)	1. 1997年度行政事務監査 - 대상부서 : 구청총무위원회소관 - 기간 : '97.11.26~'97.12.2(7일간)	
	제 1 차 ('97.12. 3)	1. 1996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2. 1996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3. 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 기획실소관 제안설명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 2 차 ('97.12. 4)	1. 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 총무국소관 제안설명	
	제 3 차 ('97.12. 5)	1. 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 재무국소관 제안설명	
	제 4 차 ('97.12. 6)	1. 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 보건소소관 제안설명	
	제 5 차 ('97.12. 8)	1. 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 계수조정	(수정안가결)
	제 6 차 ('97.12.17)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본회의에부 의하지아니 하기로의결) (원안가결)
	제 7 차 ('97.12.19)	1. 區有財産管理計劃承認案 2. 1997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57회임사회	제 1 차 (98. 1.20)	1. 1998區政業務報告聽取의件 - 대상부서 : 기획실, 보건소	
	제 2 차 (98. 1.21)	1. 1998區政業務報告聽取의件 - 대상부서 : 총무국	

II. 委員會運營



會 期 別	次 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57회임사회	제 3 차 (98. 1.22)	1. 1998區政業務報告聽取의件 - 대상부서 : 재무국	
	제 4 차 (98. 1.23)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名委員會條例中 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務員定員條例中 改正條例案 3. 1998年度區有財產管理變更計劃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 1 차 (98. 3.13)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稅條例中改正 條例案 2. 洞事務所縣案業務및特殊事業報告聽取 - 대상동 : 충정로동, 천연동, 대신동, 연희3동	(원안가결)
제58회임사회	제 2 차 (98. 3.14)	1. 洞事務所縣案業務및特殊事業報告聽取 - 대상동 : 북아현1동, 북아현2동, 북아현3동	
	제 3 차 (98. 3.16)	1. 洞事務所縣案業務및特殊事業報告聽取 - 대상동 : 현저동, 연희1동, 연희2동, 홍은1,2동	
	제 4 차 (98. 3.17)	1. 洞事務所縣案業務및特殊事業報告 聽取 - 대상동 : 창천동, 홍제1,2,3,4동	
	제 5 차 (98. 3.18)	1. 洞事務所縣案業務및特殊事業報告聽取 - 대상동 : 홍은3동,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제 1 차 (98. 5. 6)	1. 1998年度地域保健醫療計劃案	(제안설명)

第2章 議會運營



會期別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59회임사회	제 2 차 (98. 5. 7)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民會館設置및 運營에 관한條例廢止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手數料徵收條例中 改正條例案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 3 차 (98. 5. 8)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西大門文化體育會館 內區民體育센터減價積立基金設置및運用 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새마을獎學金支給條 例中改正條例案	(本회의에부 의하지아니 하기로의결) (원안가결)
	제 4 차 (98. 5. 9)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西大門刑務所歷史館 設置및運營條例案	(수정안가결)
	제 5 차 (98. 5.11)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稅減免條例中改正 條例案 3. 1998年度地域保健醫療計劃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라. 議案審查 內容

■ 條例案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1. 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2. 20 제5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지방세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서별로 부과,징수 업무의 분리된 업무분장을 세목별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비코자 함.

나) 主要骨子

- 현행 “세무관리과”를 “세무1과”로 “부과과”를 “세무2과”로 각각 변경함.

2) 審查結果

- 재석위원 10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1.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2. 20 제5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위원회의 성격을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기관장으로 하여 위원 구성에 하한선을 정하였으며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위촉토록 하여 지가심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위원회의 명칭변경 : 서대문지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서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로 함.
- 위원수 변경 : 구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함.
- 위원자격 변경 :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함.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9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1.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2. 21 제5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세제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사회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감면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임.

나) 主要骨子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 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에서 ()내 단서 규정삭제
-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의 각호의 1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 신설
- 노인복지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자의 부동산에 대한 구세감면규정을 신설
-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도 구세면제 대상에 추가 적용
- 지방세 감면대상중 2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법 규정적용 신설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6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2. 13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2. 21 제5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구유재산관리사무중 중요재산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범위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 구유재산관리사무중 중요재산에 대한 범위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중요 재산은 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일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종전의 규정을 삭제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안건중 재산처분가격의 사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으로 개정되었기 재산처분가격심의를 삭제
- 하천법 제77조에 의한 폐천부지의 양여 및 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폐천부지의 취득 및 처분후 지방의회에 보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9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삭제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1.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2. 21 제5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안 제3조)
-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안 제6조)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8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1.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2. 21 제5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행정법규상담실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안 제4조)
-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안 제6조)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8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1.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2. 21 제5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안 제21조)
-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안 제25조)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8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광고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2. 1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2. 22 제50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10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II. 委員會運營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2. 12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4. 26 제5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서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안 제9조)
- 감사실 조사계장을 민원관리계장으로 한다.(안 제9조)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12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안 ◆

1) 提案

'97. 4. 3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4. 26 제5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상환 및 상환금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 기존의 지원대상 사업구분을 저소득층의 소득수준향상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상사업을 일원화 하고 용자지원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 거양에 기여하며 그밖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용자금의 재원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으로 함.
-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금융기관을 지정 위탁관리, 운영함.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용자대상을 정함
- 용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용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 가구당 용자한도액은 소득자금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로 하고 상환은 2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하도록 함.
- 용자금의 대부 및 상환절차 등을 정함.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9명 중 반대 6명, 기권 2명 찬성 1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4.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6. 25 제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 고양과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성실근무자에 대한 연가가산등 “국가 공무원복무규정” 개정 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토요일 근무시간은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실시하지 않는 경우 13시
- 병가를 얻지 아니하였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
-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
-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12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5. 23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6. 26 제5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확충과 공평세제원칙의 확립을 기하는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세감면 혜택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직대통령주택에 대한 과세면제 혜택을 없애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전직대통령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면제 근거 삭제(안 제14조)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5. 3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6. 26 제5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구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
-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이 1,000분의 25로 개정되었기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점유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국유재산제도와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
- 구유재산관리 사무중 보존부적합한 재산의 매각기준중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기타지역에 있어서 400㎡ 이하의 범위를 700㎡이하의 토지로 종전규정을 개정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9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 提案

'97. 6. 1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변경안은 '97. 6. 26 제5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의결을 위함.

나) 主要骨子

- 당초 연희동 82-21호의 토지 567.3㎡와 건물 219.27㎡을 구입하려 했으나 매입결정가격(감정평균가액)과 토지소유자 요구액의 상이로 무산되어
- 연희동 92-4호의 토지 480㎡와 건물 290.61㎡를 변경매입코자 함.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8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 提案

'97. 5. 3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6. 27 제52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원활한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의사결정 방법
- 회의결과 관리
- 필요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
- 위원에게 수당지급 등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8명 전원반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6. 12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6. 28 제52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기획실 신설과 일부 실, 과의 명칭 변경등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한다.(안 제3조 제1항)
- 사무장, 민원주임을 시민생활계장, 민원봉사계장으로 한다.(안 제3조 제4항)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12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 提案

'97. 7. 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변경안은 '97. 7. 28 제53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의결을 위함.

나) 主要骨子

- 홍은동 산26-151외 1필지 토지 2,852.7㎡ 3,042,281천원을 공공의 청사(서대문구의회청사) 및 주차장 부지로 매입코자 하며
- 남가좌동 275-55외 1필지 토지 324㎡ 560,196천원을 남가좌1동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매입코자 함.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7명 기권 5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7. 22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9. 25 제54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부속토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사용검사일”용어를 “사용승인일”로 하고
-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으로 하며(안 제10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안 제15조)
-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안 제16조)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3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1) 提案

'97. 9. 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9. 29 제54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폐지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廢止理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의 기능과 내용이 유사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민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정되었으며 또한 건축민원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사항을 심의처리 및 해결하기 위하여 서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의 기능을 하므로 별도의 존치가 필요하지 않아 폐지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12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9. 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9. 29 제54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93. 12. 30(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225호) 공포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구의 세외 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구의 예산부담을 경감시켜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대강당 13% 인상, 소강당 16%인상)
- 수속설비 신규 구입에 따른 부속설비(통편, 파라이트) 사용료 신설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9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9. 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9. 29 제54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우리구의 지역여건은 주거환경개선 지역과 재개발사업추진 등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어느 구정보다도 도시정비국의 업무량이 과다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국, 과의 명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성실히 수행코자 함.

나) 主要骨子

- 도시정비국내에 배속되어 있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건설국으로 이관시키고
- 국에 대한 명칭 변경으로는 시민국은 시민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은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변경시키며
- 과에 대한 명칭변경으로는 산업과는 지역경제과로, 청소과는 청소행정과로, 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함.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8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

1) 提案

'97. 9. 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9. 29 제54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국내여비규정 등 상위법령이 개정('95. 12. 29)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여비조례 개정조례준칙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서대문구 여비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여비의 종류” 조항을 삭제하고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함.
- “여비정액” 조항을 삭제하고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함.
- 출장일수가 근무일수와 동일할 때 월액여비를 전액 지급하던 것을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 월액여비를 전액 지급
- “현장지도여비” 조항 삭제
- “이전비” 조항 삭제하고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을 준용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8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II. 委員會運營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9. 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9. 29 제54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동청사중 신축 및 지번합병, 지번등록 전환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사무소설치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중 “별표 1”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중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 대상동 : 천연동, 현저동, 북아현제2동, 연희제2동, 연희제3동,
홍제제1동, 홍제제2동, 홍제제3동, 홍제제4동, 홍은제3동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9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9. 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9. 29 제54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주민편의의 일환으로 대법원과 내무부의 합의 및 서울특별시 지침(행정 13210-1083<'97. 8. 12>)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데에 따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별표 중 제4항을 신설(안 별첨)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수수료 600원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11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9. 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9. 29 제54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품관리 조례중 관련 조항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한편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불용결정의 기준은 제15조를 적용토록 함(안 제16조 제1항)
- 폐기대상 불용품의 기준은 제16조 제1항을 적용토록 함(안 제17조 제1항)
-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제21조를 적용토록 함(안 제22조 제1항)
- 물품출납사무의 인계절차는 제31조를 적용토록 함(안 제32조)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9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9. 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9. 29 제54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구 자치제 실시에 따라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서대문구청사를 건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과 서대문구 관사사용 및 관사 사용료를 시장이 허가 또는 규정한다는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기 위함.

나) 主要骨子

- 이 조례에 의거 청사 신축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안 제47조)
- 관사 사용에 있어 시장이 허가 하도록 한 규정을 구청장이 허가한다로 한다.(안 제51조)
- 관사 사용시 시장이 사용료를 정하던 규정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다(안 제56조)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8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II. 委員會運營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9. 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9. 29 제54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예산회계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관련 법조문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와 재정보증관리책임을 명백히 구분하여 책임있는 회계관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회계공무원의 범위를 예산회계법 “제96조”를 “제123조”로 적용(안 제2조의 3호)
- 재정보증관리책임자를 구 본청 및 동은 구청장이,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구의회는 사무국장을 책임자로 한다.(안 제3조 ①, ②항)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10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9. 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9. 29 제54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1996년 7월 1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96. 10.31)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 보건서 업무(의료기관, 약국개설 등)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에 정하여진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수가조례로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 의료보험 적용대상자중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대주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8조“로 개정
-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항에 “제증명 확인 발급”,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내용 신설
-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중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진료비 면제토록 신설
- 수수료 및 진료비를 징수하는 별표내용중 신설
 - 제증명 확인 발급(안 별표 제6호)
 - 각종 인허가 및 신고(안 별표 제7호)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9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 提案

'97. 9. 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9. 29 제54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원활한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임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위원의 해촉, 회의
- 필요시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 위원에게 수당등 지급
- 운영세척등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9명 중 반대 6명, 기권3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10. 23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11. 5 제5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특허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의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여 적용규정을 명확히 하고 등록보상금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15조 및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직무발명 상황보고를 “상공부령”에서 “통상산업부령”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특허법 인용 조항중 “제17조 및 제18조”를 “제39조 및 제40조”로 변경
-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보상금을 특허권은 10만원에서 100만원, 실용신안권은 5만원에서 50만원, 의장권은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 직무발명 상황보고를 “상공부령”에서 “통상산업부령”으로 조정함.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11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안 ◆

1) 提案

'97. 10. 23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11. 5 제55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단체별로 혼용되고 있는 행정권한은 위임 조례의 명칭을 통일시키고 위임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토록하는 지침이 시달되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권한위임조례를 폐지하고 구청장의 권한을 보건소장, 동장 및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시는 위임조례로 정하고, 재위임시는 규칙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구청장 권한의 사무중 보건소장, 동장 및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려 함.(안 제1조)
-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적 집행사무, 일상적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위임사무에 대하여 구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취소 및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임기관이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 및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위임의 사무에 대해서는 별표로 정함.

2) 審查結果

- 재석위원 10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 提案

'97. 10. 2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10. 28 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원활한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나) 主要骨子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임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위원의 해촉, 회의
- 필요시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 위원에게 수당 등 지급
- 운영세칙 등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12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 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

1) 提案

'97. 11. 13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12. 17 제56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 상환 및 상환금운영 규정이 폐지('95. 5.9 내무부 훈령 제1142호)됨에 따라
- 기존의 지원대상 사업구분(저소득마을, 가구)을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상사업을 일원화하고 용자지원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에 기여하며 그밖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용자금의 재원을 새마을소득특별법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 확보한 자금으로 함(안 제2조)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용자대상을 정함(안 제3조)
- 용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금용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안 제4조)
- 가구당 용자한도액을 소득자금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로 하고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함(안 제5조)
- 용자금의 대부 및 상환절차 등을 정함(안 제6조 내지 제11조)
-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설치 구금고에 위탁관리. 운용함(안 제13조)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10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11. 13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12. 17 제56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지방세법 제70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2 제1항의 개정('97. 10.1)으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서류의 송달방법이 새로이 도입되었으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와 서류의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 2)
- 허가 등의 제한 조항 중 인용조문을 “영제27조의2”에서 “영제25조”로 함.(안 제8조)
- 서류 송달의 방법에 있어서 통, 반장도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 구세심의위원회 조항 중 인용조문을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서 “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함(안 제14조 제2항)
- 납세자의 과세정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4조의 2)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7명 전원반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

1) 提案

'97. 11. 13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12. 17 제56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가 부칙 제2조(적용시한)에 의거 1997년 12월 31일 시효만료되므로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감면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사회복지 시설(국가유공자, 종교단체 의료업, 노인복지 시설) 지원을 위한 감면
- 사회교육시설 등(사립학교 교육용 재산, 지정문화재)지원을 위한 감면
- 대중교통시설(주차전용건축물, 주차전용토지, 매매용중고자동차, 여객자동차 터미널)지원을 위한 감면
- 지역발전시설(임대주택, 아파트형 공장, 재래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8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

1) 提案

'97. 12. 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계획안은 '97. 12. 19 제56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위함.

나) 主要骨子

- 총재산현황('97. 11. 29현재)

┌	건물 131필지 51,257㎡
	토지 2,091필지 943,270㎡
- 1998년도 매입대상 - 토지7필지 2,607㎡ 2,363,050천원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8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12. 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1. 23 제57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조례 설치근거인 측량법 제58조가 '97. 1. 13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법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를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로 함(안 제1조)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11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7. 12. 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1. 23 제57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지방공무원 인력관리의 생산적, 계획적 수급체계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중기기본인력 계획인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우리구에서는 '97. 3. 28 서울특별시를 통한 협의요청을 하여 '97. 10. 22 내무부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 협의확정 통보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主要骨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정원 조례중 본청정원 1명 감축(본청정원 877명 → 876명)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11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II. 委員會運營

..... ▲

◆ 1998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1) 提案

'98. 1. 1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계획안은 '98. 1. 23 제57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이 발의)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의결을 위함.

나) 主要骨子

- 연희2동 77-24외 1필지 토지 663.5㎡ 1,145,765천원을 연희2동 동사무소 신청사 부지 확보를 위하여 매입코자 함.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7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8. 2. 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3. 13 제5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지방세법 제70조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 개정('97. 10. 4)으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시행령 제39조의 2 제1항의 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방법이 새로이 도입되어 개정안을 제56회 정기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개정안 중 “서류의 송달방법”을 삭제 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 2)
- 허가 등의 제한 조항 중 인용조문을 “영제27조의 2”에서 “영제25조”로 함.(안 제8조)
- 구세심의위원회 조항중 인용조문을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서 “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함(안 제14조 제2항)
- 납세자의 과세정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4조의 2)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11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1998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 ◆

1) 提案

'98. 3. 13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계획안은 '98. 5. 6 제5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및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결을 위함.

나) 主要骨子

-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배경과 과정
- 일반적 보건의료 현황
- 서대문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 향후 보건소 중점과제 추진계획 등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7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 提案

'98. 4. 22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5. 7 제5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폐지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廢止理由

-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93. 10.11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폐지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7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II. 委員會運營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8. 4. 22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5. 7 제5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242호, '96. 12.31), 동법시행령(제15498호, '97. 10.21) 및 동법시행규칙(제659, '97. 11.11)이 '9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3조)
 - 문서, 대장, 도면, 카드,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비디오),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 사진필름의 열람, 시청, 복제 등 29종(200원~6,000원)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8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내구민체육센터감가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1) 提案

'98. 4. 2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5. 8 제5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서대문문화체육회관내 구민 체육센터의 감가적립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기금의 관리, 운용
-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 기금회계관의 설치 및 기금관리장부의 비치
- 기금결산 보고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7명 중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8. 4. 2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5. 8 제5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개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으로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새마을 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삭제(안 제11조)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7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 ◆

1) 提案

'98. 4. 2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5. 9 제59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조국광복을 위해 일제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순국하신 애국선열들의 호국의 넋을 기리고, 시민에게 역사의 산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역사관의 운영조직 개관 및 휴관일을 규정함.
- 역사관의 관람료 및 관람시간, 관람료의 면제대상자를 규정함.
- 역사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설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관람료 또는 시설 사용료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탈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함(안 제14조)
- 진열 전시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배상 또는 변상 조치토록 규정함(안 제15조)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II. 委員會運營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8. 4. 2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5. 11 제59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이 신설되었으나 법적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법 제188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함.(안 제21조의 2)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11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8. 4. 2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5. 11 제59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 중 구세감면조례에 반영할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의 자동차 면허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제2조 제2항의 내용중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면제대상으로 확대함(안 제2조 제2항)
- 제2조 제2항에서 감면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서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로 확대함(안 제2조 제2항)

2) 審 査 結 果

- 재석위원 7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II. 委員會運營

3. 市民建設委員會

가. 構成

區分	運營期間	委員長	幹事	委員	備考
제2대 (후반기)	'97. 1.19 ~ 98. 6.30	오환인 의 원	최광진 의 원	김동덕 정현철 김종섭 김영일 정연식 이진수 이성배 강석준 홍성덕 허준구 정일수 의원	총13명

나. 案件處理 現況

市民建設委員會는 제49회 臨時會 폐회중('97. 1.21) 최초 開議하여 제59회 임시회까지 각종 條例案 심사등 57건을 처리하였으며, 제2대 後半期 市民建設委員會 원구성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 위원회 活動을 적극 추진하여 각종 條例案 및 區行政事務監査등 市民편에 서서 왕성한 議政活動을 展開하였고, 또한 豫算案審査를 위하여 강사를 초빙 세미나를 통한 예산기법 지식을 습득하여 '98 豫算案審査를 원활히 하는등 區政發展 및 住民福祉增進을 위하여 위원회 活動을 효율적으로 運營하였다.

計	條例案	制定案	承認案	決議案	建議案	豫算案	請願	其他
57	24	6		1		4	2	20

다. 會期別 案件 處理內容

會期別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49회임사회 (폐회중)	제 1 차 (’97.1.21)	1. 감사선임의견 - 감사선임 : 최광진 의원	
제50회임사회	제 1 차 (’97.2.20)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環境基本條例 制定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建築條例改正 條例案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제 2 차 (’97.2.21)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靑少年 委員會構成및靑少年指導委員委囑. 運營에 관한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가스사업기금 설치條例中改正條例案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제 3 차 (’97.2.22)	1. 麻浦路5區域6地區再開發區域變更指定 에 대한意見聽取의件	(원안가결)
	제 4 차 (’97.2.24)	1. 1997년도구정업무보고 - 대상부서 : 시민국	
	제 5 차 (’97.2.25)	1. 1997년도구정업무보고 - 대상부서 : 도시정비국	
	제 6 차 (’97.2.26)	1. 1997년도구정업무보고 - 대상부서 : 건설국	
	제51회임사회	제 1 차 (’97.4.26)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駐車場設置및관리 條例中改正條例案 2. 文化村아파트再建築공사로인한피해對 策要求請願 3. 弘濟3區域內一部土地除斥要求請願 4. 연세대학교관내道路通行에대한不法 料金徵收調査의뢰촉구決議案
제52회임사회	제 1 차 (’97.6.25)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無許可建物整備 사업에대한補償金支給條例中改正 條例案	(원안가결)

II. 委員會運營

會 期 別	次 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52회임사회	제 2 차 (’97.6.26)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老人福祉基金設置 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權限委任條例 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 3 차 (’97.6.27)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交通安全對策委員 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제 4 차 (’97.6.28)	1. 서울驛-西大門3區域第1地區都心再開發 區域變更指定에 대한意見聽取	(원안가결)
제53회임사회	제 1 차 (’97.7.24)	1. 1997年度第1回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 제안설명 : 소관과장	
	제 2 차 (’97.7.25)	1. 1997年度第1回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 제안설명 : 소관과장	
	제 3 차 (’97.7.26)	1. 1997年度第1回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 제안설명 : 소관과장	
	제 4 차 (’97.7.28)	1. 1997年度第1回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 계수조정	(수정안가결)
제54회임사회	제 1 차 (’97.9.22)	1. 區政業務報告의件 - 대상부서 : 시민국	
	제 2 차 (’97.9.23)	1. 區政業務報告의件 - 대상부서 : 도시정비국	
	제 3 차 (’97.9.24)	1. 區政業務報告의件 - 대상부서 : 건설국	
	제 4 차 (’97.9.27)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住宅改良再開發 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에너지使用者등에 대한過怠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環境基本條例中 改正條例案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第2章 議會運營



會期別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54회임시회	제 5 차 ('97.9.29)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兒童委員會設置 및運營등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醫療保護基金特別 會計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社會福祉委員會 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一般廢棄物管理 條例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수정안가결)
제55회임시회	제 1 차 ('97.11. 5)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老人福祉基金設置 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衆利用施設 過怠料徵收에 관한條例廢止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衆營業許可에 관한수수료징수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道路占用料徵收 條例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 2 차 ('97.11. 6)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災害對策本部構成 및運營등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住宅再開發區域指定에 관한意見聽取案 3. 1997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作成의件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56회정기회	('97.11.26 ~ '97.12.2)	1. 1997年度行政事務監査 - 대상부서 : 총무위원회소관부서 - 기간 : '97.11.26~'97.12.2(7일간)	
	제 1 차 ('97.12. 3)	1. 1996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2. 1996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3. 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 시민국소관 제안설명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 2 차 ('97.12. 4)	1. 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 도시정비국소관 제안설명	

II. 委員會運營



會 期 別	次 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56회정기회	제 3 차 ('97.12. 5)	1. 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 건설국소관 제안설명		
	제 4 차 ('97.12. 6)	1. 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 건설국소관 제안설명		
	제 5 차 ('97.12. 8)	1. 1998年度 歲入·歲出豫算案 - 계수조정		
	제 6 차 ('97.12.10)	1. 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	(수정안가결)	
	제 7 차 ('97.12.17)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障礙人福祉基金 設置및運用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獎學基金設置및 運用에 관한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污水·糞尿畜產 廢水의 처리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自動車運輸事業에 관한過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본회의에부 의하지아니 하기로의결) (원안가결)	
	제 8 차 ('97.12.19)	1. 麻浦路5區域第6-2地區再開發區域 變更指定에 대한意見聽取案 2. 麻浦路4區域第6-2地區再開發區域 變更指定에 대한意見聽取案 3. 1997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 採擇의件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57회임시회	제 1 차 ('98. 1.20)	1. 1998年度區政業務報告聽取의件 - 대상부서 : 시민복지국	
		제 2 차 ('98. 1.21)	1. 1998年度區政業務報告聽取의件 - 대상부서 : 건설교통국	
제 3 차 ('98. 1.22)		1. 1998年度區政業務報告聽取의件 - 대상부서 : 도시관리국장		

第2章 議會運營

會期別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57회임사회	제 4 차 (98. 1.23)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停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본회의에부 의하지아니 하기로의결)
제58회임사회	제 1 차 (98. 3.13)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靑少年委員會構成및靑少年指導委員委囑. 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弘恩第2洞第8區域再開發區域指定에 대한意見聽取案 3. 弘恩第2洞第9區域再開發區域指定에 대한意見聽取案 4. 弘恩第2洞第11區域再開發區域指定에 대한意見聽取案	(원안가결) (현장답사) (현장답사) (현장답사)
	제 2 차 (98. 3.14)	1. 弘恩第2洞第8區域再開發區域指定에 대한意見聽取案	(제안설명)
	제 3 차 (98. 3.16)	1. 弘恩第2洞第9區域再開發區域指定에 대한意見聽取案	(제안설명)
	제 4 차 (98. 3.17)	1. 弘恩第2洞第8區域再開發區域指定에 대한意見聽取案 2. 弘恩第2洞第9區域再開發區域指定에 대한意見聽取案 3. 弘恩第2洞第11區域再開發區域指定에 대한意見聽取案	(원안채택) (원안채택) (원안채택)
	제 5 차 (98. 3.18)	1. 弘濟第3橋-義州路間道路開設工事現場踏査및推進現況報告聽取 2. 弘濟1洞山40-1外2白蓮聯立再建築現場踏査및推進現況報告聽取	
제59회임사회	제 1 차 (98. 5. 6)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원안가결)

II. 委員會運營

..... ▲

會 期 別	次 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59회임사회	제 2 차 (98. 5. 7)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飲食物쓰레기 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案	(제안설명 및 현장답사)
	제 3 차 (98. 5. 8)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飲食物쓰레기 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案	(현장답사)
	제 4 차 (98. 5. 9)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飲食物쓰레기 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案	(원안가결)
	제 5 차 (98. 5.11)	1. 現代交通-白蓮橋間道路開設工事 區間現況聽取및現場確認訪問의件	(제안설명 및 현장답사)

라. 議案審查 內容

■ 條 例 案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안 ◇

1) 提 案

'97. 1.10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2.20 제50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UN지속가능개발위원회에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세계 모든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추진토록 권고하고 있어, 서대문구지역실정에 맞는 환경보전의지와 비전을 제시하고,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하기 위한 것임.

나) 主要骨子

- 환경보전을 위한 책무, 사업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 구민의 책무, 학교, 언론의 역할을 명시
- 서대문구 환경보전협의회, 녹색서대문구실천위원회, 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등 환경보전 구민참여 유도
- 서대문구 환경백서, 안산 생태계 조사등 지역환경 실태조사
- 서대문구 환경기본계획수립, 환경분쟁처리 및 피해구제, 환경영향검토 등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審查結果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

1) 提 案

'97. 1.27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2.20 제50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건축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개별조문에서 위임된 사항들에 대하여 구 건축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건축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통합 공포된 다음 내용을 우리구 건축조례에서 폐지
 -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4장 대지안의 조경, 제5장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제6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 건축법 개정으로 우리구 건축조례에 신설된 내용
 - 개정조례 제14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내용들, 개정조례 제18조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내용
- 현행 우리구 건축조례중 서울특별시 조례준칙에 준해 일부 보완정비
 -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7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8장 보칙

2) 審査結果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 ◆

1) 提 案

'97. 1.27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2.21 제50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시행령등이 정비된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 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
- 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
-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증표교부

2) 審査結果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 하였음.

II. 委員會運營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7. 1.27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2.21 제50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직제규칙이 개정되어 가스계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함.

나) 主要骨子

- 기금관리 공무원중 기금출납원 변경
 - 현 행 : 기금출납원 : 연료계장
 - 개정안 : 기금출납원 : 가스계장

2) 審査結果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 마포로5구역제6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

1) 提 案

'97. 1.30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청취안은 '97. 2.22 제50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도심재개발 마포로5구역6지구는 사업시행면적이 넓어 조합원의 이해타산 및 사업성 결여로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촉진키 위해 분할 시행코자 하며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함.

나) 主要骨子

-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81의 47일대
- 건축계획

┌	당초 : 마포로5구역6	—	5,702㎡
	변경 : 마포로5구역6-1	—	2,447.6㎡
	마포로5구역6-2	—	3,354.5㎡
- 조합원 : 42명

2) 審査結果

마포로5구역제6지구재개발구역변경 결정(지정)안과 의견이 같음

II. 委員會運營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7. 4. 3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4.26 제51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주차요금 및 징수 시간단위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차시책에 부합하도록 우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의 분류를 공영주차장과 민영노외주차장으로 용어를 정의 하고자 함.
- 자가용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1급지 및 2급지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인상함.
-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영노외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단위시간을 최초 1구획 30분을 초과한 경우 "15분단위"에서 "10분단위"로 변경함.
- 경자동차(800CC)에 대하여 2.3.4급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도록 함.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0명 전원 반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연세대학교관내도로통행에대한불법요금징수조사의뢰촉구결의안 ◆

1) 提 案

'97. 4.25 홍성덕의원외 19인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97. 4.26 제51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최근 우리의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노력하는 이때에 연세대학교에서는 관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불법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이를 시정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함임.

나) 主要骨子

- 최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온 국민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연세대학교에서는 복문과 서문에 요금징수 박스를 설치하고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법적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1,500원씩 요금을 징수하여 이곳을 통과하는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여러차례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를 관계기관에 고발 시정조치 하기 위함.

2) 審査結果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홍성덕의원외 19인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II. 委員會運營

◆ 문화촌아파트공사로인한피해대책요구청원 ◆

1) 提 案

'97. 4. 4 서대문구 홍제3동 10 - 233호 이성규외 9인이 제출한 이 청원은 '97. 4.26 제51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청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請願內容

- 홍제동 문화촌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발주하고 고려산업(주)에서 시공하는 아파트공사로 인한 폭음과 진동으로 건물이 균열되는등 극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 청원인들 및 책임질 수 있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답사 실태를 파악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대책 요구 및
- 시공사측의 책임자와 구청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원만히 해결하여 달라는 청원임.

2) 審査結果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 홍제3동 10-233호외 9인이 제출한 이 청원은 청원인과 시공사측대표와 우리구의회 의원 3명(김영일 의원, 정연식 의원, 최광진 의원)으로 구성하여 양측과 합의하도록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홍제3구역내일부토지제척요구청원 ◆

1) 提 案

'97. 4.25 서대문구 홍제4동 109-1호 김충태외 1인 제출한 이 청원은 '97. 4.26 제51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청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請願內容

- 홍제4동 109-11호 홍제3구역 재개발조합 진입로가 당초 20m로 서울특별시에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 심의에 의거 18m로 축소 결정되어 종전대지가 구역경계선과 진입로 18m 도시계획선 사이에 위치하게 된 면적 32㎡가 재개발 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음.
- 위 면적 32㎡는 조합에서는 별 효용이 없으나 홍제동 109-1호 대지 150㎡와 합하여 신축을 해야만 이용가치가 있으므로 위 면적 32㎡를 하루빨리 홍제3 재개발구역에서 제외(구역변경)하여 청원인에게는 재산적 손실이 없도록 하고 조합의 효과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결하여 달라는 청원임.

2) 審査結果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 홍제4동 109-1호 김충태외 1인이 제출한 이 청원은 홍제3구역내 일부 토지 제척요구 청원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구청으로 이송토록 의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7. 4. 9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6.25 제52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풍수해대책법이 자연 재해대책법(법률 제4993호, 1995.12. 6)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규를 현행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개정전 풍수해대책법 제30조(물건의 제거등)를 인용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인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물건의 제거등)을 인용.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2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7. 5.23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6.26 제52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중 제3항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성금, 물품 및 기타 재산"을 삭제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0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7. 5.23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6.26 제52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개정 및 신설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되어 있어 구청에서 처리할 시 현장의 지도, 점검, 단속등 폐기물 적정처리가 어렵고 주민의 불편 때문에 건축폐자재의 불법투기 등이 우려되어 업무의 성격상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의료보호증 재사용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 (안 별표중 39호)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접수처리-동장(안 별표중40호)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교부-동장(안 별표중40호)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2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7. 5.23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6.27 제52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효율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위하여 구성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중 변경된 위원과 간사의 명칭을 개정하여 직제와 일치토록 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지역교통과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교통행정과장 신설(안 제3조 제2항)
- 제6조 제2항중 "간사를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에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장"으로 개정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1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역-서대문3구역제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

1) 提 案

'97. 6. 7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청취안은 '97. 2.22 제50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도심재개발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역-서대문3구역 제1지구 도심재개발 구역은 대부분의 건물이 50.60년대에 건물을 신축하여 노후화된 건물과 공공시설의 미정비 및 나대지의 쓰레기 방치등 낙후된 환경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환경개선이 불가피한 지역이므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환경을 정비 개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심재개발 구역변경 시행코자 함.

나) 主要骨子

-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16번지 일대
- 도심재개발 구역변경 결정
 - 서울역-서대문3구역 제1지구

	당초 : 2,788.8㎡
	변경 : 3,118.4㎡
- 건축계획 변경결정

	당초 : 2,279㎡
	변경 : 2,338.3㎡

2) 審査結果

서울역-서대문3구역제1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안과 의견이 같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발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7. 7.15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9.27 제54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도심재개발법 전문개정과 자력재개발지역의 청산금 산정기준이 공사착수전(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일) 가격으로 서울특별시장의 방침이 결정('96. 4. 29)되고 시의회에서 의결('96 9. 9)됨에 따라 개정기준에 의거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자력재개발구역(연희3구역)의 청산금부과기준을 분양처분고시일(공사완료일)에서 공사착수전(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가격으로 하고자 함.
- 징수청산금에 대하여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할 경우는 년5%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징수
- 이 조례 시행이전에 기분양처분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5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되 재산정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함.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1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II. 委員會運營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1) 提 案

'97. 7.15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9.27 제54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廢地理由

- 1995년 에너지관련법령,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전면개정으로 그동안 구 조례로 정하여 처리하던 에너지관련 과태료 징수업무의 제반 내용이 개정된 법령에 동일하게 신설수록되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함.

나) 主要骨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

2) 審查結果

재석위원 10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7. 7.1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9.27 제54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우리구 환경보전과 환경친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서대문구주부환경봉사단에 법률적 근거가 없어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어 주부환경봉사단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지역환경보전을 위해 구민 계몽활동 및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확산에 앞장서는 서대문구주부환경봉사단협의회를 둔다.(안 제25조)

2) 審査結果

재석위원 9명 전원반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7. 9.10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9.29 제54회 임시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직제규칙 제16조 제1항의 개정으로 사회복지과 보험연금계가 복지계로 변경됨과 관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보험연금계장"을 "복지계장"으로 개정(안 제4조 제1항)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7. 9.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9.29 제54회 임시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 동에 복지위원을 두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구 사회복지위원회
 -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르는 시행계획의 수립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구성, 임기등
- 동 복지위원회
 - 직무, 정원, 위촉절차, 임기등

2) 審査結果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II. 委員會運營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회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1) 提 案

'97. 9.10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9.29 제54회 임시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가정복지과의 청소년계가 부녀청소년계로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청소년계장"을 "부녀청소년계장"으로 개정(안 제8조 제2항)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7. 9.10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 9.29 제54회 임시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배출자가 부담해야 하나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시 다른 구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값을 적정인상하여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
 - 생활폐기물 - 20리터 기준 270원 → 350원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50리터 기준 880원 → 1,010원
- 현재 3종으로된 사업장용 규격봉투를 5종으로 확대제작
 - 10리터, 20리터종량제 봉투 신규제작

2) 審査結果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7.10.23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11. 5 제55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의 2 제1항의 개정으로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됨과 관련하여 본 노인복지 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개정(안 제5조 제3항 제1호)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 提 案

'97.10.23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11. 5 제55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廢止理由

-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과태료부과, 징수절차)의 개정('96.6.29)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되므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가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II. 委員會運營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7.10.23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11. 5 제55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중 "2) 터키탕업"을 "2) 증기탕업"으로 개정('97 .2.24 대통령령 제15284호)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영업허가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목욕사업의 "터키탕업"을 "증기탕업"으로 한다.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7.10.23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11. 5 제55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 규정 및 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정부조직법 제29조 참조)

나) 主要骨子

-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9조(권한의 위임)을 삭제한다.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 규정됨.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7.10.23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11. 6 제55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통합방위 지원 계획(대통령 훈령 제28호)에 규정하고 있는 "방위협의회"구성취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지역민방위 협의회"를 "방위협의회"로 한다.(안 제3조 제2항)

2) 審査結果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

1) 提 案

'97. 10. 6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청취안은 '97.11. 6 제55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서대문구 현저동 1-6번지의 145필지 일대는 대부분 20~30년 이전에 건축된 소규모 필지의 무허가 주택으로 형성되었고 대부분의 도로가 1~2미터의 폭으로 건축활동은 물론 화재 등에 취약하며 도시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본 지역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번지 일대
- 구역명 : 주택재개발현저5구역
- 면 적 : 25,175.8㎡
- 정비대상건축물 : 203동

	무허가 159동
	유허가 44동
- 건축계획 : 공동주택 10~22층 6개동 654세대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1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지정안과 의견이 같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1) 提 案

'97.10.24 전성장의원의 16인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12.17 제56회정기회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定理由

- 21세기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노인, 청소년, 여성의 복지문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사회적 소외계층이라 할수 있는 장애인 복지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위하여 "서대문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 등을 지원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기금의 조성은 서대문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안 제3조)
- 기금의 용도 (안 제4조) 장애인 문제 또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상담 등의 행사, 장애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장애인 및 장애인 지도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등과 서대문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장애인 복지기금 관리위원회 구성 (안 제6조)
 -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3분의1 이상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본다.
 - 위원장은 서대문구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서대문구 시민국장,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과 장애인에 관한 전문가 또는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복지관련 분야 종사자
-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안 제7조)

2) 審査結果

제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전성장의원의 16인이 발의한 원안을 가결 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학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 提 案

'97.11.13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12.17 제56회 정기회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定理由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교육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게 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함(안 제3조)
- 기금의 용도는 장학사업에 필요한 장학금, 장학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함(안 제4조)
- 기금은 서대문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함.(안 제5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1인을 포함 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둠(안 제6조)
-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함(안 제9조)

2) 審査結果

제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음.

II. 委員會運營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7.11.13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12.17 제56회 정기회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이 개정('97. 9.18)되고 5년간 동결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분뇨처리 책임행정을 위해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 하여야 하는 분뇨처리 의무규정을 둠(안 제2조의 2)
- 5년동안 요금동결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종사원들의 처우 개선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국가의 물가안정관리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 5%수준으로 시달하여 우리구도 5%수준으로 인상 조정함(안제11조제1항)
-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금을 정화조의 청소량에 따라 징수하게 하여 기본 용량보다 크게 설치한 구민들에게 수수료 요금이 경감됨(안제11조제1항제2호)

2) 審査結果

제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1) 提 案

'97.11.13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7.12.17 제56회 정기회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1989. 2.10 공포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 조례(조례 제67호)"와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조례 제1991호) 및 관련법령(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과의 부적합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

나) 主要骨子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을 적용(안 제2조)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금 징수 삭제하고, 납부기간 경과후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 20일)에서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 발부.(안 제4조)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II. 委員會運營

◆ 마포로5구역제6-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

1) 提 案

'97.11.28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청취안은 '97.12.19 제56회 정기회 제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당 구역은 도심재개발구역(제5구역 6지구)으로 지정된 당시(건고시 제 345호 : 79. 9.21), 단일 획지(5,702㎡)로 사업계획결정되어 있어서, 지구의 규모, 형태 및 사업계획상으로 볼 때, 개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재개발 추진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운 구역이었으나, 서울특별시고시 제 87-191호('97. 6. 11)에 의거, 5구역 6-1지구를 5구역 6지구에서 분할 지정하였고, 잔여지역(토지 3,126㎡)도 6-2지구로 지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일반인의 공람을 거친 사항으로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44-1 외 25필지
- 시행자 : 마포로5구역 제6-2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김교택
- 면 적 :

┌	당초 5,702㎡
└	변경
	┌ 마포로5구역6-1 : 2,447.5㎡
	└ 마포로5구역6-2 : 3,254.5㎡

※ 변경사유 : 현황 측량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및 건축계획 변경

2) 審査結果

재석위원 8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지정안과 의견이 같음.

◆ 마포로4구역제6-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

1) 提 案

'97.12.15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청취안은 '97.12.19 제56회 정기회 제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당 구역은 서울의 중심권인 서대문 전철역 인접 역세권이며, 노후건물이 밀집하고, 환경개선이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도시재개발의 절차에 따라 허가를 득하고(1993. 9.18)사업추진 진행중.
 1.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도심조성
 2. 도심의 공동화(도너츠 현상)현상 제거
 3. 슬럼화된 환경의 정비
 4. 주변 외관과 경제활동 향상 도모측면에서 업무와 주거를 위한 주거형 오피스텔을 설치하고, 업무형 오피스텔은 전문적 벤처기업을 유지함으로써 서부서울의 핵심적인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나아가 서울의 중심적인 도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며 도심재개발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구역 변경(건축계획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64-1 외 16필지
 - 시 행 자 : 마포로4구역 제6-2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성인
 - 용도변경 :

┌	당초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사무소)
└	변경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 ※ 변경사유 : 건축계획 변경

2) 審査結果

재석위원 8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지정안과 의견이 같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7.12. 5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1.23 제57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대형폐기물수수료 징수를 서대문구 수입증지로 하며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쓰레기봉투의 현금 교환시 관할 동장의 확인을 생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코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 조례"로 명칭변경(안 제1조)
- 쓰레기봉투의 현금 교환시 관할 동장으로 부터 교환사유 및 교환확인서 발부 조항 삭제(안 제24조 제2, 3항)
- 대형폐기물수수료 수납을 고지서 발부에서 서대문구 수입증지로 하며,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자가 직접 배출할 경우, 수수료면제(안 제28조 제2항)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9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7.12. 5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1.23 제57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주차요금 및 정수 시간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시책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의 분류를 공영주차장과 민영노외주차장으로 용어를 정의하고자 함(안 제1조 제1항 별표1)
- 자가용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1급지 및 2급지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인상함(안 제2조 제1항 별표1)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정수 단위시간을 최초 1구획 30분을 초과한 경우 "15분 단위"를 "10분 단위"로 변경 조정함(안 제2조 제1항 별표1)
- 경자동차(800cc이하)에 대하여 2, 3, 4급지 공영주차장 요금의 50% 할인하도록 함(안 제2조 제1항 별표 1 제7호)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1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II. 委員會運營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8. 2. 6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3.13 제58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을 위하여 위원의 결격사유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어 개정.강화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질병이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한한 자"를 추가로 삽입(안 제5조 제4호)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13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홍은2동제8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

1) 提 案

'98. 2.20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청취안은 '98. 3.14 제58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번지 일대는 일부 무허가가 산재하여 있고 일부지역은 도로폭이 1~2m로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 등에 취약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본 지역을 주택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11번지 일대
- 구 역 명 : 홍은2동 제8구역 주택재개발
- 면 적 : 11,604㎡
- 정비대상건축물 : 85동(무허가 25동, 유허가 60동)
- 건축계획 : 공동주택(아파트) 12 ~ 17층 3개동 204세대
- 건 폐 율 : 17%이하
- 용 적 율 : 181%이하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3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지정안과 의견같음.

II. 委員會運營

◆ 홍은2동제9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

1) 提 案

'98. 2.20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청취안은 '98. 3.16 제58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7번지 일대는 대부분의 토지가 국.공유지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고 또한 20~30년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불량.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로가 좁아 쓰레기 및 분뇨수거와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화재진압 등에 취약함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본 지역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17번지 일대
- 구 역 명 : 홍은2동 제9구역 주택재개발
- 면 적 : 16,525.2㎡
- 정비대상건축물 : 131동(무허가 115동, 유허가 16동)
- 건축계획 : 공동주택(아파트) 6 ~ 16층 7개동 442세대
- 건 폐 율 : 25.74%이하
- 용 적 율 : 262.93%이하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3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지정안과 의견같음.

◆ 홍은2동제1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예견청취안 ◆

1) 提 案

'98. 2.20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청취안은 '98. 3.17 제58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3~70 일대는 20~30년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불량·노후주택이 밀집하고 있고 접근도로가 고지대 경사지로 화재 등에 취약하여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본 지역을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13 ~ 70번지 일대
- 구 역 명 : 홍은2동 제11구역 주택재개발
- 면 적 : 7,863㎡
- 정비대상건축물 : 52동(무허가 43동, 유허가 9동)
- 건축계획 : 공동주택(아파트) 7 ~ 15층 2개동 184세대
- 건 폐 율 : 125.25%이하
- 용 적 율 : 222.18%이하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3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지정안과 의견같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8. 4.22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5. 6 제59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제 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기금출납원을 "가스계장"에서 "연료계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기금출납원을 "가스계장"에서 "연료계장"으로 개정(안 제5조 제2항)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3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1) 提 案

'98. 4.22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8. 5. 7 제59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定理由

- 기 시행중인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분리배출방법 및 수수료 징수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 도입 (안 제5조)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중 1일 300Kg 미만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안 제8조)
- 음식물쓰레기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토록하고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케 하거나 감량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 (안 제10조)
-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전용봉투 사용시는 봉투판매 가격으로 전용 수거용기 사용시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 (안 제11조)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는 상호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이 가능(안 제12조)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음.

II. 委員會運營

4. 特別委員會

特別委員會는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즉, 수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안건의 심사, 예산안 및 결산검사와 때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위해 구성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내실있게 운영하였는 바,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委員會名	活動期間	內 容	委員會構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 차)	'97. 7.29 (1일간)	1997년도제1회서대문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	위원장:이진수 간 사:최광진 위 원:이기봉, 김종섭 이석문, 김영일 이성배, 박덕균 정일출, 권재일 정일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2 차)	'97.12.12 ~ '97.12.16 (5일간)	- 96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심사 -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심사 - 98년도예산안심사	위원장:이성배 간 사:박덕균 위 원:송영우, 김동덕 정현철, 전성장 김종철, 김정현 정혜연, 김영일 최광진, 조재구 강석준의원
일반폐기물처리대책 특별위원회	'97. 1. 1 ~ '97. 7.18 (약7개월간)	사업장등에서 무단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등을 강구 제도화하여 주민생활향상에 기여코자 구성	위원장:김정현 간 사:김동덕 위 원:정혜연, 전성장 이진수, 정일수 송영우, 정일출 권재일의원
재해대책특별위원회	'97. 1. 1 ~ '97. 7.20 (약7개월간)	도시시설물의 안전여부를 점검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등 재해대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	위원장:정현철 간 사:이석문 위 원:김종철, 조재구 강석준, 홍성덕 김영일, 허준구 정일수의원

第2章 議會 運營

委員會名	活動期間	內 容	委員會構成
재정자립발전 특별위원회	'97. 4.19 ~ '98. 6.30 (약15개월간)	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수 증대 자구 노력 및 경영수익사 업과 예산절감등 자립의 요소 가 될수 있는 방안을 발굴함으 로써 재정책충은 물론 주민복 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	위원장:이성배 간 사:이석문 위 원:정혜연, 김정현 김동덕, 김종섭 박덕균, 최광진 정일수의원
의회윤리특별위원회	'97. 6.30 ~ '97.12.29 (6개월간)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주체 이며 국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 자임을 감안하여 의원 윤리강 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구성	위원장:조재구 간 사:이기봉 위 원:김동덕, 김종섭 김종철, 정혜연 최광진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97. 1. 1~ '97.11.24 (11개월간)	현행 조례중 주민생활불편 과 행정낭비초래등 불합리 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법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구성	위원장:전성장 간 사:이기봉 위 원:정일출, 박덕균 김종섭, 허준구 김종철, 조재구 김영일의원
의사당건립추진 특별위원회	'97. 1. 1~ '98. 6.30 (18개월간)	현 의사당건물은 낡고 보건 소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 어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 하는 바 독립의사당 부지확 보와 예산확보등 추진방향 검토를 위하여 구성	위원장:강석준 간 사:김종섭 위 원:김동덕, 정혜연 이석문, 이성배 최광진, 홍성덕 오환일의원
징계자격특별위원회	'97. 9.30~ '97.12.22 (약3개월간)	의원이 품위유지 및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지방자치 법과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 위를 할 때 의회의 자율권차 원에서 징계키 위해 구성	위원장:김종철 간 사:이기봉 위 원:이진수, 강석준 김동덕의원

II. 委員會運營

委員會名	活動期間	內 容	委員會構成
행정사무조사 (주민용신문구독) 특별위원회	'97.11.10~ '97.11.14 (5일간)	국가주요정책과 시정 및 구 정홍보를 위하여 통.반장등 주민에게 구 예산으로 배부 되고 있는 일간지 및 지역신문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하여 구 행정사무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	위원장:권재일 간 사:이석문 위 원:정혜연, 김정현 이기봉, 정일출 박덕균의원
행정사무조사 (주차장위탁관리) 특별위원회	'97.11.10~ '97.11.14 (5일간)	주차장설치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현실적인 시대요구에 맞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다 나은 주민생활의 도모와 구 재정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구성	위원장:김동덕 간 사:이성배 위 원:최광진, 김종섭 김영일, 이진수 허준구의원
행정사무조사 (홍제3,4구역주택 개량재개발구역내 시유지매각) 특별위원회		서대문구 홍제3,4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시유지 매각처분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하여 민원해소는 물론 행정업무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	위원장:최광진 간 사:이기봉 위 원:김동덕, 전성장 이진수, 이성배 박덕균, 조재구 정일출의원

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

'97. 7. 4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예산안은 '97. 7.29 제53회 임시회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상정되었으며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1) 提案理由

- '97년도 제1회 追加更正豫算案은 '97追加更正豫算편성 기본지침에 의거법정.의무적경비에 중정을 두어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감액분과 '96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견인차량 사용료 수입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음.
-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2규정에 의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主要骨子

- '97年度 第1回追加更正豫算案 規模

(단위 : 천원)

회계명	예산(안) (A=B+E)	기정예산액			증(△)감 금회추경 (E)	증감률 (%)
		계 (B=C+D)	당초예산액 (C)	간주처리 (D)		
총 계	128,903,129	116,565,940	111,695,994	4,869,946	12,337,189	10.5
일반회계	117,737,741	108,850,946	103,981,000	4,869,946	8,886,795	8.1
특별회계	11,165,388	7,714,994	7,714,994	0	3,450,394	44.7
의료보호기금	1,288,606	1,280,606	1,280,600	0	8,006	0.6
새마을소득지원	817,750	474,160	474,160	0	343,590	72.4
주차장	9,059,032	5,960,234	5,960,234	0	3,098,798	52.0

II. 委員會運營

○ 豫算科目別, 委員會別追更豫算 現況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위원회별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안	증(△)감
	장별	항별			
총 계			117,737,741	108,850,946	8,886,795
소 계			1,548,586	1,480,992	67,594
운영위원회	일반행정	지방의회운영	1,548,586	1,480,992	67,594
소 계			61,383,958	58,777,931	2,606,027
총무위원회	일반행정	기획관리	22,260,771	20,641,067	1,619,704
		공보관리	4,062,706	3,973,745	88,961
		행정감사	106,935	106,935	
		내무행정	28,075,013	27,915,472	159,541
		재무행정	1,048,1'97	987,651	60,546
	사회개발	보건	3,567,681	3,109,125	458,556
		도시개발	229,686	185,686	44,000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399,647	347,111	52,536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1,633,322	1,511,139	122,183
	소 계			54,805,1'97	48,592,023
시민건설위원회	사회개발	환경관리	20,576,583	18,486,844	2,089,739
		공원녹지관리	2,994,873	2,358,778	636,095
		일반사회복지	5,699,562	4,162,584	1,536,978
		생활보호	1,480,727	1,381,138	99,589
		가정복지	4,587,976	3,976,927	611,049
		주택사업	278,195	254,187	24,008
		도시개발	633,461	516,811	116,650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124,103	122,303	1,800
		광공업관리	317,770	317,770	
		치수및재해대책	206,148	84,358	121,790
	건설관리	16,542,955	15,718,257	824,698	
	교통행정관리	1,362,844	1,212,066	150,778	

第 2 章 議 會 運 營



○ 특별회계

구분 위원회별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안	증(△)감
	장 별	항 별			
총 계			11,165,388	7,714,994	3,450,394
소 계			817,750	474,160	343,590
총무위원회	사 회 개 발	생 활 보 호	817,750	474,160	343,590
소 계			10,347,638	7,240,834	3,106,804
시 민 건 설	사 회 개 발	생 활 보 호	1,288,606	1,280,600	8,006
위 원 회	경 제 개 발	교통행정관리	9,059,032	5,960,234	3,098,798

3) 修正內容

- '97年度 第1回追加更正豫算 總 128,903,129천원
 - 一般會計 : 117,737,741천원
 - 特別會計 : 11,165,388천원
- 修正內譯 — 수정규모 : 599,680천원
 - 총 괄
 - 삭감 : 10개 항목 226,829천원
 - 증액 : 11개 항목 226,829천원
 - 일반회계
 - 삭감 : 9개 항목 206,829천원
 - 증액 : 10개 항목 206,829천원
 - 특별회계
 - 삭감 : 1개 항목 20,000천원
 - 증액 : 1개 항목 20,000천원
- 豫算科目別 追加更正豫算 修正案 現況

Ⅱ. 委員會運營

가) 일반회계

○ 삭감 — 9건 206,829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심사결과			비고 (페이지)
세항	목		추경예산안	조정안	증(△)감	
소		계	224,069	17,240	△206,829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언시간표시기 ○CCTV구입비(과목경정) ○방송시설장비구입비 (과목경정) 	15,000 19,000 20,000	0 0 0	△ 15,000 △ 19,000 △ 20,000	의회운영위원회 (p 48)
공보관리	시 설 비	○문화체육회관 안내 게시판 이전 설치	2,000	0	△ 2,000	총무위원회 (p 61)
서무관리	차산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실 테이블 구매 ○회의실 의자 구매 	12,000 4,000	0 0	△ 12,000 △ 4,000	총무위원회 (p 64)
비상대책	시 설 비	○만방위 대파 시설 철거비 증액(연회동)	13,486	0	△ 13,486	총무위원회 (p 130)
예 비 비	예 비 비	○예비비	122,183	17,240	△104,943	총무위원회 (p 133)
도시공원 관 리	시 설 비	○안산공원 편익시설 조성 - 자작나무숲 산림욕장	16,400	0	△ 16,400	시민건설위원회 (p 94)

第2章 議會 運營

○ 증액 - 10건 206,829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심 사 결 과			비 고 (페이지)
세 항	목		추경예산안	조정안	증(△)감	
소 계			1,500	208,329	206,829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 의원 의정활동 비디오 제작비 증액		7,000	7,000	의회운영위원회
	자산취득비	○ CCTV구입비(과목경정) ○ 방송시설장비구입비(과목경정)	0 0	19,000 20,000	19,000 20,000	
의약관리	자산취득비	○ 필름 자동 현상기 구입	0	20,000	20,000	
보건행정 관 리	기본조사 설 계 비	○ 의사당 4층 증축 공사 128,000,000원×2.0% =2,560,000원	0	2,560	2,560	총무위원회
	설시설계비	○ 의사당 4층 증축공사 2,000,000원×3.2% =4,096,000원	0	4,096	4,096	
	시 설 비	○ 의사당 4층 증축공사 2,000,000원×64평 =128,000,000원	0	128,000	128,000	
	시설부대비	○ 의사당 4층 증축공사 128,000,000원×0.72% =921,600원	0	922	922	
	감리비	○ 의사당 4층 증축공사 128,000,000×2.93% =3,750,400원	0	3,751	3,751	
청 소 년 복 지	민간기본 이 전	○ 공부방 시설 개보수비 증액	1,500	3,000	1,500	시민건설위원회

II. 委員會運營



나) 특별회계

○ 삭감 — 1건 20,0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심사결과			비고
세항	목		추경예산안	조정안	증(△)감	
주차장관리	적립금	○주차장 시설 적립금	1,610,000	1,590,000	△20,000	시민건설위원회

○ 증액 — 1건 20,0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심사결과			비고
세항	목		추경예산안	조정안	증(△)감	
주차장관리	시설비	○홍제1동 361의 36, 공영 노외주차장 건립비 증액	0	20,000	20,000	시민건설위원회

※ 기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서무관리와 주차장 특별회계, 토지매입비에 편성된 “공공의 청사 및 주차장부지 매입비” 경비명을 “공공의 청사(서대문구의회 청사) 및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변경

4) 審査結果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第2章 議會運營

□ 1998年度 豫算案

'97.11.20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예산안은 '97.12.12~12.16 (5일간) 제56회 정기회 제 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1998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새출예산은 각종 경비의 법령 및 조례등이 정한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당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主要骨子

- 1998 豫算案 規模

(단위 : 천원)

회 계 명	'98 예산액	'97 예산액	증(△)감	증감률 (%)	비고
총 계	130,033,000	111,695,994	18,337,006	16.4	
일 반 회 계	118,900,339	103,981,000	14,919,339	14.3	
특 별 회 계	계	11,132,661	7,714,994	3,417,667	44.3
	의 료 보 호 기 금	1,406,053	1,280,600	125,453	9.8
	새 마 을 소 득 지 원 사 업	670,529	474,160	195,893	41.3
	주 차 장	9,056,080	5,960,234	3,095,846	51.9

第2章 議會運營

나) 歲出豫算 : 130,033,000천원

일반회계 : 118,900,339천원

특별회계 : 11,132,661천원

○ 예산과목별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98.예산액	'97.예산액	증(△)감
장별	항별			
합	계	118,900,339	103,981,000	14,919,339
의회비	지방의회운영	1,501,226	1,482,992	18,234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25,700,174	22,117,971	3,582,203
	공보관리	1,609,443	1,207,133	402,310
	행정감사	113,905	106,935	6,970
	내무행정	25,900,951	27,815,227	△ 1,914,276
	재무행정	1,657,639	987,651	669,988
보건및생활환경관리	보건	3,927,317	3,099,125	828,192
	환경관리	21,337,032	17,898,104	3,438,928
	공원녹지관리	2,724,196	2,071,642	652,554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	5,182,551	4,095,446	1,087,105
	생활보호	1,651,803	1,341,970	309,833
	가정복지	3,807,972	3,975,487	△ 167,515
주택및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1,065,560	236,777	828,783
	도시개발	1,220,199	688,900	531,299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112,382	82,688	29,694
	광공업관리	352,670	317,770	34,900
국토자원보존개발	치수및재해대책	151,264	84,358	66,906
	건설관리	17,713,841	13,302,528	4,411,313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845,694	1,210,046	△ 364,352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340,246	347,111	△ 6,865
예비비	예비비	1,238,996	1,511,139	△ 272,143

II. 委員會運營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98.예산액	'97.예산액	증(△)감
장 별	항 별			
계		11,132,661	7,714,994	3,415,667
의료보험기금	의료보호비	1,406,053	1,280,600	125,453
새마을소득지원	사업비	670,528	474,160	194,368
주차장	교통행정관리	9,056,080	5,960,234	3,095,846

3) 常任委員會 豫算審查報告書 要旨

가) 議會運營委員會

(보고자 : 이성배 의원)

- 審査日字 : '97.12. 8.제56회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의결
- 審査內容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501,226천원에 대하여 의사운영 기관 및 부서운영비등 8개사업 35,966천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도록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삭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요구하였음.

나) 總務委員會

(보고자 : 박덕균 의원)

- 審査日字 : '97.12. 3.제56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97.12. 8.제56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의결
- 審査內容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은 일반회계 61,443,411천원, 특별회계 2,076,581천원 합계 63,519,922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획관리 관서당경비등 90개사업 852,703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민방위관리 자산취득비 1개사업 6,600천원을 증액하도록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삭감 및 증액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조정하도록 요구하였음.

다) 市民建設委員會

(보고자 : 최광진 의원)

- 審査日字 : '97.12. 3.제56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상정
'97.12.10.제56회 정기회 제6차 시민건설위원회 의결
- 審査內容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55,955,702천원, 특별회계 10,462,133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사회복지 일반수용비등 69개사업 1,700,304천원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시설비 1개사업 6,000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교

II. 委員會運營

통 및 운수지도시설비등 8개사업 37,273천원을 증액하도록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삭감 및 증액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조정하도록 요구하였음.

4) 修正案 內容

가) 修正理由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1998년도 자치구 조정교부금 가내시 배분 예산이 변경 확정내시 시달되어 세입 예산 일부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 또한 재정자립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난 위기를 극복코자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성되거나 소모적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삭감 조정하여 도로건설 분야 등 주민복지 시설에 활용하도록 하였음.

나) 修正豫算案 主要骨子

- 歲入豫算
 - 일반회계 : 1998년도 예산액 118,900,339천원중 1개항목(조정교부금) 2,600,000천원 삭감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음
- 歲出豫算
 - 1998년도 예산액 총 130,033,000천원
 - ┌ 일반회계 118,900,339천원
 - └ 특별회계 11,132,661천원
 - 삭감 : 152개항목 4,392,178천원
 - 증액 : 43개항목 1,792,067천원
- 一般會計
 - 삭감 : 152개항목 4,392,178천원
 - 증액 : 43개항목 1,792,067천원
- 特別會計 : 원안과 같음

第2章 議會運營

다) 修正(確定)規模

- 127,432,889천원
 - └ 일반회계 : 116,300,228천원
 - └ 특별회계 : 11,132,661천원

라) 豫算科目別 修正內譯

- 一般會計 ——— 삭감

- 삭감(총 8건, 45,006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비고
세항	목(세목)		'98 예산안	조정안	증(△)감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	60,090,356	57,490,245	△2,600,111	p29
의사운영	인건비 (기본급)	봉급(처우개선비)	9,616	0	△ 9,616	p118
	기관 및 부서 운영비	당직실 침구구입비	70	0	△ 70	p120
		당직실 침구 세탁	120	0	△ 120	"
	일반수용비	의회안내 책자 발간	10,000	0	△ 10,000	p122
		화분 구입비 방석 세탁	1,000 1,200	500 500	△ 500 △ 700	p123 "
자산및물품 취득비	카메라	4,000	0	△ 4,000	p129	
의정활동	여비	자매결연도시 조인식 방문 등	40,000	20,000	△ 20,000	p130
기획관리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 운영비)	신문구독료(국장)	480	288	△ 192	p132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 수활동비)	행정쇄신 및 기획업무 조정	3,600	0	△ 3,600	p135

II. 委員會運營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비고
세항	목(세목)		'98 예산안	조정안	증(△)감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238,996	1,177,852	△61,144	p501
예산운영	인건비 (기본급)	봉급(처우개선비)	239,470	0	△239,470	p138
	출연금 (자치단체 출연금)	경영투자사업기금	1,100,000	600,000	△500,000	p158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구정연구개발비	100,000	50,000	△50,000	p158
	시설비등 (시설비)	도로시설물 정비	200,000	100,000	△100,000	p159
		위험시설물 정비	200,000	100,000	△100,000	"
		기타 공공시설물 정비	300,000	200,000	△100,000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 품취득비)	행정비품 및 집기구입	80,000	40,000	△40,000	"	
전산정보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 품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신규)	88,350	0	△88,350	p169
문화공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주민용신문구독 중앙지	168,000	138,000	△30,000	p173
		정월대보름 맞이행사	1,000	0	△1,000	p175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부처님오신날 기념품 (양초, 향)	2,000	0	△2,000	p183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1,600	0	△1,600	"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출연자 사례금	1,000	0	1,000	p185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신촌문화축제	50,000	0	50,000	p187

第2章 議會運營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비고
세항	목(세목)		'98 예산안	조정안	증(△)감	
문화공보	시설비등 (시설비)	문화회관 조경시설 설치	4,000	0	△4,000	p188
	자산취득비 (자산및물 품취득비)	문화회관대강당조명시설	8,000	0	△8,000	"
		문화회관대강당특수 효과장비	11,200	0	△11,200	"
		문화체육회관조명 자동화시설	17,000	0	△17,000	"
감사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 품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	2,000	△3,500	p192
사무관리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 수활동비)	주요업무추진	60,000	30,000	△30,000	p205
	시설비등 (시설비)	청사현관택스공사	30,000	0	△30,000	p206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사설외국어학원위탁 교육	16,800	0	△16,800	p208
		민원분야 친절 우수 기관 위탁교육	12,500	6,250	△6,250	p209
	여비 (국외여비)	외국어 교육과정 우수자 해외연수	6,400	0	△6,400	"
		시립대 위탁교육생 해외견학	3,400	0	△3,400	p211
		외국 자매도시 상호 교환 방문	48,000	0	△48,000	"
		신임관리자 교육과정 해외연수	6,192	0	△6,192	"
		선진행정분야 기획 연수 (기획, 청소, 교통, 보 건분야 등)	30,000	0	△30,000	"
		도시정비분야 실무자 해외연수	5,000	0	△5,000	"

II. 委員會運營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비고
세항	목(세목)		'98 예산안	조정안	증(△)감	
사회진흥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구민걷기대회	6,000	3,000	△3,000	p219
	사회단체보조금(임의보조단체보조금)	새마을운동단체사업비보조	46,975	0	△46,975	p223
		바르게살기운동단체사업비지원	17,760	0	△17,760	p225
		생활체육연합회, 동호인 등 행사지원 새마을정신교육	16,000 6,702	0 0	△16,000 △6,702	p226 p226
민원실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트북컴퓨터구입 (신규)	7,500	0	△7,500	p234
동행정영	인건비 (기본급)	봉급(처우개선비)	139,488	0	△139,488	p235
	관서당경비 (기관및부서운영비)	당직용 침구 구입비 (침구구입)	1,863	0	△1,863	p238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민원안내 상황판	8,800	4,400	△4,400	p240
	일반업무추진비(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구민대상 공적심사 위원회 감담회	300	0	△300	p246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모범국민표창 수상자 간담회	1,320	0	△1,320	"
		선행유공국민 표창 수상자 간담회	440	0	△440	"
	시설비등 (시설비)	동안내 현황도 제작	27,500	13,750	△13,750	p252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비품 교체 및 보강	22,500	12,000	△10,500	p253	
세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채납독촉고지서)	4,000	2,000	△2,000	p255

第2章 議會 運營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비고
세항	목(세목)		'98 예산안	조정안	증(△)감	
세무1 관리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 수활동비)	부과업무추진 및 채권 확보	4,000	0	△4,000	p259
	자산취득비 (자산및물 품취득비)	지역세무시스템 도입	280,325	0	△280,325	p260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결산검사위원 수당	8,750	5,250	△3,500	p263
재산관리	관서당경비 (기관및부 서운영비)	신문구독료(국장실)	480	288	△192	p265
	여비 (국외여비)	국유지관리에 따른 해외연수	25,000	12,500	△12,500	p270
보건관리	인건비 (기본급)	봉급(처우개선비 3.5%)	26,493	0	△26,493	p284
	관서당경비 (기관및부 서운영비)	신문구독료	1,440	960	△480	p289
	일반운영비 (임차료)	보건소분소 임대료	418,826	0	△418,826	p295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 수활동비)	AIDS환자 관리 활동비	4,200	2,100	△2,100	p299
		질병정보모니터 간담회	200	0	△200	"
		AIDS추방캠페인	1,000	500	△500	p300
	시설비등 (시설비)	보건소 분소 시설비	110,000	0	△110,000	p301
	자산취득비 (자산및물 품취득비)	사무용 캐비닛	180	0	△180	p301
의자(2호)		251	0	△251	"	
사무용 책상(편수)		311	0	△311	"	
민원용 손 건조기		600	0	△600	"	
	보건소 분소 설치 경비 및 집기류	21,300	0	△21,300	"	

II. 委員會運營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비고
세항	목(세목)		'98 예산안	조정안	증(△)감	
보건지도	관서당경비 (기관및부 서운영비)	신문구독료	576	480	△96	p303
	자산취득비 (자산및물 품취득비)	보건소분소장비구입	38,611	0	△38,611	p309
의약관리	관서당경비 (기관및부 서운영비)	신문구독료	576	480	△96	p312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 수활동비)	의약단체 간담회	1,200	600	△600	p315
	자산취득비 (자산및물 품취득비)	회의용 테이블 회의용 의자	143 383	0 0	△143 △383	p316 "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등기부등본발급 및 열람	73,007	24,500	△48,507	p425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 수활동비)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900	0	△900	p427
		중기업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100	0	△100	"
		공유토지분할심의 위원회 운영	400	0	△400	"
		축척변경위원회 운영	400	0	△400	"
민방위관리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 수활동비)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추진비	500	0	△500	p491
		민방위강사 위촉 간담회	150	0	△150	"
민방위관리 (국고보조 사업)	인건비 (기타직보수)	공익근무요원(병무 보조) 봉급	4,535	0	△4,535	p493
재난관리	출연금 (자치단체 출연금)	재난관리기금	25,467	0	△25,467	p498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시민건설위원회)

1. 일반회계

○ 삭감(총 65건, 1,478,43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비고
세항	목(세목)		'98 예산안	조정안	증(△)감	
사회복지	일반수용비	지역사회봉사활동 장비구입	2,976	0	△2,976	p371
	일반업무 추진비	할아버지 사회봉사 활동에 따른 간담회비	1,840	0	△1,840	p373
	일반보상금	생활보호대상노인 산업시찰	8,200	0	△8,200	p374
		할아버지 선생님 (토요서당)	2,240	0	△2,240	p374
	시설비등 (시설비)	서대문종합 사회복지관증축	500,000	0	△500,000	p381
	민간자본보조	경로이발소 텔레비전 구입	500	0	△500	p381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동력 휠체어구입	6,000	0	△6,000	p382
가정복지	일반수용비	시민합동결혼식 행사비	850	0	△850	p386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시민합동결혼식	1,200	0	△1,200	p387
여성복지	일반수용비	알뜰패션쇼(재활용품)	100	0	△100	p388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알뜰패션쇼 운영	100	0	△100	p389
	민간실비 보상금	알뜰패션쇼	900	0	△900	p389
	사회단체보 조금(임의보 조단체보조금)	동새마을 부녀회	13,200	0	△13,200	p390
유아복지	일반수용비	보육시설 관련 인쇄물 (인가증, 종사자인사 기록카드 등)	500	250	△250	p395

II. 委員會運管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비고
세항	목(세목)		'98 예산안	조정안	증(△)감	
유아복지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그림잔치지원	3,000	0	△3,000	p400
		보육시설 재롱이 잔치지원	6,000	0	△6,000	p400
지역경제관리	일반수용비	개인서비스요금 책자홍보물	1,400	700	△700	p432
		연탄사용가구 지원(가스발견탄)	600	300	△300	p433
		특화 거리꽃길 조성	10,000	0	△10,000	p434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비	540	180	△360	p435
	자치단체자본이전(자치단체행사업비)	유기동물 위탁처리비	3,600	0	△3,600	p437
환경관리	일반수용비	정화조청소 안내 스티커	1,820	0	△1,820	p322
		오존경보 홍보 현황판	7,590	0	△7,590	p323
	국내여비	공해배출업소 단속	19,200	12,000	△7,200	p325
청소관리	자산및품취득비	청소차량(2.5톤 진개 덤프-신규5)	313,500	280,500	△33,000	p349
		재활용품 5종 분리수거함 구입	11,000	0	△11,000	p350
		일반콘테이너 구입(11톤)	12,000	0	△12,000	p350
도시정비	기본조사설계비	신촌도로지하 이용방안 타당성 조사	52,000	25,000	△27,000	p419
		가좌지구 도로지하 이용방안 타당성 조사	50,000	25,000	△25,000	p419
	시설비	현수막지정 계시대 설치	85,000	0	△85,000	p420
교통기획행정	일반수용비	교통백서 발간	10,000	5,000	△5,000	p470
	운영수당	사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	1,600	800	△800	p471
	재료비	자치구교통현황자료조사 및 교통백서 발간	2,480	2,480	0	p471

第2章 議會運營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비고
세항	목(세목)		'98 예산안	조정안	증(△)감	
교통기획 행정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체 대표 간담회	1,000	500	△500	p472
		마을버스업체 대표 간담회	600	300	△300	p472
	기타 포상금	교통종합대책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3,100	0	△3,100	p473
	시설비	반사경 설치 및 보수	9,000	4,500	△4,500	p474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	90,000	45,000	△45,000	p474
		가속방지턱 정비 · 신설	22,500	9,000	△13,500	p475
· 시설방지턱 정비 과속방지턱 예고 표지판 설치		10,000 38,400	0 7,800	△10,000 △30,600	p475 p476	
교통 및 운수지도(시 도비보조사업)	인건비 (기타직보수)	공익근무요원(버스 전용차로)봉급	10,956	0	△10,956	p480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기존 건축물대장 재정비	108,000	0	△108,000	p409
	기본조사 설계비	도시설계지구 용역비	105,000	0	△105,000	p410
건설관리	기관 및 부서 운영비	신문구독료(국장)	480	288	△192	p444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부상심의회 간담회비	360	180	△180	p449
	시설비	가로판매점 관리	2,400	0	△2,400	p451
도로건설	일반수용비	도로발전계획 인쇄	10,000	0	△10,000	p454
	운영수당	기술자문단 운영	3,000	2,000	△1,000	p455
	재료비	제설함 제작	14,000	7,000	△7,000	p460
공원관리	일반수용비	테마공원관련홍보물제작	4,000	2,000	△2,000	p356
	시설장비 유지비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	16,000	8,000	△8,000	p357

II. 委員會運營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비고
세항	목(세목)		'98 예산안	조정안	증(△)감	
공원관리	재료비	기념식수 묘목 및 표찰	20,000	0	△20,000	p357
		기념식수장 명패식	20,000	0	△20,000	p357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테마공원조성 업무추진	2,400	0	△2,400	p358
	토지매입비	안산공원내 기념식수 장 조성	60,000	0	△60,000	p361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150,000	100,000	△50,000	p361
공원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책상등	1,776	0	△1,776	p362
녹지관리	시설비	소나무살리기 사업	100,000	50,000	△50,000	p367
		소공원 조성사업	60,000	30,000	△30,000	p367
		가로수 보식 및 전지	50,000	30,000	△20,000	p367
		자연학습장 및 수경 재배장 활성화	30,000	20,000	△10,000	p368
		안산숲길 조경 보완사업	34,300	0	△34,300	p368
		지정보호수 생장조건 개선사업	30,000	20,000	△10,000	p368
		연희 IC 소나무 진달 래 동산 조성사업	50,000	20,000	△30,000	p368

第2章 議會運營

○ 一般會計---중액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비고
세항	목(세목)		'98 예산안	조정안	증(△)감	
문화공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주민용 신문 구독 (지역지)	85,421	100,000	14,579	
사회진흥	사회단체 보조금 (정보보조단 체보조금)	새마을운동 구지회	0	36,000	36,000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200,000원×22개동)	0	26,400	26,400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0	16,000	16,000	
		바르게살기 협의회 (1,700,000원×22개동)	0	37,400	37,400	
동행정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 품취득비)	신축청사집기구입 (홍제4동)	5,000	25,000	20,000	
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매매 및 대부계약서 (1,000원×112권)	100	112	12	
		분할측량수수료 (137,500원×195권)	20,625	26,813	6,188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	국유재산관리제도쇄 신위원회 참석자(여비) (5,000원×6회×80명)	0	2,400	2,400	
		국유재산관리제도쇄신 위원회 참석자(급량비) (5,000원×6회×80명)	0	2,400	2,400	
	자산취득비 (자산및물 품취득비)	레이저프린터 (1,500,000원×1대)	0	1,500	1,500	
보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보건소청사설계공모 시상금	0	5,000	5,000	
	시설비등 (기본조사 설계비)	보건소청사기본조사설계 (3,000,000천원×1.3%)	0	39,000	39,000	
	시설비등 (실시설계비)	보건소청사 실시 설계 (3,000,000천원×2.08%)	0	62,400	62,400	

II. 委員會運營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비고
세항	목(세목)		'98 예산안	조정안	증(△)감	
의약관리	일반업무추진비(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	의약관리 업무추진	1,000	2,000	1,000	
하수관리	특수활동비(시책추진특수활동비)	목욕비등	0	4,800	4,800	
		하수관리반장 격려	0	360	360	
공원관리	특수활동비(시책추진특수활동비)	공원관리반장 격려	0	360	360	
		시설비등(시설비)	60,000	80,000	20,000	
여성복지	사회단체보조금(정액보조단체보조금)	새마을부녀회(1,200,000원×22개동)	0	26,400	26,400	
청 소 년 복 지	시설비등(토지매입비)	청소년수련원부지매입(6,571㎡×73,000원)	0	480,000	480,000	
유아복지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	어린이집 종사자 표창	85	340	255	
	일반보상금(민간실비보상금)	어린이집 종사원 표창 부상품	360	1,440	1,080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영아간식비(민간)(910원×25일×271명×12월)	0	73,983	73,983	
건축지도	일반운영비(급량비)	공사감독급량비	1,200	2,400	1,200	
	일반운영비(재료비)	공부정리	3,894	7,786	3,892	
	여비(국내여비)	위법건축물단속활동비	6,000	14,400	8,400	
도시정비	시설비등(기본조사설계비)	도시계획상세계획용역비(충정지구)	0	126,000	126,000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	화분 및 수족관 관리	720	2,400	1,680	

第2章 議會運營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비고
세항	목(세목)		'98 예산안	조정안	증(△)감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유니목 체인 1,000,000원×2개 =2,000,000원	0	2,000	2,000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도로관리반장 격려	0	360	360	
	시설비등 (시설비)	터널 및 지하차도 물세척	19,793	39,586	19,793	p465
		홍제동 332의 12~332 의 3간 도로개설 B=8mL=100m	0	50,000	50,000	
교통기획 행정	시설비등 (시설비)	불광천변 도로 교통 보행 환경개선	0	40,000	40,000	
교통 및 운수지도	시설비등 (시설비)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초소	0	9,600	9,600	
민방위 관리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 원보상금) 국고보조사업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5,520	5,987	467	p495
	자산취득비 (자산및물 품취득비)	민방위 장비함 (캐비넷) 구입	0	6,600	6,600	
사회복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	서대문종합사회 복지관 증축	0	500,000	500,000	
지역경제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유기동물위탁처리비	0	3,600	3,600	
교통 및 운수지도	인건비 (기타직보수)	공익근무요원(버스 전용차로)봉급	0	10,956	10,956	
민방위 관리	인건비 (기타직보수)	공익근무요원(병무 보조)봉급	0	4,535	4,535	
재난관리	적립금 (적립금)	재난관리기금	0	25,467	25,467	
녹지관리	시설비등 (시설비)	수종갱신	0	100,000	100,000	

II. 委員會運營

..... ▲

- 特別會計 —— 삭감
“해당없음”
- 特別會計 —— 증액
“해당없음”

5) 豫算案 總則

예산총규모 조정에 따라 일시차입 한도액(3%) 변경

6) 審査結果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 2 ~ 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97.12.12 ~ 12.16)에 일괄상정하여 심사한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안 가결하였음.

□ 1996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案

'97. 8.28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이 결산승인안은 '97.12.12 제56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提案理由

-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임.

2) 1996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 規模

○ 總括

(단위 : 백만원)

회계별	구분			이 월 액 내 역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월액	사고이월	보조금잔액	세계잉여금
합 계	122,004	88,223	33,780	6,053	469	27,258
일반회계	110,019	82,981	27,038	5,722	469	20,846
특별회계	11,984	5,242	6,742	330		6,411

第2章 議會運營

..... ▲

○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비 고
합 계	112,888	132,620	122,004	10,615	
일반회계	101,961	114,400	110,019	4,380	
특별회계	10,926	18,219	11,984	6,235	

○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 (b)	지출액 (c)	이월액 (원인미필) (d)	불용액 $a-(c+d)=f$	비고
합 계	114,907	93,959	88,223	6,053 (317)	20,630	
일반회계	103,980	88,400	82,981	5,722 (304)	15,276	
특별회계	10,926	5,559	5,242	330 (13)	5,353	

3) 審査結果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II. 委員會運營

..... ▲

□ 19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97. 8.28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이 예비비지출승인안은 '97.12.12 제56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提案理由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중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임.

2) 主要骨子

- 總括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불용액	
합 계	'976,965	731,804	731,804	245,161	
일반회계	931,965	689,064	689,064	242,901	
특별회계	45,000	42,740	42,740	2,260	

- 199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결산 현황으로는 연회동 산 2-41호 위험절개지 보수공사의 9개사업에 대하여
 - 지출결정액 : 976,965천원이며
 - 지출액은 : 731,804천원이며
 - 245,161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3) 審査結果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나.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

1) 제안이유

사업장 및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과 일련의 공사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제도화함으로써 서대문구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문화도시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주민생활환경 향상에 기여코자 '96.10.18 이진수의원의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구성함.

2) 구성 및 활동기간

가) 구성 — 9인

위원장 : 김정현 의원, 간사 : 김동덕 의원

위 원 : 정해연, 전성장, 이진수, 정일수, 송영우, 정일출, 권재일의원

나) 활동기간 : '96.10.22 ~ '97. 7.18 (9개월간)

※ 활동기간 1차 연장 : '97. 4.19 ~ '97. 7.18 (3개월간)

3) 운영방향

-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 병행 실시)
- 각종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상태 제고
- 폐수 방출 및 폐유처리 관리 대책
- 대형 생활폐기물(가정, 사업장, 공사장등)처리 대책
-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
- 강력세제 및 화공약품 사용 억제 대책
- 생활환경 개선과제의 채택 및 주민홍보

4) 활동결과

일반폐기물은 인구증가, 산업화, 도시화, 소득증대로 인한 소비량 증가로 인하

II. 委員會運營

여 매년 엄청난 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반폐기물의 양적인 증가도 문제지만 그 질의 변화로 인해 폐기물 처리 후의 피해가 더욱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폐기물은 비닐 등 합성수지류, 수은전지, 유해·유독성 용기류, 석면, 형광등, 플라스틱류 등의 혼합물이 상승되고 있고 또한 냉장고, 텔레비전 등의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거칠고 큰 폐기물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혼합 폐기물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인간은 자연계에서 자원을 채취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폐기물을 배출시킨다. 이 폐기물은 본래 자연으로 환원되는 물질순환계가 성립된다. 그러나 기술혁명에 의해 자원이용이 활발해지고 그 결과 배출된 폐기물의 양과 질은 자연계가 갖추고 있는 폐기물의 환원능력을 훨씬 넘어서 폐기물의 유해성분이 대기권, 수질권, 토양권에 축적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폐기물에 의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폐기물 분리수거제도의 정착과 완벽한 위생매립시설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가) 오염자부담원칙(汚染者負擔原則)의 적극적 시행

일반폐기물처리에 있어 원인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시의적절한 정책의 실시이며, 종량제 시행에서 제외되어 정부의 감량화 시책에 소극적이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와 감량화가 '97.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보다 적극적인 유도로 수수료 종량제를 완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임.

앞의 그레이스 백화점 폐기물처리 현황에서 보듯이 종량제 실시후 기업 자체에서 꾸준한 노력으로 폐기물의 양이 절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보다 철저한 분리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됨.

다만,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처리에 강력한 절감동기(節減動機)를 제공하며 경제적 효율성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규격봉투의 가격인상을 재고하여야 할 것임.(타구 가격과 비교 검토)

이와 더불어 규격봉투의 사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자 단속조치가 요구된다 할 것임.

나)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확고한 추진

일반폐기물 즉, 쓰레기는 자립경제식의 농경문화에서는 자가처리되었으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집단처리의 필요성이 생겨 공공행정이 이를 담당하게 되었고, 점차 도시행정의 본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폐기물의 집단적 대량처리의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소각장 건설에 대해 향후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야 할 것임.

2005년부터 시이상 도시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만들어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소각처리하고 남은 잔재물만 매립이 허용되며 직접 매립할 수 없게 된다. 또 2001년 부터는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공단폐수 처리장 등에서 나오는 유기성 오니와 페타이어, 폐가구, 폐 가전제품 중 가연성 폐기물도 직접 매립이 금지된다고 한다.

때문에 정부에서 현재 4%의 소각률을 20%로 높이는 계획을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매립지를 만들 땅도 거의 소진된 상태라고 한다.

현재 주요 각국의 소각률은 독일 30%, 프랑스 41%, 스웨덴 53%, 일본 73%, 스위스 79% 등이다.

다만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님비(Nim by)현상을 줄이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홍보 프로그램 운영

일반폐기물 처리의 어려움과 매립지 현황 등을 제시하여 소각장 건립을 위한 주민 홍보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우려하고 있는 다이옥신에 대한 이해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6월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치를 현재의 0.5ng/m³(나노그램 : 1ng은 10억분의 1g)에서 0.1ng/m³으로 강화키로 하였으며, 국내의 「IRS아시아」에서는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완전히 태워 없앨 수 있는 물프라스마 시스템을 개발 실용화하고 있다는 점 등 기술 발전분야에 대한 대 주민홍보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이옥신 발생의 주 원인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 함유량이 38%에 이르는 습식 음식문화에서 초래되며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하여 소각하게 되는 캔, 프라스틱류 등의 혼합 소각문제 등에서

II. 委員會運營

비롯된다는 점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피상적인 넘비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음식물 쓰레기 발효(소멸)기의 보급 확대

서대문구의 '96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총 34,675톤(1일 약 95톤)으로 전체쓰레기의 34%를 차지하고 있음.

음식물 쓰레기는 쉽게 부패하여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극심한 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주민의 고통 호소가 많으며 수도권 매립지로부터도 다량의 침출수 발생으로 인하여 잦은 반입제재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새로이 제작하여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의 실시로 악취, 침출수 문제도 상당량 감소될 것이며, 소각시 다이옥신 문제도 현저히 감소될 것이라 봄.
- 각 가정, 사업장 등에서 지속적인 잔반 줄이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을 퇴비화, 사료화 할 수 있도록 음식물 발효(소멸)기의 보급을 공동주택(APT)우선으로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임.
앞에서 언급된 서강 APT 내의 시범 설치에서 지역주민의 반응이 좋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자체의 현격한 감소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됨.

다만 음식물 발효기에서 제거되지 못하는 염분문제의 해결에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사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도·농간 수거용역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 공급중계 시스템의 개발과 수거용역비의 일부 지원을 위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라)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

날로 증가되는 일반 폐기물 처리의 중요한 변화는 자원의 활용사이클을 크게 하자는 것이다. 즉, 자원의 재활용은 일반폐기물처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재활용 방안으로는,

- 폐기물의 혼합 배출로 인하여 8종(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폐의류, 페스티로폴, 폐건전자)의 재활용품을 다시 재 분리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도 충당할 수가 없는 상태이며 엄청난 낭비적 요소임. (우리구의 재활용 전담인력은 구 2명, 동 59명, 수거참여 미화원 182명임)
따라서 일반 가정에서부터 8종으로 분리하여 종류별로 수거일을 정하여 수거 당일에만 집 밖으로 배출하도록 홍보하여, 수거시 철저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우리구 재활용 센터의 활성화 추진
재활용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형냉장고, 가구류 등을 적재·수리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주민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 통행이 많은 곳에 재활용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됨.(강동구 등 타구사례 비교검토)
또한 재활용센터의 가전, 가구류 무료 수거사항 및 전시, 판매 내용이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됨.

환경오염의 대부분은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므로 자원절약과 폐기물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주민홍보 프로그램의 강화가 요구된다.

주민 홍보가 과거의 새마을 운동과 같이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이 요구됨.

마) 일반폐기물 처리의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

폐기물처리 문제는 현대 도시행정의 기본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청소행정에 경영기법의 도입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구의 환경미화원은 361명으로 쓰레기 대행업체와 비교할 때 엄청난 비효율적, 낭비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작업 인력도 대부분 고령으로 작업능률이 낮으므로 민영화에 따른 효과 분석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다만 일반 폐기물 처리 민영화는 우리구의 예산절감 등 재정자립도 향상을

II. 委員會運營

..... ▲

위하여 바람직한 방안이나 이는 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와 문제점 등을 신중히 검토 분석하고 현재의 환경미화원들의 자연감소와 이직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바) 청소행정의 전산화, 과학화 추진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먼저 쓰레기 관련 통계가 정확해야 그것을 기초로 각종 쓰레기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바, 정확한 쓰레기 관련 통계의 작성을 위해서는 「폐기물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또 민간대행업체, 재활용업자, 민간회수단체, 서대문구청 등을 연계하는 통합 통계산출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야 할 것임.

사) 세차장 등 폐수배출업소 관리(환경과)

1) 현황

서대문구 관내 폐수배출업소는 산업시설(공장)은 한곳도 없이 거의 모두 서비스 업종에 국한되어 있음.

업종을 살펴보면 세차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밖에 병원, 학교, 인쇄소 및 사진관으로 되어 있음.

이중 연세의료원 등 병원의 발생 폐수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하나, 시설관리가 양호하고 처리 용량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오염도 검사한 결과 보면 양호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같은 경우는 학교의 실험실 폐수도 마찬가지여서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의 실험실 폐수 처리실태도 양호함.

그리고 인쇄소나 사진관은 폐수를 거의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 따라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배출업소는 세차장이라고 할 수 있음.

2) 문제점

관내 폐수배출업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세차장으로 서비스업종에 속하여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경정비와 함께 영업하는 경우와 운수회사의 부대설비로 세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주유소 영업활성화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음.

대부분이 영세적이어서 보다 나은 수질오염절감 및 개선에 투자하기 어렵고 기존 방지사설의 운영관리비용의 절감 등을 목적으로 비정상(소홀

한 가동)적으로 운영할 소지가 많고 고용원의 잦은 이동으로 처리 방식의 숙달이 연계되지 않고 있음.

3) 대책

- 세차폐수는 주로 광류(유류),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의 오염이 문제가 되나 오염부하량은 적은 편으로 충분한 침전 및 유수분리만으로도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으므로 집수조 및 유수분리시설을 잘 설치한 후 하수도에 직접 배출하여 최종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비용을 직접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요망됨.
- 지도 단속 강화
- 정기·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폐수처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 없도록 관리

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1) 제안이유

도시시설물의 안전여부를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강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의 재해와 화재, 시설물의 붕괴, 폭발 등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 등 재해대책업무를 지원하거나 이를 효율적으로 검토 처리하기 위하여 '96.10.18 전성장의원의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구성함

2) 구성 및 활동기간

가) 구성 — 9인

위원장 : 정현철 의원, 간사 : 이석문 의원

위 원 : 김종철, 조재구, 강석준, 홍성덕, 김영일, 허준구, 정일수의원

나) 활동기간 : '96.10.22 ~ '97. 7.20 (9개월간)

※ 활동기간 1차 연장 : '97. 4.19 ~ '97. 7.20 (3개월간)

3) 활동방향

- 업무현황 청취 및 현장방문 확인
- 활동자료 요구 및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조치 요구
- 반별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
- 지적사항 집행부 통보 시정조치 요구

4) 활동결과

□ 시정요구 사항 총괄

(단위 : 건)

계	아파트시설	수방장비시설	건물시설	축대시설	도로시설
26	19	2	2	2	1

□ 기타 추진 현황

- 소관부서 업무현황 청취 -3회 10개부서 ('97. 5.23~6. 2사이)
- 홍보활동 - 지방언론사 등(지역신문 5, 서대문구소식지 1)

□ 세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

연번	대상	위치	지적사항	시정요구 내용
1	충정로동 금화(아) 2개동	충정로3가 산1-19 (22동)	- 아파트복도 LPG가스통 덮개 등 안전장치 없이 집단 설치 - 옥상입구 출입문 및 옥상 물탱크 출입문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야간에 청소 년 범죄 장소로 사용 우려	· 안전덮개 설치하여 가 스통 분산 등 조치 · 파손된 출입문을 보수, 잠금장치를 하여 관리 토록 조치
		충정로3가 산1-19 (23동)	- 폐LPG가스통(3개) 외부 (1층공터) 방치 - 계단난간 파손으로 보행 자 추락위험	· 가스통 제거조치 · 난간 보수 조치
2	천연동 금화(아) 16개동	천연동 120-144 (2동)	- 화장실등 문짝 파손으로 인사사고 우려 - LPG가스통 덮개등 안전 장치없이 옥외(출입구) 에 집단설치	· 문짝고정등 보수 조치 · 안전덮개 설치하여 가 스통 분산 등 조치
		천연동 120-144 (8동)	- 발코니에 향아리 적재로 위험	· 향아리 제거 조치

II. 委員會運營

연번	대상	위치	지적사항	시정요구 내용
		천연동 120-132 (14동)	- LPG가스통 덮개등 안전장치없이 집단설치 (20개)	· 안전덮개 설치하여 가스통 분산 등 조치
		천연동 120 (15동)	- LPG가스통 덮개등 안전장치 없이 집단설치(9개)	· 안전덮개 설치하여 가스통 분산 등 조치
		천연동 120-135 (16동)	- LPG가스통 덮개등 안전장치없이 집단설치(13개)	· 안전덮개 설치하여 가스통 분산 등 조치
3	홍제2동 홍제지구 (아)5개동	홍제2동 322 (2동)	- 옥상바닥 균열로 누수 및 계단통로 담장 균열 - 1층 도로옆 난간파손	· 보수 조치 · 보수 조치
		홍제2동 322 (5동)	- LPG가스통 집단설치하여 낡은 가스선을 길게 설치되어 있어 위험 - 축대부분 누수로 붕괴 위험	· 가스통분산 및 가스선 교체등 조치 · 보수 조치
		홍제2동 322 (1동-5동)	- 연탄쓰레기통 출입문 파손	· 보수 조치
4	홍제2동 소방도로 개설구간	홍제2동 156-26~55호 소방도로 구간	- 공사중으로 집중 호우시 토사 유출로 축대붕괴 잔존	· 비닐포장등 조치
5	현저동 사설건물	현저동 94-1	- 독립문 공원지역 편입건물로 보수가 필요한 위험건물임에도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공백 기간중 위험발생시 대책 필요 - 건물 보강시설 및 상단와이어 3선중 2선 끊어짐	· 재해위험시설물로 지정되었으므로 1차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건물에 대한 구조적 철근보강 및 와이어 설치 등 조치
6	북아현2동 축대	북아현2동 251-33	- 북아현2동 251-32호 건물 밑 축대 일부 균열되어 보수 시급 - 북아현2동 251-33,34호 건물 하수구가 위험축대로 흐르게 설치되어 붕괴 위험이 상시 잔존	· 조속보수 조치 · 하수구 이동설치 및 재시공 조치

第2章 議會運營

연번	대상	위치	지적사항	시정요구 내용
7	수방장비 보관소 3개소	연회2동 사무소	- 연회2동 사무소 수방장비 보관소에는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끝이 뾰족한 말뚝을 비치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또한 말뚝을 설치할 수 있는 장비(망치등)가 없음	· 망치 비치 및 말뚝 정비 조치
		홍제3동소재 하수과 수방 장비 창고	- 하수과창고 수방장비 보관소에는 말뚝의 길이가 긴 것만 비치하고 있을 뿐 비상시 적시적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보관하지 않고 있음	· 말뚝을 대·중·소 등 유형별로 보관조치
8	공통사항	아파트 49개동 (충정로 2 천연동 16 연회3동 B지구 9 연회2동 A지구 10 홍제2동 5 연회1동 5 냉천동 2)	- 일부 아파트는 재건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대부분 건물이 노후, 균열됨	· 장단기 대책추진으로 조속 보수 및 사업마무리 조치

라.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

1) 제안이유

우리구 재정자립도를 높일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수증대 자구 노력 및 경영수익사업과 예산절감등 자립의 요소가 될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여 이를 집행부에 건의,시행함으로써 재정확충은 물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7. 4. 3 이성배의원의 9인으로 부터 발의됨.

2) 구성 및 활동기간

가) 구성 — 9인

위원장 : 이성배 의원, 간사 : 이석문 의원

위 원 : 정혜연, 김정현, 김동덕, 김종섭, 박덕균, 최광진, 정일수의원

나) 활동기간 : '97. 4.19 ~ '98. 6.30 (14개월간)

3) 추진방향

- 자주재원 확충에 따른 세수증대 자구노력 방안 강구
-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추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방안 강구
- 행정내부의 비효율 및 낭비 요인 발굴로 기구 및 인력관리 방안 강구
-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확보로 예산절감운용 방향 강구
-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 통계조사 철저

4) 활동결과

- '97. 4.25 제51회 임시회 제1차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
- 재정자립발전 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채택
- '97. 5.27 제51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
- 재정자립 업무현황 보고 청취 : 기획예산담당관
- '97. 6. 4 제51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
- 재정자립 업무현황 보고 청취 : 총무과, 세무1,2과



마. 의회윤리특별위원회

1) 제안이유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주체이며 국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97. 6.23 조재구의원의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구성함.

2) 구성 및 활동기간

가) 구성 — 7인

위원장 : 조재구 의원, 간사 : 이기봉 의원

위 원 : 김동덕, 김종섭, 김종철, 정혜연, 최광진 의원

나) 활동기간 : '97. 6.30 ~ '97.12.29 (6개월간)

3) 추진방향

-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실천 생활화
- 사전예방에 따른 홍보활동
-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사실확인으로 올바른 방향 제시

4) 활동결과

- '97. 7.30 제53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채택
- '97. 9.29 제54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 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심사의견

※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당초 '96.10.21 구성되어 의원윤리강령 및 의원윤리규범을 제정하는등 '97. 4.21 까지 6개월간 활동하고 종료되어 재구성하였음.



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조례와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과 한시적인 행정목적 달성에 의하여 현행 규정대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조례를 효율적으로 심사·정비하여 시민생활의 편의제공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6.10.18 이기봉의원외 11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구성함.

2) 구성 및 활동기간

가) 구성 — 9인

위원장 : 전성장 의원, 간사 : 이기봉 의원

위 원 : 정일출, 박덕균, 김종섭, 허준구, 김종철, 조재구, 김영일의원

나) 활동기간 : '97.10.22 ~ '97.11.24 (13개월간)

※ 활동기간 1차 연장 : '97. 4.21 ~ '97. 9.21 (5개월간)

※ 활동기간 2차 연장 : '97. 9.22 ~ '97.11.24 (2개월간)

3) 추진방향

- 구 조례 전반에 관한 현황 청취 — 기획예산담당관
- 각 부서별 조례내용 검토등 현황 청취 — 각 부서 담당관,과장
- 정비대상안에 대한 법령저촉 여부등 검토 — 전문위원
- 토론을 통한 조례정비대상 위원회 안으로 확정
- 정비대상안 집행부 이송 의견 청취 — 구의회 의견 제출
- 위원회안으로 최종 확정 및 본회의 상정
- 집행부 통보 조치후 의회로 결과 보고

4) 활동결과

○ 개정 대상 현황 : 총 94건 중 21건

(단위 : 건)

계	개정대상	폐지대상	제 외	비 고
21(73)	15	6	(73)	()제외

○ 실·국별 개정대상 현황

(단위 : 건)

계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구의회	비고
21	3	4	3	9	2	.	

○ 담당관, 과별 개정 대상 현황

(단위 : 건)

계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21	2	1	3	1	3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하수과
2	2	2	1	2	1	1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중 정비현황

(단위 : 건)

계	개정조례	폐지조례	비 고
16	12	4	

○ 추후(다음 임시회) 정비현황

(단위 : 건)

계	개정조례	폐지조례	비 고
5	3	2	

II. 委員會運管

○ 부서별 세부 정비 내용

연번	조 례 명	개 정 내 용	비 고
1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	- 특허법 개정에 따라 제1조 내용중 "특허법 제 17조 및 제18조를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로 개정하려는 것임.	기획예산 담당관 (기개정)
2	행정권한 위임 조례	- 행정권한위임조례의 명칭을 통일시키고 위임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위임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사무위임 조례를 신설 대체코자 함.	기획예산 담당관 (기폐지)
3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조례	- 건축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감사담당관 (기폐지)
4	여비조례	- 제5조 내용중 현장지도 여비가 2,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현장지도 여비를 삭제하고 국내 및 국외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며 -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전문개정하였음.	총무과 (기개정)
5	지명위원회 조례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1조 내용중 동법시행령 "제23조"를 "제35조"로 개정하려는 것임.	총무과 (미개정)
6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민회관이 없는 상태에서 88. 5. 1 체정공포되어 존치되어 왔으나 문화체육회관이 건립되어 '93. 10.11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에 관한 운영조례가 동일하게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폐지하려는 것임. ※ '96. 3. 7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96. 3. 16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	총무과 (미개정)
7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 당초의 설립취지와 기대사업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고 사업비의 경영상 모순점이 도출되어 '97년도 운영예산이 전액 삭감 폐지된 사업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이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사회진흥과 (미개정)

第2章 議會運營

연번	조례명	개정내용	비고
8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2조 내용중 예산 회계법 “제96조”를 “제123”조로 개정하려는 것임.	재무과 (기개정)
9	구유재산 관리 조례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자치구 실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제47조 내용중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서 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로 개정하고 · 제51조 내용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개정 하며 · 제56조 제1항 내용중 “시장이 따라”를 “구청장 이 따로”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임.	재무과 (기개정)
10	물품관리 조례	- 조례 내용중 관련 법조문이 착오로 인하여 잘 못 기재되어 있어 · 제16조 제1항 내용중 “제16조”를 “제15조”로 · 제17조 제1항 내용중 “제17조”를 “제16조”로 · 제22조 제1항 내용중 “제22조”를 “제21조”로 · 제32조 내용중 “제32조”를 “제31조”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임.	재무과 (기개정)
11	의료보호기금 특별회 계설치 및 운용 조례	- 서대문구 직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4조 제1항 내용중 “보험연금계장”을 “복지계장” 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사회복지과 (기개정)
12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제 5조 제3항 제1호 내용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사회복지과 (기개정)
13	아동위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 서대문구 직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8조 제2항중 “청소년계장”을 “부녀청소년계장” 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가정복지과 (기개정)

II. 委員會運營

연번	조 례 명	개 정 내 용	비 고
14	서대문구청소년지도 위원회 구성 및 청소년 지도 위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 건전한 청소년지도육성을 위하여 위원의 결 격사유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 5조(결격사유) 내용중 제1,2,3호 이외에 “4.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 기 곤란한 자”를 추가 삽입코자 함.	가정복지과 (미개정)
15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례	-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과태료부과, 징수 절차)의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과 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존속이 필요치 않아 폐지하려는 것임.	위 생 과 (기폐지)
16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 용중 <별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업 종별 수수료 목욕장업의 “터키탕업”을 “증 기탕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위 생 과 (기개정)
17	에너지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 에너지 관련 상위법령의 전면 개정으로 조례 의 에너지 관련 과태료 징수업무의 모든 내 용이 개정된 법령에 동일하게 신설되어 사실 상 필요치 않아 폐지하려는 것임.	산 업 과 (기폐지)
18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 구 조례와 상위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와의 부적합한 조문이 있으므로 · 제2조 내용중 “별표1과 같다”를 “별표1을 적용한다”로 개정하고 “단 별표1중 1호, 6호, 14호, 22호, 26호의 해당행위는 제외한다”를 삭제하며 · 제4조(가산금 및 독촉)내용중 제1항을 삭제 하고 제2항 전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4조(독촉)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과 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납부기간 경과후 15일 이내(은행납입 경우 2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 여야 한다”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임.	교통지도과 (정기회)

第2章 議會運營



연번	조 례 명	개 정 내 용	비 고
19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조례 내용중 주차요금과 징수 시간 단위가 변경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는 주차시책에 부합코자 · 주차장의 분류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을 “공영노상주차장”으로, “노외주차장”을 “공영 및 민영 노외주차장”으로 개정하고 · 1급지 및 2급지의 주차요금을 50% 인상조치하며 · 주차요금 징수시간 단위를 최초 30분이후 “15분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변경하고 · 경자동차(800cc이하)에 대하여 2,3,4급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할인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교통지도과 (미개정)
20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조직 개편으로 건설부가 건설교통부로 변경됨에 따라 · 제6조 제1항 제1,2호 및 제8조 제1항 내용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임. 	건설관리과 (기개정)
21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민방위협의회는 통합 방위지원계획에 의한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방위협의회로 통합관리하도록 시행됨에 따라 · 제3조 제2호 내용중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방위협의회”로 개정하는 것임. 	하 수 과 (정기회)



□ 건의사항

○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사무처리는 물론 내부조직의 운영 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위법 개정 및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과 행정낭비 초래 등을 방지하여 법치 행정구현에 이바지 하여야 함에도
 - 상위법령이 개정된 지 장기간 경과되었음에도 관련 조문 및 명칭 등을 정비하지 않고 있으며,
 - 사업이 중단되거나 동일 내용이어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임에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법조문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가 하면 단순한 오자도 있는 등 전반적인 조례 관리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됨.

사.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

1) 제안이유

의사당건립추진 특별위원회는 '94.10.19 기 구성되어 활동중인 바 현 의사당 건물에 낡고 보건소와 공동으로 사용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의회기능에 적합한 독립의사당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 등 추진방향 검토를 하여 집행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함.

2) 구성 및 활동기간

가) 구성 — 9인

위원장 : 강석준 의원, 간사 : 김종섭 의원
위 원 : 김동덕, 정혜연, 이석분, 이성배, 최광진, 홍성덕, 오환인의원

나) 활동기간 : 위원회 구성일로 부터 의사당건립 완성시 까지

3) 추진방향

- 의사당건립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
- 의회기능확보를 위한 의사당 신축 추진 등
- 기타 수시 위원회의 개최 세부추진계획수립추진 등

4) 주요 활동사항

- '96. 8.23 의회 의사당매입에 관한건
- 연희동 165 - 3외 7필지 현재빌딩
- '96.12.24 의회 의사당부지 확보의건
- 홍은동 산 126 - 151외 1필지
- '97. 2.17 구의회 신청사 대상부지 확보의건
- 홍은동 산 126 - 151외 1필지
- '97. 3.14 구의회 의사당신축대상부지매입에 대한 의견 협의의 건
- 홍은동 산 126 - 151외 1필지
- '97.10.28 의회청사 부지매입 추진사항 설명 청취의 건
- 홍은동 산 126 - 151외 1필지
- '97.12.15 보건소청사를 구의회청사로 관리전환의 건
- 보건소 청사를 구의회 청사로 관리전환 의결 (원안가결)

II. 委員會運營



아. 징계자격특별위원회

1) 제안이유

의원이 품위유지 및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의회의 자율권차원에서 징계키 위하여 '97. 9.29 김동덕의원의 6인으로 부터 발의 되어 구성함.

2) 구성 및 활동기간

가) 구성 — 5인

위원장 : 김종철 의원, 간사 : 이기봉 의원

위원 : 이진수, 강석준, 김동덕 의원

나) 활동기간 : '97. 9.30 ~ '97.12.22 (약 3개월간)

3) 주요 활동사항

- '97.10. 1 제54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 위원장, 간사 선임의건 (위원장 : 김종철의원, 간사 : 이기봉의원)
- '97.10.30 제54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 의원징계요구의건
- '97.11. 4 제55회 임시회 제3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 의원징계요구의건 : 관련의원으로 부터 해명 청취
- '97.12.16 제56회 정기회 제4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 의원징계요구의건 : 산중검토키 위하여 회의일정 연기
- '97.12.22 제56회 정기회 제5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 의원징계요구의건 : 관련의원이 본회의에서 공개사과카로 의결

자. 행정사무조사(주민용신문구독)특별위원회

1) 제안이유

국가 주요정책과 시정 및 구정홍보를 위하여 통.반장 등 주민에게 구 예산으로 배부되고 있는 일간지 및 지역신문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하여 구 행정사무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97. 9.12 박덕균 의원의 9인으로 부터 발의 되어 구성함.

2) 구성 및 활동기간

가) 구성 — 7인

위원장 : 권재일 의원, 간사 : 이석문 의원

위원 : 정혜연, 김정현, 이기봉, 정일출, 박덕균 의원

나) 활동기간 : '97.11.10 ~ '97.11.14 (5일간)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 업무범위 : '96. 1. 1 ~ '97. 8.31 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조사대상 업무 : 서대문구 주민용 신문구독에 대한 배부 및 예산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 실태

※ 신문사 현황 — 6개사

- 지역신문 : 5개사 (서부, 서은자치, 서대문, 서대문사람들, 시정신문)
- 일간지 : 1개사 (서울신문)

4) 주요 조사사항

-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신문구독 현황
 - 신문배달 현황
 - 신문구독 확인권 관리실태등

II. 委員會運營



5) 조사결과

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사반	조사동	조사 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제1반	충정로동 천 연 동 현 저 동	신문구독실태 등	- 서울신문구독 확인권에 일련번호란 및 배달되지 않은 회수란을 각각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 또한 구독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 해당통장이 일괄 확인한 것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정확한 배달여부에 대한 확인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음.
	홍제제 3동	신문구독실태 등	- '97년도 서울신문구독확인권 배달되지 않은 회수 및 일련번호 기재 누락
	연희제 2동	신문구독실태 등	- '96년도 서울신문구독확인권 배달되지 않은 회수 누락 및 연도별, 월별 표시를 하지 않고 있음
	홍은제3동	신문구독실태 등	- '96년도, '97년도 서울신문구독 확인권 일련번호 및 배달되지 않은 회수 기재 누락
제2반	홍제제 1동 연희제 1동 연희제 3동 북아현 1동 북아현 2동 북아현 3동 남가좌 1동 남가좌 2동	신문구독실태 등	- 서울신문의 경우 구독자에게 배부는 잘 되고 있는 편이나 구독확인권에 의한 예산 집행시 본인 도장으로 확인하지 않고 싸인 및 대리도장으로 날인하고 있어 정확한 배달여부 확인이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음. - 신문구독자가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였음에도 변경하지 않아 타인에게 배달되는 경향이 있어 구독자에 대한 현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 - 서울신문 구독의 경우 구독하지 못하는 반장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지역신문으로 대체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요구됨 - 신문구독자가 다수의 단체 회원일 경우 2중 3중으로 혜택이 가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구독자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음.

第2章 議會 運營

조사반	조사동	조사 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제2반	홍제제 1동 연희제 1동 연희제 3동 북아현 1동 북아현 2동 북아현 3동 남가좌 1동 남가좌 2동	신문구독실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 동에서는 통장이 변경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일간신문이 보급되고 있음. - 지역신문에 대한 배부실태를 확인한 바 채 50%도 보급되지 않고 있어 구독자 현황 관리 등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므로 특별한 개선책이 요구됨.
제3반	대 신 동	신문구독실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간신문인 일간지의 경우 오후에 배달되는 사례가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우편함에 투입하여 분실하는 사례가 있음. - 신문구독 배부실태를 확인한 결과 · 일간지의 경우 90%이상이 배부되어 양호한 편이나 · 지역신문의 경우 약 67%가 배부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됨.
	창 천 동	신문구독실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구독 배부실태를 확인한 결과 · 일간지의 경우 100%가 배부되어 아주 양호한 편이나 · 지역신문의 경우 채 50%도 배부되지 않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대 신 동 창 천 동	신문구독실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신문구독 대상자 선정시 각 동과 협의하지 않고 구청에서 일괄 선정 관리함에 따라 구독자 현황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주소이전 등 신문구독자 관리에 소홀하고, 신문배부 및 확인 등의 관리체계가 미흡함.
	홍은제 2동	신문구독실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신문구독자의 경우 명부와 구독자 확인권과 불일치로 관리체계가 미흡함. - 신문구독 배부실태를 확인한 결과 · 일간지의 경우 약 74%가 배부되었으며, 지역신문의 경우 약 90%가 배부되었음.
	북가좌 2동	신문구독실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신문구독자의 경우 명부와 구독자 확인권과 불일치로 관리체계가 미흡함 - 신문구독 배부실태를 확인한 결과 · 일간지의 경우 약 87%가 배부되었으며, 지역신문의 경우 약 80%가 배부되었음.

차. 행정사무조사(주차장위탁관리실태)특별위원회

1) 제안이유

경제산업의 발전에 따른 국민소득 향상으로 자동차보유 1,000만대 시대가 도래 되어 주차장 수요가 그 어느때 보다도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서대문구의 주차장 설치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현실적인 시대요구에 맞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다 나은 주민생활의 도모와 구 재정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97. 9.10 김동덕의원외 13인으로 부터 발의 되어 구성함.

2) 구성 및 활동기간

가) 구성 — 7인

위원장 : 김동덕 의원, 간사 : 이성배 의원
위 원 : 최광진, 김종철, 김영일, 이진수, 허준구 의원

나) 활동기간 : '97.11.10 ~ '97.11.14 (5일간)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 업무범위 : '96. 1. 1 ~ '97. 8.31까지 처리한 공영 노상.노외 주차장의 위탁 관리 관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 조사대상 부서 :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등 관련부서

4) 주요 조사사항

- 공영노상. 노외주차장의 입지선정과정 및 민간인 위탁절차
- 공영노상. 노외주차장의 관리규정 준수사항
-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의 운영 및 관리 실태
-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및 관리실태

5) 조사결과

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부 서 명	조사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의 건설	<p>- 연희 1동 노외주차장 : 40구획 (연희 1동 105-8외 1)</p> <p>상기 노외주차장은 전액 구비로 18억 7천만원(토지매입비 1,637백만원, 주차장조성비 233백만원)을 투자하여 자주식 평면주차 40구획을 건설한 것으로 주차장 한 구획을 조성하는데 약 4천 7백만원이 소요되었음.</p> <p>하지만 주차장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2번씩이나 유찰되어 '97. 5. 30 완공된 이후 계획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임.</p> <p>연희 1동 지역은 고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개인차고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으며(현재 세대당 0.74대) 주차장 인근에 업무용 시설이 전혀 없는 주택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주간에는 출근차량 등으로 주차장 사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임.</p> <p>'97. 11. 11 상기지역을 본 위원회가 방문하였을 때에도 무상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주차된 차량은 1/2도 되지 않고 있었음.</p> <p>상기 노외 주차장 건설은 자치시대라는 시대의 흐름을 망각한 무사안일하고 선례답습적으로 시행한 대표적인 행정이라 할 것임.</p> <p>향후 도시계획 복합지정을 통한 다양한 활용 또는 타용도로의 활용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p> <p>또한 주차장 내에 미조정 된 6.5m×27m의 나대지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구획수를 늘려야 할 것임.</p> <p>현재의 주차구획선등도 재조정하여야 할 것임.</p>
건설관리과 및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관리실태 조사	<p>- 서대문경찰서 뒤 : 8구획 (미근동 31- 14~193)</p>

II. 委員會運營

부 서 명	조사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설관리과 및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관리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공영주차장 옆 사조신용금고 빌딩 앞의 사유지내 노상주차장 기부체납 도로인지 또는 건축선 후퇴부분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 서대문경찰서 담장옆 노상 주차장(7구획)은 분명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경찰서 측에서 오래전부터 무단으로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과의 형평에 맞게 마땅히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시설물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하여야 할 것임. 또한 이 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연간 약 28백만원의 세외 수입 증대가 예상됨.
교통지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근동 철길변 : 33구획 (미근동 117~4일대) · 공영 노상주차장은 차량의 주차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우유대리점에서 2구획 상당부분에 폐냉장고, 각종 우유박스, 기타시설물들을 어지럽게 쌓아놓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당초 위탁관리 계약위반으로 사료되며,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됨.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관리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동초등학교 정문쪽의 주차구획선은 등하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삭제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기존의 주차구획선을 노란색으로 덧칠하고 있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으며, 충정로 노인정 분회앞의 2구획은 주차 구획선으로 착각할 수 있는 상태로 조사당시에도 주민들이 황색 구획 주차선안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음.
교통지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희 사리가 쇼핑센터 앞 : 44구획 (연희 1동 131~1일때) 쇼핑센터 앞의 주차장은 일렬 평행주차를 하도록 구획되어 있으나(7구획) 공영주차장 관리인들이 무단으로 직각 주차를 하여 10대의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상태임. 이로 인하여 항상 혼잡한 쇼핑센터 앞의 도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야 할 것이며, 수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第2章 議會 運營

부 서 명	조사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교통지도과		<p>- 홍제제1동 현대아파트 앞 : 12구획 (홍제1동 331 일대)</p> <p>당초 홍제동 현대아파트 앞 12구획의 노상주차장과 견인차량 보관소 앞 25구획의 노상주차장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위탁관리 하였으나, 북부 고속화도로 공사로 인하여 유진상가 자체주차장의 사용 불편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 견인차량 보관소 앞의 25구획을 무료 개방하게 되었다고 함.</p> <p>하지만 북부고속화도로 상판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무료 개방한 25구획의 주차장을 다시 위탁관리토록 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꾀하여야 할 것임.</p>
교통지도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태조사	<p>- 우리구에서는 '96. 10.1부터 2개동 3개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 홍제천변에는 총 121구획을 지정하였으나 신청이 92구획, 미신청이 29구획으로 미신청구획의 무단 이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당일('97. 11.12) 미신청 29구획 중 21구획이 무단 주차되어 있는 상태임. 또한 단속을 위해 담당 1명, 고용직 1명, 공익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나 인력낭비만 초래하고 있는 상태임.</p> <p>이러한 관리 상태라면 이용금액을 납부한 지역주민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되며, 미신청 구획 주차전쟁 속에서도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효율적 관리가 요구됨.</p> <p>-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주차증은 해당동에서 사전날인을 받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청 주차증 불출 대장 및 동사무소 수불대장이 불명확하게 관리되고 있음. 상기사항은 향후 시정관리 되어야 할 것임.</p>
교통행정과	각 동별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실태 조사	<p>- 날이 갈수록 폭증하는 주차수요 해결을 위하여 각 동별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7,512구획 총연장 54,828m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p>

II. 委員會運營



부 서 명	조사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교통행정과	각 동별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정비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지만 홍제3동의 경우 (217구획, 총 1,584m) 현황보고자료의 구획수와 실제 구획면수를 현장 조사한 바 전혀 맞지 않으며, 주민들이 주차단속을 피하고자 임의로 주차구획선을 구획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발견되었음. 이러한 점들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 - 홍은 2동의 경우(335구획, 2,445m) 포방터 시장부터 극동아파트 입구까지의 181구획은 전반 이상이 상점 문앞에 구획선을 그려 상점주민들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며 일반 주민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 또한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적치물을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임. 이와 같이 현실적인 이용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차구획선 설치 및 관리는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일 뿐이라 사료됨. 따라서 주차구획선을 그리기 위한 입지선정이 현실에 맞게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임의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요망됨.
교통행정과	주차구획선 도색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 8. 19 시행한 노상, 노외 주차장 도색공사시방서 상에는 기존에 도색한 선의 노면상태 등으로 인해서 굴곡된 도색선은 빠르게 코팅하고 재도색을 실시할 것과 KS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방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구획선이 희미한 상태임.
총무과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무분장 재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시설의 설치 및 구획선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주차장 관련 예산편성 및 운영,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주관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의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등을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다면 보다 능률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됨. 따라서 공영주차장이 한 부서에서 총괄 관리될 수 있도록 직제개편 또는 사무분장의 개편을 건의함.

第2章 議會運營



부서명	조사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재무과	주차장특별회계 자금관리	<p>-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은 현재 상업은행에 2년 마만의 정기예금, 연리 3%~9%의 이율 1천만원 단위로 예금되어 있는 상태임.</p> <p>하지만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의 은행 평균잔액이 60억 이상 이므로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운용 계획을 세워 ①예금기간의 다양화(1년~3년) ②자금관리의 다양화를 통하여 이윤율을 높이는 방안이 다각도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건의함.</p>
교통지도과	입찰공고 방법의 개선	<p>- 주차장 관련 입찰공고시 현재 구청 게시판에만 게시하고 있어 홍보효과가 미흡하므로 입찰금액에 따라 일간지,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에 게재토록 하여 보다 많은 입찰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요망함.</p>
각과		<p>- 우리구청에서는 현재 7개의 동청사가 건축중이거나 계획되고 있음.</p> <p>날로 증대되고 있는 주차난을 고려하여 공공청사, 공용건물 등을 건립시 지하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여 건축될 수 있도록 건의함.</p>

II. 委員會運營



카. 행정사무조사(홍제3,4구역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시유지매각)특별위원회

1) 제안이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홍제 3,4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바,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유지 매각처분을 하면서 공시지가 산정을 부적정하게 적용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전반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하여 민원해소는 물론 행정업무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98. 1.23 이진수의원의 11인으로 부터 발의 되어 구성함.

2) 구성 및 활동기간

가) 구성 — 9인

위원장 : 최광진 의원, 간사 : 이기봉 의원

위 원 : 김동덕, 전성장, 이진수, 이성배, 박덕균, 조재구, 정일출 의원

나) 활동기간 : 채택하지 않음

3) 주요 추진사항

- '98. 1.24 제5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회의
 -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최광진의원, 간사 이기봉의원)
- '98. 3. 9 제5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회의
 - 행정사무조사계획채택의 건
 - 의결내용 : 행정사무조사계획 채택의건은 현재 소송 계류중이므로 이건 소송 종료시까지 유보하기로 의결



其他 分野別 活動 (1997.1.1~1998.6.30)

- I. 區政 質問
- II. 行政事務 監查
- III. 民願處理
- IV. 海外 訪問 視察 및 세미나

第 3 章 其他 分野別 活動

I. 區政質問

1. 意 義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처리상황과 장래계획을 물어 집행기관의 소신을 표명케 함으로 자치단체의 바른 구정실현을 유도하고, 정치적 자세와 책임을 명확히 부담시켜 정책을 변경 또는 대체하게 하거나 시정시키며,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주요 의정활동 중의 하나이다.

2. 現 況

구 분 회 기	질 문 의원수	질문 건수	질 문 내 용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 민 복지국	도 시 관리국	건 설 교통국	보건소
계	62	155	18	18	9	36	45	26	3
제51회 임시회 (97.4.19~4.28)	16	45	3	6	1	11	13	10	1
제54회 임시회 (97.9.20~9.30)	14	36	2	6	2	9	9	8	
제56회 정기회 (97.11.25~12.22)	15	35	7	4	5	7	8	4	
제58회 임시회 (98. 3.11~3.23)	17	39	6	2	1	9	15	4	2

(구정질문 총 현황은 212건으로, 이중 155건만 수록)



3. 區政質問 및 答辯

■ 제51회 임시회 제4차 ~ 제6차 본회의 ('97. 4.23 ~ 4.25)

質問議員	質問 內容	答 辯 內 容
홍성덕의원	<p>■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관리국장 직책은 엔지니어 등의 전문직이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나, 우리구는 행정직 국장이 수행하고 있어 각종 민원처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p>	<p>➔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술직 자리에는 기술직이 보직됨이 업무수행에도 도움이 되고 일을 확실히 추진할 수 있다고 공감하지만, 현재 서울시 기술직공무원의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술직을 그때 그때 자리에 채우기가 쉽지 않으며, 또한 서울시 및 타구와 협조하여 알맞는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실정으로, 앞으로 서울시 및 타구와 협의해서 전문 기술직을 적극 충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음.</p>
	<p>■ 문화촌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조합과 주민간의 분쟁을 구청에서 사전에 중재하여 막았어야 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주택가 50m이내의 공사현장에서는 폭약발파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허가가 되어 폭약발파를 하고 있는가?</p>	<p>➔ 분쟁중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폭약발파에 따른 민원으로 집을 새로 짓는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토공관계를 지원하고, 건물의 균열에 관한 것은 보수 또는 보상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민원도 상당히 많고 민원인과 의견차이도 있어,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폭약발파 사항은 경찰서 소관사항이지만 현장출장 때 마다 지도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음.</p>
	<p>■ 살수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운용할 미화원은 언제 배치할 것인지?</p>	<p>➔ 빠른 시일내에 배치하도록 하겠음.</p>
전성장의의원	<p>■ 대입시 기간중 실시한 「무료숙박제공」에 대한 성과와 실적저조에 대한 대책은?</p>	<p>➔ 무료숙박제공을 신청한 우리구민 582가구의 그 따뜻한 마음씨 자체가 성과라고 생각하며, 6일 이상씩 숙박을 원하는 학생들이</p>

I. 區政質問

제51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있었으나, 온 가족이 남과 1주일 정도를 같이 지낸다는 것이 부담이 된 신청가정에서 장기숙박 희망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하였고, 대학교기숙사에서 2,000원 내지 3,000원으로 숙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음. 앞으로 홍보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학교와 교육위원회의 협의하에 적극 홍보하여 구민의 정성이 확산되어 큰 성과를 이룰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저소득층을 위한 유아시설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민간보육시설 위주로 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구립보육시설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자녀보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유아시설의 증감현황은 '95년도에는 18개소, '96년도에는 28개소, '97년도에는 10개소가 증가하였음.
	■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후 타 업체에 하도급을 줌으로 공공연하게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 공사하도급은 건설업법 제22조의 2에 의거 계약,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능별 부분하청이 이루어 지고 있어 무책임한 부실공사가 발생한다고 사료되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별 작업 반장과 하청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이제도가 정착되면 공사가 실명화됨으로, 기능공의 책임시공에 따라 부실공사도 최소화될 것임.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감독 공무원의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음.
이석문의원	■ 우리구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 지방자치제에 맞는 새로운 세제의 확립이 필요할 때라 생각하며, 현재 우리구세는 162억원이나 구청과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1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예산규모가 1,117억원으로 확보되어 규모 상으로 25개구 중 10위 내이고, 유료주차장, 지하상가 또는 광고를 통한 수입과 경영투자사업 기금 마련, 그리고 독립문공원의 성역화에 따른 관광 세외수입 등을 통한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p>■ 안산테마공원 조성 및 안산 순환도로 개설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p>	<p>➔ 현재로선 금년내에 완공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답변을드리기가 어려우나, 2002년까지 3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1단계로 연희B지구나 시민아파트에서 홍제동 공무원아파트간의 1,200m 구간에 21억원을 투입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98년까지 공사비 30억원을 투자하여 계속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금화지구가 주거환경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면 진입로를 이곳과 연계하여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음.</p>
김동덕의원	<p>■ 우리구 재정확충방안 일환으로 독립문 소공원에 고층 빌딩을 지어 지역경제 발전과 재정수입증대를 도모하고,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지 ?</p>	<p>➔ 독립문 옆 소공원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고층빌딩 등을 지어 재정수입증대와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주차문제도 해결하자는 좋은 의견이나, 도시계획상의 도로(광장)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순리가 아니며,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니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함.</p>
	<p>■ 약국의 환각제 판매장부 비치여부 및 청소년의 환각제 흡입의 근절대책은 ?</p>	<p>➔ 다량복용 시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예 : 페노바르비탈, 라제팜, 바리움 등)과 환외마약(예 : 코데논,</p>

I. 區政質問

제51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코데나시럽 등)이 있으며, 취급약국은 판매장부를 비치하고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날인을 받도록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19조, 마약법 제46조 2의 규정에 의거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판매허용량도 향정신성의약품은 1회에 1일분 내지 2일분을 초과할 수 없고, 한외마약은 1일 용량의 2일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 마약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4세 미만이나 정신병자 또는 중독자에게는 판매를 금지토록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는 취급 약국에 대하여 약사 지도, 감시 시 중점사항으로 단속 및 계도하고 있음.</p>
기창표의원	<p>■ 서대문로타리~홍제동간의 1번국도 주변 개발계획은 ?</p>	<p>➔ 서울시 중심대로변은 충정로 및 마포로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도심재개발사업을 통한 개발방법이 있으나, 의주로변은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상 도심재개발구역지정에서 제외되었음.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의주로변을 개발하기 위하여 홍제역 주변인 홍제지구 중심지역(면적 : 156,930㎡), 영천시장 주변인 천연 생활권 중심지역(면적 : 44,800㎡)에 대한 상세계획구역을 결정코자, '96.10.28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한 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97.제3차 : 4.9)에서, 천연생활권 상세계획구역은 천연동 89번지 일대 면적 13,100㎡를 추가 확대구역으로 지정토록 수정가결되어 천연상세구역 추가 확대는 지역의 주민공람('97.4.19 ~ 5. 3)과 의견을 수렴</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1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 서대문구 자치공무원 감축 계획은 ?</p>	<p>➔ 전시적인 감축보다는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더 이상의 인원 보충은 하지 않는 차원에서 자연감축을 추진하되, 장비의 현대화로 인원이 남는 경우에는 구민에게 불편 없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원에게도 충격을 주지 않는 기준에서 감축을 추진해 나가겠음. 서대문구청의 공무원정원은 1,451명이며, 현원은 1,466명으로 정원보다 15명이 초과되었으나, 그 사유는 '91.11.1일자 공과금제도 폐지로 종전 한전직원과 방송사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우리구에 17명이 잔류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으나, 곧 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됨. 우리구에서도 국가경쟁력 10% 강화를 위한 정부시책에 의거 “중기기 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2001년까지는 년차적으로 조직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임. 특히 기능직 및 고용직 등 자연감소 시에는 가급적 충원을 억제하는 한편, 장비의 현대화도 병행할 것임.</p>	

I. 區政質問



제51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 모래내, 영천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p>	<p>➔ 재래시장재개발에 있어서 區 행정의 역할은 해당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는 등의 개발여건을 조성하여 주며 서울시와 협의하는 등이고, 그간 의원님들과 구청장이 함께 노력하여 금년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겠으며, 주체는 지역주민인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세상인들이 공공용지를 부당하게 사용함에 따라 부조리가 있다는 지적사항은 확인하여 있다면 척결하겠습니다.</p> <p>㉔ 영천시장은 도소매진흥법 제5조(개설허가의 대상)에 의한 허가대상이 아닌 유사시장으로 일반점포 103개, 노점상 110개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9.11. 7 : 영천동 69번지 외 52필지 3,240㎡ 서울시 고시 제462호 시장용지로 결정 - 96.10.28 : 영천동 69번지 일대 31,700㎡ 천연생활권 상세지구 지정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 - 97. 4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근 천연동 89번지 주변 13,100㎡ 포함토록 결정하여 영천동 69번지 및 천연동 89번지 포함 전체 44,820㎡ 도시계획지구 공람('97. 4.19 - 5. 3) <p>㉕ 모래내시장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6. 7. 8 : 시장개설허가 (2,702㎡ 7개동 77개 점포, 좌판 86개) 	



제51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 97. 2. 5 : 도시계획용도 결정 및 상세구역 결정 (서 고시97 - 12) - 97. 4. 8 : 추가확대분상세계획구역 변경. 서울시에 승인요청(11,400㎡) 향후 추진 계획은 시장현대화 추진을 위한 조합을 결성토록 권유하고 조합이 결성된 후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하겠음.
이진수의원	■ 공사 무한책임의 촉구 1.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의 원청자와 하청자의 무한책임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건설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청자(도급인)로부터 하도급 계약사항이 통지되면 원청자(도급인)와 하청자(하수급인)에게 공사시방서, 설계서 등에 의거 책임시공토록 통보하고 감독부서에는 철저히 시공. 감독토록 촉구하겠으며,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 부서의 통보가 있을 시에는 건설업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34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하청자(하수급인) 변경 및 도급계약 해지도 검토하겠음.
	2. 선급금 지불의 효율성 제고 방안은 ?	➔ 선급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사업 도급업체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선급금 지불에 대한 효율성 제고방안으로는, 감독부서에서 선급금을 수령한 당해 업체의 임금체불 여부, 자재 적기 확보여부를 수시로 확인함으로 예정공정대

I. 區政質問



제51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확인됨에 따라 선급금 지급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봄.
	3. 부분하청의 제도화 방안	<p>➔ 부분하청(일부 공사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건설업법 제22조의2, 동법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제도화되었음.</p> <p>- 금액별 하도급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당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공사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 • 1건당 공사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 공사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 • 위 금액 미만의 공사에 있어서는 비율 적용을 받지 않음 <p>- 건설업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건설 공사의 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 미장, 방수, 석,도장, 포장, 비계 구조물해체, 창호, 지붕, 판금, 철물,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건축물조립, 강구조물, 승강기설치, 온실설치공사 등 이상에서 열거한 규정 이외의 제도화 방안은 연구, 검토하겠음.
■	<p>홍제 3, 4구역재개발지역의 '94년도 공시지가 산정의 부적정성에 대하여</p> <p>1. '94. 공시지가가 '93년도 대비 필지에 따라 150%에서 200% 까지 상승한 사유는 ?</p>	<p>➔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4,5조와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과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한 조사요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으며, 홍제3,4</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1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구역내 토지의 '93년 대비 '94년 개별공시지가 평균변동율은 +13.67%이며, 상승사유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향 및 당해 표준지를 적용함에 기인한 것임.</p>
	<p>2. 건설교통부의 년도별 지가 변동율에 의하면 '92년도부터 '94년까지 매년 지가가 하락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개발지역은 사업시행인가만을 받고 공사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94.1.1 기준으로 한 '94년도 공시지가 산정 시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적용, 재개발지역의 전체지역을 단일 필지로 보고 단일지가로 산정한 것은 지침의 확대 해석과 업무착오라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p>	<p>➔ 개발사업지의 경우 사업진행정도에 따라 년차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에 지가상승요인을 반영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지의 경우 '91.9.30사업시행 인가된 이후 '94.1.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당시 사업지내 건축물이 대부분(약 93%) 철거되어, 재개발사업을 위한 아파트부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93년 당시 6개 표준지가 '94년에 3개로 축소되었으며, 또한 표준공시지가의 상승이 있었는 바, 전체적으로 고저에 따른 개별필지의 특성 등 상이요인이 내재하나,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에는 개발사업지의 경우 일단지로 적용하라는 포괄적 내용만 명시되어 있어 당해 사업지의 경우처럼 고저에 따른 개별필지들의 상이요인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의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당해 개별토지의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의 자문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등 보완절차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후 결정, 공시하였음.</p>
	<p>■ 가로 가관점의 명의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점검 및 단속 계획은 ?</p>	<p>➔ 가관점은 옛날에 신문팔이, 리어카노점상 등의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시에서 마련한 것으로 우리구는 총71개중 창천동에 16개로 제일 많으며, 전혀 없는 동은 5개동임. 그간 지속적인 계도, 단속으로 음식 조리나 LPG 설치 등 6건, 노상 상품적치, 청</p>

I. 區政質問



제51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소불량 등 46건을 단속·정비하여 금년도에 80건을 정비하였으며, 작년도의 도색에 이어 금년도 봄맞이환경정비와 병행하여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음.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운영자가 사망하여 직계가족의 승계로 명의변경된 가판점이 2건 있으나, 그외는 명의변경은 안해주고 있음.</p>
<p>이성배의원</p>	<p>■ 영천시장 옆 소공원내의 노인급식장소 이전 방안은?</p>	<p>➔ 독립문 소공원 내의 노인급식은 '84년부터 "사단법인 한길봉사회"에서 매일 200명의 노인들에게 무료로 우유와 빵 등을 제공하고 있고, 금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3,900만원을 지원하여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면도 있어, 독립문공원내 건물이용 또는 전용건물신축 등을 검토하였으나, 그렇게 하기에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적정 장소를 물색하던 중 천연동사무소 밑의 지하공간이 적정장소로 판단되어, 이전을 추진하였는데, 한길봉사회에서 무슨 이유인지 동의하지 않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음.</p>
	<p>■ 과속방지턱의 문제점에 대하여</p>	<p>➔ 관내 과속방지턱은 총314개로서 대부분 구에서 설치하였으나, 일부는 개인들이 임의로 설치하여, 정규적인 높이 10cm, 넓이 3.7m에 미달되고 퇴색하여 차량 안전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어, 과속방지턱을 무단으로 설치치 못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보수를 위하여 금년도에 약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1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상반기에 1,860만원으로 198개를 도색하고 나머지 예산으로는 하반기에 도색 및 규격을 보수함으로 과속방지턱의 제기능 발휘와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음.</p>
<p>정혜연의원</p>	<p>■ 서대문구 연희2동 연희제3지구 자력재개발 추진이 20여년이 지나도록 진척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주민의 삶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대하여</p> <p>1. 홍연아파트 18개동의 토지(대지) 미등기로 인하여 주민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p>	<p>➔ 연희3자력재개발지역은 연희동 182번지 일대(약 5만여평)는 '79. 8. 28 서울시 고시 제380호로 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되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공공시설은 행정청이, 주택건설은 주민 스스로 시행하는 사업지역으로서 '79. 11.23 서울시 고시 제482호로 관리처분에 의거 건물개량을 추진해 왔으며, '83년 이전까지는 자력개발지구로 운영되다가 '83년부터 합동재개발로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어도, 지역전체가 준공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현재 건물 1,025동 중 956동 93%가 완공되었으며, 또한 이 구역은 토지구획정리법에 의한 환지지구로서, 일부만을 따로 떼어서 준공 및 등기를 할 수 없고 전체를 대상으로 준공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홍연아파트(24개동 400세대)만을 떼어서 준공 및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연희 3자력재개발이 지연되고 이유는, 주민의 경제사정 등으로 미개발 건물 69필지가 있고 환지예정선을 침범한 대지가 128필지(1,591.3㎡)가 있으며, 또 두사람 이상 한필지 대지를 공동분양 받았으나 상호 협조가 안되는 세대가 32세대가 있으며, 환지확정처분이 불가능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있음. 우리구에서는 미</p>

I. 區政質問



제51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준공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에 준공을 위한 예산 1억8천만원 중 6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97년도부터 '99년까지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확정측량 및 지적부, 등기, 토지대장을 작성, 준공을 추진하고자 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님,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음.</p>
	<p>2. 환지를 받았으나, 공동주택(공동환지)으로서 서로의 협조없이 건축할 수 없는데, 향후 대책은?</p>	<p>➡ 연희3자력재개발 구역에는 건축 최소면적인 27평 이하 소규모의 종전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공동 분양한 448세대 중 416세대는 개량되었고 32세대는 미개량됨. 향후 구청의 중재로 조속히 건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p>3. 유보지의 매입가가 현실화되어 현재 매입할 능력이 부족하며, 재개발 당시 유보지 매입을 권유하여야 하나 방치했다가 이제 매입하라함은 부당하니, '79년도 재개발 당시 시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가?</p>	<p>➡ 연희3자력재개발 구역에는 현재 보류지가 6필지 156평이 있으며, 보류지는 점유자가 있는 소규모 토지로서 점유자에 대하여 매각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1,2항에 의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개소에 의뢰하여 평균가액에 의한 매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14필지 중 8필지 159평은 이미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기 매각된 바 있음. 잔여 보류지 156평에 대하여도 사전 홍보 및 안내하여 규정에 따라 점유자에게 매각을 추진하겠음.</p>
<p>김종섭의원</p>	<p>■ 국내 경제난과 당산철교의 철거에 따라, 이대주변 유동</p>	<p>➡ 주차장은 6m 도로에 연결된 토지여야 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나대지를 구입해야 하나,</p>



제51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인구가 감소되어 이 지역의 많은 상가가 폐업하는 실정인데, 불법주정차 단속까지 강화되어 교통이 가중된 이대주변 상인의 입장을 감안하여 구청장께서 약속한 주차장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p>	<p>부지확보가 어렵고, 이대주변 공유지는 도로, 공원, 시민아파트 부지로 되어 있어, 주차장 부지로는 적합치 않으며, 사유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매수가 어렵고, 건물과 땅을 같이 매입해야 하는데, 상권지역으로 권리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민간차원의 유료주차장건설과 대현2재개발사업이 추진 되면 병행해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시비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이대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아 교통량이 과다하고 불법주정차가 많아 단속을 안할 경우, 교통소통에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사실 상권보호를 고려하여 20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하는 등 교통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단속만을 하고 있음.</p>
<p>■ 단속의 마찰해소와 합리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시 사전호각제를 다시 실시할 용의는 ?</p>	<p>➔ '97년도 당시 서울시 각 區 단속지침과 단속형태가 각기 다름으로 인하여 민원이 유발되어 서울시에서는 통일된 주차단속강화지침을 각 구에 시달함에 따라 사전호각제가 폐지되었음. 이대주변은 하루 세번 단속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두번으로 완화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단속하도록 하겠음.</p>	
<p>권재일의원</p>	<p>■ 남가좌동 260번지 재개발추진에 대하여</p>	<p>➔ 은평구의 불광1재개발구역이 우리구 남가좌8재개발구역과 다른 점은, 구역이 정예화되어 추가보완사항 없이 지구지정되었고, 남가좌8구역은 구역경계가 굴곡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보완 및 재개</p>

I. 區政質問

제51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의 동별접수 현황은 ?</p>	<p>➡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정비하여, 관리번호를 지정한 후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우선 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외부차량의 주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우리구는 10월1일부터 연희1동 1개소, 연희2동 2개소 총3개소에 노상주차구획선 278구획을 시범확대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운영실태를 분석하면 주택가의 야간주차질서가 바로 잡히고, 주민들의 주차편의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금년에 12개동이 시범확대 실시 지역을 선정보고 함에 따라 12개동 중 외부차량 유입이 심한 남가좌1,2동, 그리고 시비로 주차장 부지매입이 완료된 홍제1동, 시비지원이 확정된 북가좌 1동 등 총 4개소 322구획을 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범</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1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 재래시장 재개발계획에 대하여</p>	<p>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년차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임.</p> <p>➡ 모래내시장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6.7.8 시장개설허가(2,702㎡ 7개동 77개 점포, 좌판 86개) - 97.2.5 : 도시계획용도 결정 및 상세구역 결정(서 고시 97-12) - 97.4.8 : 추가확대분 상세계획구역 변경. 서울시에 승인요청 - 11,400㎡ -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토지주주들의 60% 동의시 재개발 가능 • 시장내 좌판 노점상 정리 방안 • 상가건물 임대상인 영업권 문제 • 영세상인 재정적 문제 및 개별적 이해 관계 등 - 향후 추진계획은 시장현대화 추진을 위한 조합을 결성토록 권유하고, 조합이 결성된 후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음.
<p>최광진의원</p>	<p>■ 견인차의 버스전용차선 진입과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의 견인차 탑승단속에 대하여</p>	<p>➡ 전용차선은 노선버스, 통합버스, 긴급차량 등만 다닐 수 있는데, 견인차량 2대를 구에서 관리하기에 경우에 따라선 동승하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구 견인차가 진입하여 단속한 사례가 29건이 있었음, 앞으로 이런 사례와 단속과 동시에 견인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하겠음.</p>

I. 區政質問



제51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 우리구 官공사의 능장 발주와 겨울공사에 대하여</p>	<p>➔ 금년도 공사 총 51건에 145억원 중, 38건 81억은 구비이며, 13건 64억원은 시비 사업으로서 현재 46건이 발주되었고, 5건이 미발주 상태인데, 사유는 보상지연 문제와 연회여중 옹벽 및 연가교 확장 등에 있어서 기술적인 검토사항이 많아 현재 용역설계중으로 익월 초까지는 발주를 마쳐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음.</p>
	<p>■ 무허가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한시적 특별조치 등을 민선구청장으로서 독자으로 시행할 용의는 ?</p>	<p>➔ 현재 무허가건축물은 '81년 12월 30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물을 의미하는데, '81년 12월 30일 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일부 양성화되었으나 이는 건축법개정이나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처리할 법적인 사항으로 무허가건물 양성화는 구청장 독자적인 권한으로는 조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p>
박덕균의원	<p>■ 예산편성과 승인 그리고 집행에 대하여</p>	<p>➔ 예산은 1회계년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수반되는 세입과 세출의 예정계획으로, 구청장이 법령과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지침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해서 편성함. 예산편성은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되며 구의회에서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는데, 이는 주민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법적취지로 이해됨. 예산편성과정에서</p>



제51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 서대문구의 의전 기본방향 정립과 통보 등에 대하여</p>	<p>▶ 자치단체의 공식행사는 구민의 결속을 다지고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크고 작은 행사를 구민의 참여속에서 겸소하면서도 격조 높게 개최할 수 있도록 총무처에서 제작한 “정부 의전편람”에 의거 준비단계에서부터 마무리단계 까지 의전절차의 표준을 제작, 각 과.동에 배부하여 각종행사에 참고케 하였음. 그러나 “정부 의전편람”에서도 서열에 대해 공식적으로 규</p>	<p>의원님들께서 지역구민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 개진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여 현재 예산편성을 하고 있음. 예산이 의결돼 구청에 이송되면 구청장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고시함.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된 목적과 금액의 한도내에서만 하게되며, 예산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4단계를 이룸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투자의 효율이 증대되도록 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되어있음. 앞으로 예산공개원칙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을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예산편성 방향과 역점사항 등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이 되도록 하겠음.</p>

I. 區政質問



제51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 산의 테니스회 등 각종 동호회의 산림훼손 방지대책에 대하여</p>	<p>➔ 안산을 이용하는 각종 조기회가 산림을 오히려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약 2회에 걸쳐 각 조기회 회장, 총무를 교육시켰고, 앞으로 산을 찾는 조기회가 더욱 산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p>정일수의원</p>	<p>■ 소형살수차 구입배경과 구입비 및 이면도로활용계획에 대하여(보충질문 : 운행기사의 임금, 기름값 등 부수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예산내역은 어떻게 되며, 벌써 두 차례 수리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에의 활용가능성과 운영효율성 등의 현실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감안하여 구입, 운행하는 절차없이 시행한 것은 예산낭비이고, 특정동에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p>	<p>➔ 살수차 보유대수는 대형 1대, 중형 1대로 총 2대이고, 금년도에 1대 증차할 계획이며, 말씀하신 중형차는 구입가격이 2,300만원으로 일일 작업능력은 약 4km이나, 그동안 운행결과 국내에선 처음 제작된 것이다 보니 기능상 미비점이 있어, 2회에 걸쳐 15일간 수리하였으며, 주정차 관계로 이면도로에 운행에는 문제점이 있어, 좀 더 시험 운행 후 구 전체에 확대운행 여부를 의원님들의 평가를 받아 결정하겠음(보충답변 : 기사 인건비가 한명당 연간 1,800만원, 보험료,유류대 및 수리비 환경부담금 등 차량운영비 1대당 250만원이 소요되며, 차는 조달구매한 것으로 삼일자동차주식회사에서</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1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22개동 전체에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p>처음 제작한 것으로 기능상에 문제가 있어 2회 수리하였음.</p> <p>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도 수렴하여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차량운행의 22개동 확산여부는 차량이 제대로 운행되면 의원님들께 보여 드려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음.)</p>
	■ 쓰레기실명제(실명제봉투사용)를 실시계획은 없는지 ?	<p>➡ 쓰레기실명제는 불이행시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어,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효과기대가 어렵고, 자칫 진시행정으로 끝날 수 있음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금년 4월 1일부터 마포 등 3개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성과에 따라 결정하기로함에 따라 시범구의 시행상태를 보아 필요하다면 우리구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p>
	■ 쓰레기줄이기와 분리배출의 생활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젓은 쓰레기 물기제거기 및 발효기를 구매, 보급할 계획 없는지 ?	<p>➡ 금년 상반기에 440만원의 예산으로 물기 제거용기 2,200개를 구입, 각동에 배부하여 활용케 하였고, 앞으로 1억 8,000만원으로 고속발효기도 14대를 구입해서 공동주택 등에 보급하여 '97년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약20% 감량할 계획임.</p>
강석준의원	■ 지하수 사용에 따른 수질검사의 문제점은 없는가 ?	<p>➡ 현재 관내 190개소의 지하수 중 7개소는 음용으로, 183개소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수법에 의거 시립보건연구원과 대한광업진흥공사로 부터 45개 항목에 걸쳐 년1회 검사를 받으며, 검사료는 5만원</p>

I. 區政質問



제51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부터 18만원임. 현재 2 곳에서 하는 수질검사를 보건소 등 여러곳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의하겠음.
	<p>■ 공공도로의 적치물 관리와 난맥상의 행정대안은 ?</p>	<p>➡ 관내 500여개의 단속대상 도로적치물의 단속실적만도 400건에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만큼 악순환되고 있는 실태이나,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음.</p>
	<p>■ 공중화장실 관리, 감독에 대하여</p>	<p>➡ 공중화장실 13개소는 고정관리인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동식 50개 중 46개는 홍제3동에서 가정용으로 사용중이며, 홍은3동에 1개, 홍은2동에 1개, 대신동에 가정용으로 2개가 비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p>
정일출의원	<p>■ 서대문구가제정에 대하여</p>	<p>➡ “서대문구민의 노래” 가사는 '96. 2.15부터 3.30까지 45일간 동안 공모하여, 총38건이 접수되었고, '96. 4.20일 구의회 정연식 위원장님, 오환인 위원장님, 국문학의 권위자인 국민대학교 이상보 명예교수, 아동문학가이신 “엄기원” 색동회 이사님, 카톨릭 음악대학 김철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노랫말 심사위원회”가 공모된 38건을 심사하여 최우수 1편(강춘남), 가작2편(정순영, 임번섭)을 구민의 노래가사로 선정하였음. 또한 구민의 노래곡은 서울프로 김성국, 아남 레코드사 임정호, 가수 서수남 3명의 작곡가에게 의뢰하여 6곡을 준비하였고, '96. 12.19일 준비된 6곡을 대상으로 정연식 위원장님, 오환인 위원장님, 합창단 주최자</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1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이병작 교수, 카톨릭음악대 김철희 교수 등으로 구성된 "구민의 노래 작곡심사위원회"가 심사숙고한 후 서울프로 김성극 작곡가의 곡을 선정함으로써 강춘남 작사작곡의 구민의 노래가 마련되었음.
<p>■ 모래내시장내에 공중화장실이 없는점에 대하여(보충질문 :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언제 시설할 것인가 ?)</p>	<p>➡ 모래내 시장은 1966년도에 개설허가를 받은 오래된 시장으로 면적은 2,700㎡, 점포가 77개소, 좌판이 86개소 인데, 화장실 현황은 남자소변기 2개, 남자대변기 3개, 여자대변기 5개의 수세식 화장실로서 시설이 미흡하나, 시장 여건상 화장실 확장은 어렵고, 시장쪽과 협의하여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p>	
<p>■ 모래내 홍제천개발 기초공사의 문제점은?(보충질문 : 현재의 철썩기공법은 공사비도 많이 들고, 하수도 밑 50m 까지 파기 때문에, 미생물등 생물이 자생할 수 없는 단점과 예산투자에 많은 차이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자연식 생활공법으로 대처하는게 어떤지 ?)</p>	<p>➡ 모래내 홍제천은 하류이기 때문에 홍수시 각종 하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보도블럭 돌붙이공사를 한 것이며, 내무부에서 일본의 자연하천 자료와 경기도 등 수도권 일원의 잘 가꾸어진 하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음. 자연친화적인 하천, 맑은 하천을 만들겠음.(보충답변 : 선진국에서 시공하고 있는 자연식생공법을 강남구청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비교적 큰하천으로 분류하수관 등 도시시설물이 있어 자연식생공법으로는 홍수시 시설물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철삭기로 보호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식생공법으로 꽃을 심는다든지 풀을 자라게 하는 식으로 하였음. 홍제천은 하안으로서 홍수시 분류하수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삭기로</p>	

I. 區政質問



제51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보호하고 나머지 공간은 자연식생공법으로 나무도 심고 돌붙이기로 조경하는 등의 부분적인 자연식생공법으로 정비함.
김정현의원	<p>■ 어려운 서민층이 사용하는 LPG 값과 가스통 값을 상당히 인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p> <p>■ 구의회 승인도 없이 "도시계획 도로발전계획" 책자를 만들었는데, 어느 예산을 사용하였는지?</p>	<p>➔ LPG 및 가스통 값 인상은 구청 승인사항이 아니고, 가스는 통상산업부에서 Kg당 510원에서 660원으로 인상하고, 가스통은 생산업체에서 올렸는데 확인하여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음</p> <p>➔ 이자료는 홍보용이 아니라 업무용 책자로서 앞으로 요긴하게 이용될 수 있는 자료라 사료되며, 토목과 시설부대비로 제작하였음.</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 제54회임시회 제2차 ~ 제3차 본회의 ('97. 9.25 ~ 9.26)

質問議員	質問 内容	答 辯 内 容
박덕균의원	<p>■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고지를 전면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p>	<p>➡ 오랜 기간 국.공유지를 점유해 오던 어려운 주민들이 많은 변상금을 부담하게 된 것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일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점유자가 점유 당시 국.공유지가 아닐거라 생각한 주민은 없었을 터인데, 국가재산을 매입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점유한 책임과 연유는 밝혀져야 한다는 점임. 그간 어려운 우리 주민들의 변상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에선 많은 검토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제안하신 바와 같이 법률전문가, 이해관계자, 공무원과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연구할 생각임.</p>
	<p>■ 국가위임사무를 구민위주의 정책으로 변환할 용의는 ?</p>	<p>➡ 지방자치의 목적은 주민의 참여하에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직접 반영하는 주민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있는 만큼, 우리구에서도 '98년도에 주민복지를 위해 노인복지센터, 청소년회관 등의 동단위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등 많은 재정을 투입할 계획으로 앞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행정력을 모아 가겠음.</p>
	<p>■ 재건축.재개발 정책 개선방향은 ?</p>	<p>➡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주도하고 구청은 구역지정 시 관계서류를 받은 다음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준공의 단계를 거쳐 관여하는 권한이 있음. 재개발은 조합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실태나, 행정지도 또는 회의, 교육을 통해서 주</p>

I. 區政質問

제54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유도하겠음. 시행자 부도와 조합장의 부조리로 인한 주민의 피해 등도 미리 방지토록 노력하겠음.
전성장의원	<p>■ 쓰레기수거시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악취로 인하여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p> <p>■ 전 공사구간 아스팔트, 콘크리트 브레카 사전작업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p>	<p>➡ 우리구 쓰레기수거차는 당초 30대였으나, 차의 내구년한 6년이 지난 10대를 2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대.폐차한 바 있음. 앞으로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오물과 오수가 배출됨으로 인해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p> <p>➡ 도로굴착에 따른 아스팔트콘크리트를 깨기 위한 브레카 사전작업과 공사지연 등으로 구민께 불편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p>
조재구의원	<p>■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실천계획 및 향후 비책은 ?</p> <p>■ 도시가스 및 LPG사고방지를 위한 비책은 ?</p>	<p>➡ 모든 정책은 환경의 기초위에서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구청장이 지향하는 행정철학으로서, 안산의 아파트 건립사업 승인 거부와 서대문테마공원 조성 등이 이러한 소신 아래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구에서는 환경행정의 6개 기본방향과 21개의 행동계획을 수록한 "21세기 서대문 쾌적한 삶터"를 '97. 7월 전국 자치구중 최초로 발간하여 환경에 대한 중·장기정책의 실천의지와 비전을 대내외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느 자치구 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하여 앞서가고 있다고 사료됨.</p> <p>➡ LPG가 15개소, 도시가스가 98개소, 고압가스저장소 1개소, 기타 37개소 총 151개소이며, 점검은 구청과 가스안전공사가 합동</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4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으로 LPG, 고압가스 16개소에 대해선 년3회, 도시가스 98개소는 년2회 점검을 실시함. 시민아파트는 구청 가스안전점검 요원 2명이 자체적으로 년 3회 정도, 총1,770개소를 점검하여, 경고 2건, 현지시정 15건, 시정지시가 51건임. 주민홍실적으로는 홍보물 23,000매를 배부하였고, 여론조사를 2회 했으며, 케이블TV, 서대문소식지, 지역신문 등에 여러차례 홍보하였음. 도시가스 설게도를 각동에 1부씩 배치하고 있음. 앞으로도 안전점검과 홍보를 통해 가스사고 방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p>
	<p>■ 건축폐기물 무단배출을 처리할 기동순찰반을 구성, 운영할 용의는 ?</p>	<p>➔ 13개분야 175명의 기동처리반이 편성되어 있어 민원발생 즉시 처리하고 있고, 무단폐기물 단속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음.</p>
홍성덕의원	<p>■ 연세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개설에 대하여?</p>	<p>➔ 연세대학교 내의 도시계획도로는 850m 중 285m가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을 아끼면서 경관을 보충하여 우리 구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안산순환도로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연세대학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별도로 필요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문제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한 만큼, 현재 도시계획변경 결정 용역을 준 상태임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임.</p>
	<p>■ 살수차 시범운영지역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향후 살수차의 운영계획은? (보충질문</p>	<p>➔ 살수차를 3월 20일부터 남가좌2동에서 운영하였는데, 모래내지역이 비산면지가 아주 심해 남가좌2동을 청소하다가 남가좌1</p>

I. 區政質問

제54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 시범운영 기간에는 시범지역을 확실히 정하여 살수차운행의 성패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타지역은 시에서 구별로 지원한 소형살수차 구입비 4,000만원으로 구입하여 대처해야지, 시범운영차로 이곳저곳 운행하는 것은 시범지역운행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지 않는가 ?)</p>	<p>동, 북가좌1.2동, 가좌로, 거북길 등을 지나게 됨에 따라 중간에 중단하고 돌아오는 것 보다는 같이 청소하자 하여 1주일 중에 이틀은 가로청소를, 4일은 이면도로에 살수차를 운행하였음.(보충답변 : 초중형 물청소차를 구입하게 된 동기가 홍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데 많은 노력하셔서 구입케 되었지만, 그렇다고 남가좌2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단지, 많은 관심으로, 적극 관여하신 의원님의 동네에서 시험가동을 했던 것이고, 차량의 추가구입 사항은 추가운행할 운전사 고용 등 재정상의 문제점이 있기에 추후 검토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겠음)</p>
<p>■ 차고지 증명의 건에 대하여</p>	<p>▶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은 개인택시 1,009대, 개별용달 268대, 개별화물차 212대로 총 1,489대임. 자기차고가 없을 시 공영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을 발부 받아야 하는데 비용은 15만원내지 20만원이 소요됨. 관내 1,489대 중 노외주차장 516개소 등의 관내 주차가 1,023대, 타시도 주차가 466대, 즉 31%가 타시도에 주차하는 문제점이 있음. 거주지 우선주차관계를 차고지증명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시에 건의하겠음. 차가 차고지증명은 다른 곳으로 해놓고, 길거리에 무단주차 함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겠으며, 주차장 운영자들이 차고지증명만 떼줄 것이 아니라,</p>	



제54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자기차고에 주차도록 유도하는것과 운영자가 주차를 불응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겠음.
이성배의원	<p>■ 홍제천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p> <p>■ 봄철 꽃가루 등으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가로수의 수종변경 계획은 무엇이며,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없는지 ?</p>	<p>➔ 종로구에서 금년에 7억을 들여 종로구 쪽 분류하수관 보수 공사를하고 있고, 우리구의 부실부분은 완벽하게 보수하였으며, 2001년까지 모두 30억을 들여서 하천의 석축이라든지 도수로 등을 완벽하게 확보하겠음. 자전거 도로는 홍제천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종로구나 마포구하고 연결된 도로, 즉 서울시 일원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하며, 자전거도로를 처음 구상할 때의 시장과 그후 시장이 바뀐에 따라 계획완성 년도가 차이가 있음. 자전거 활용시대가 곧 도래할 것에 대비하여 년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인접구와 협의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나가겠음. 지난 환경보호캠페인 시 많은 학생의 참여에 비해 별효과가 없었음은 동감하나, 학생들이 홍제천에 와서 하천변을 직접 밟아 보고, 하천상태도 확인하면서 애정을 가지는 것.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하천을 가꾸는데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음.</p> <p>➔ 관내 가로수는 대부분 은행나무와 버즘나무로서 여름철에 무성하여 일부 상가간판을 가리는 경우가 있지만, 도시 미관상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의 불편을 감안하여 간판을 너</p>

I. 區政質問



제54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무 많이 가리는 지역은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해소토록하겠음.
이기봉의원	<p>■ 제2대 지방의회 활동기간중 7회에 걸쳐 실시하였던 구정 질문들에 대한 실천사항 및 시정내역에 대하여</p> <p>■ 북아현 1,2,3동 철로변 방음벽설치공사의 진행상태와 향후 추진계획은 ?</p> <p>■ 공무원 인사문제와 사기진작에 대하여</p>	<p>➔ '95. 7월부터 '96.6월까지 총 177건이 접수되어 160건(90%)이 성실하 실천되고 있고, 17건(10%)이 미처리되었으나, 2건은 진행중이고, 6건은 검토중이며, 처리가 불가능한 9건의 내용은 반상회폐지, 시설녹지 해제, 옥탑 양성화방안 강구 등의 법과 제도, 막중한 예산, 중앙부처와의 협조 등과 관련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사항임.</p> <p>➔ 방음벽설치에 따른 시비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방음벽을 설치함으로 소음이 주간에는 70db, 야간에는 65db며, 진동은 주간에 65db, 야간에는 60db로 되었음을 주민과 함께 확인하였고, 현재 철교부분 약 30m를 막지 못하였지만, 빠른 시일내에 막고, 철도청장과 협의하여 짧은 레일을 긴 레일로 바꾸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p> <p>➔ 우리구의 인사방침과 원칙은 구청장의 사심을 담지 않고 있으나, 가능한 조직의 운영상 효과적인 측면과 상호 호혜관계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청장의 선택적 권한으로서, 구민들께서도 양해하시리라 생각하며, 단, 전직원을 구청장이 알 수 없기에 인사 실무자나 책임자에게 선택권을 주되, 인사와 관련한 부정한 사실이 있으면 공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주지시키고 있음.</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4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김종섭의원	<p>■ 서대문구 대신동 107 - 77호와 110 - 15호간의 소방 도로 개설공사의 지연사유와 향후 공사계획 및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 대책은 ?</p> <p>■ 대현동력키아파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추진반의 활동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및 제3기재개발조합의 협조상황과 향후 계획은 ?</p>	<p>➡ 공사지연 사유는 해당 공사구간에 7동의 무허가건물이 있었는데, 보상과 관련하여 합의가 안되어 지연되다가, 8월말에 공사가 착공되었고, 현재 30%의 공정으로 11월 말까지는 완공할 것임.</p> <p>➡ 재개발조합이 조합의 정상운영과 문제해결대책 수립보다는 상호 깊은 불신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조합운영의 정상화방안과 규정위반입주자 처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96. 7. 23 구청에 "력키아파트 대책추진반"을 설치하여, 타구의 유사사례 수집, 현장방문과 법률자문을 받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던 중, '97. 5. 17 선출된 조합장과 임원이 전조합원으로부터 분양계약서를 받아 위반 입주자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협의하고, 시공회사인 L.G건설과도 협조 체제를 잘 구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앞으로 대책반은 행정지도는 물론 규정위반 입주자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처분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면 관계규정 검토와 유관기관 협의하에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음. 원주민인 "곽길수"외 6명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파트분양 신청을 해야 하나, 당시 조합과 협상이 안되어 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조합에서 중도위재결을 거쳐 결정된 보상금을 공탁,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분양대상 조합원에서 제외하였으</p>

I. 區政質問

제54회

質問議員	質問 内容	答 辯 内 容
<p>■ 대현동 56 ~ 40번지 일원의 대현제2구역재개발 추진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p>	<p>➔ '85. 11. 22 주민들의 재개발사업신청에 의거 건설부에서 2,000평 중 1,000평만 재개발을 추진토록 조건부지구지정을 해주었으며, '92. 11. 21 주민들이 2,000평의 공원용지를전면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로 부터 “불가”로 통보되어 94. 12. 10 구역지정조건대로 “1/2 개발과 층고를 24층”으로 설계, 서울시에 재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한 바, 건폐율 및 층고가 높아 재조정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주민들이 이에 불응하여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은 “1,000평만 개발할 경우 사업성이 없다”며 1,300평의 개발을 요청하여, 주민과 협의 끝에 1,300평 개발방안과 1,000평 개발방안을 작성, 개발을 반대하는 이화여자대학교대표측과 협의 및 대책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1,300평 개발방안은 공원용지의 대체지정이 안될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하되, 양측 의견 조정이 불가능 할 시에는 부득이 구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과 이화여자대학교 측을 이해, 설득하여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4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권재일의원	<p>■ 동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p> <p>■ 홍은3동 동신병원 뒤 홍제천 물막이공사 계속사업의 집행 총공사비 등에 대하여(보충 질문 :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썩은 모래와 쓰레기를 깨끗한 모래로 덮었는데, 공사업체가 스스로 덮은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지시로 덮은 것인지 ?)</p>	<p>➔ 주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항으로 내무부에서 대동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자 주민카드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행정구역변경을 유보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어 현시점으로서 불가하고 대책이 있을 때 고려하겠음.</p> <p>➔ 동신병원 뒤 홍제천은 고수부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홍제천 정화차원에서 홍제전철역 지하에서 발생하는 자연지하수를 이용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여, 同지역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96년도에 홍제천 종합정비공사에 포함시켜서 2,000만원을 투입, 물막이시설을 한 바 있으나, 공사 후 홍제지하철역의 지하수량이 많지 않고, 홍제천 상위지역인 종로구지역 하수관의 시설미비로 인하여 홍제천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우기시에 쓰레기들이 쌓이고, 유수정체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금년 7월에 일부 시설에 대한 보완공사를 한 바 있음. 종로구에서 7억원을 투입하여 분류하수관 보수공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본 공사가 끝나 수질이 개선되면 同시설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그 이후에도 효과가 없으면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류 지역부터 시행하고 있는 홍제천 종합정비공사시에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맑고 깨끗한 홍제천으로 가꾸겠음</p>

I. 區政質問

제54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보충답변 : 썩은 모래와 쓰레기를 하수관에서 준설하고 난 후, 비가 내려 깨끗한 모래가 떠 내려와 그 위를 덮은 것이지, 고의적으로 썩은 모래와 쓰레기를 깨끗한 모래로 덮은 것은 아님)
	<p>■ “서대문구 공무원의 친절 1위” 현수막 제작설치와 광고물, 현수막, 불법설치과태료 부과규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금액은?</p>	<p>➔ 전국 친절 1위라는 플래카드를 붙인 계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하나의 각오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총8개 중 3개만 게재하였으나, 오늘 증으로 정리하겠음. 구청, 경찰서 등의 관공서에서 게재할 자리가 없어, 비지정 장소에 게재한 플래카드나 현수막으로서 “물을 아껴줍시다” 등의 주민계도나 공익차원의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업무를 집행하겠음. 금년도에 현수막을 총3,884건을 철거하였으나 “즉시철거”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고한 후 철거할 여유가 없음으로 먼저 철거할 계획임.</p>
최광진의원	<p>■ 도로상의 무질서한 주.정차 방치에 따른 도로상의 행정부재에 대하여</p>	<p>➔ 도로는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구만 한달에 차가 1,000여대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주정차를 강압적으로 단속하면 오갈데가 없는 차들로 주민간의 마찰만 증폭시키는 결과가 되어, 이에 대한 고민이 많으나, 연구하여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겠음.</p>
	<p>■ 쓰레기분리수거 이대로 좋은가? (보충질문: 자원회수 시설부지 및 설치여부의 대</p>	<p>➔ 우리구 청소재정은 봉투판매 수입금이 약 20억이며, 지출액은 173억으로 자립도는 약 11.5%인데, 운전기사 임금까지 포함하</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4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주민 설문조사결과와 부지선정위원회활동 및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자원회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주민홍보도 없이 타구에 위탁하는 것은 구정포기라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p>	<p>면 약 200억이 지출됨. 쓰레기 발생량은 8월 31일 현재 65,000톤, 하루에 267톤으로 작년의 292톤에 비해 약10% 감소되었고, 재활용품은 88톤 정도 회수됨. 쓰레기 배출방법은 주택가는 격일제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각 동별 지역특성에 맞게 통별로 배출요일과 수거요일, 수거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상가지역이나 가로변은 매일 수거하며, 아파트지역은 종전대로 운영함.</p> <p>쓰레기 배출시간은 하절기나 동절기에 똑같이 수거전일 일몰후에 배출하고, 일출전까지 수거함. 정일정시 배출 및 불기없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그리고 분리수거는 주민들께서 원칙대로 실천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나 미흡하여, 이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금년의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284건으로 2,600만원을 부과하였음. 재활용품 수거는 2가지로 현재까지는 대부분 동별로 문전수거를 하였는데, 연희 2동과 남가좌2동을 시범지역으로 대면수거, 즉, 차가 직접 다니면서 분리된 대로 종류별로 현장에서 수거함으로 다시 분리하는 불편이 감소됨. 2개동을 시범적으로 10월까지 시험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대면수거로 제도를 변경하여 확대해 나가겠음. 환경미화원은 현재 347명이고, 그 중에서 18명이 퇴직했으며, 금년말에 9명이 정년퇴직할 예정임. 청소는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대행업체에 대한 청소비는 봉투</p>	

I. 區政質問

제54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판매액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자원회수시설 관리사항은 1구 1소각장이 원칙이었으나, 시설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하여 효과는 별로 없어 현재는 광역소각장을 원칙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어 서울시에서도 1구 1소각장 건설에 대해선 지원을 않고, 2내지 3개구가 하나의 광역소각장을 만들 때만 예산을 지원하겠다함. 예측되는 가연성 쓰레기 발생량은 1년정도 가면 약 7,500톤이고, 건설 예정규모는 약8,500톤으로 용량이 오히려 초과됨. 우리구에 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은 없지만 소각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으리라 예측하고 있음. 위원회 활동실적은 없음.</p>
정일출의원	<p>■ 구민 종합경기장 건설 구상은 ?</p> <p>■ 가좌역~모래내시장 입구간 지하도건설계획은 없는지?</p> <p>■ 구립 도서관 건립문제에 대하여</p>	<p>→ 앞으로 땅속을 이용하는 지하시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북가좌초등학교와 같이 지대가 높고 공사비가 적게 들며 효용가치가 큰 곳을 지하개발하여 각종 체육시설을 비롯, 주차장 등을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깊이 연구할 것이며, 홍은동 소재 백련저수지가 완공되면 약2,200평의 운동장이 생김으로 그 곳에 축구장을 비롯한 다목적 종합경기장 성격의 장소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음.</p> <p>→ 경의선의 복복선화 문제와 지하철 11호선이 그 곳을 지나는 문제를 연계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여 깊이 연구하겠음.</p> <p>→ 공중의 정보이용이라든지, 문화활동, 평생교육의 증진을 목적으로 자치구당 800석</p>



제54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이상 규모의 자치단체 운영 공공도서관을 시설토록 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어, 우리구는 '86.12.18일부터 1,340석규모로 기건립한 구립도서관을 운영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가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의거 인구 15만명 당 1개소의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에 따라 우리구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내년도에 300석 규모의 최첨단 시설을 갖춘 도서관을 건립할 것임.</p>
기창표의원	<p>■ 애완용 방건의 문제 해결방안은 없는지 ?</p> <p>■ 영천, 모래내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p> <p>■ 상가의 일회용품을 영구적 물품으로 마련해서 대여 활용의는 ?</p>	<p>➔ 방건 단속에 따른 인력, 장비 및 기술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9월 1일자로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해 합동으로 주1회씩 방건이 많은 지역을 단속하고 있고, 홍보도 철저히하여 신고되면 즉시 조치하고 있으며, 그간 단속실적은 8월 말까지 16건의 방건을 단속하였음.</p> <p>➔ 모래내시장은 70년대에 서울시 전역의 무허가 노점상을 잠정허가할 때부터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무허가시장으로서, 재개발하기 위하여 상세구역으로 지정, 현재 조합의 신청을 받아서 중소기업청의 보완지시를 받아 준비중으로, 조합이 구성되면 노점상들에게 준조합원자격을 부여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구청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를 취하겠음.</p> <p>➔ 요즘 장래는 대부분 가정에서 보다는 병원 영안실에서 치르고 있어 영구한 물품을 구에서 대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나, 충분히 검토하겠음.</p>

I. 區政質問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이진수의원	<p>■ 홍제3,4구역 재개발지역내의 국.공유지 매각가격심의결정은 적법, 타당하며, 국공유지 매각가격 결정시 부적법하게 산정된 사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가액에 일률적 가산률을 적용하여 현시가 보다 10% 이상 과다하게 매각 가격을 결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은 적법한 것인가? (보충질문 : 불합가격 감정평가액에서 개량비를 공제할 용의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과 지가가 상승할거라는 기대요인을 감안하여 심의한 것은 적법,타당한가?)</p>	<p>➡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년차적으로 공시지가의 지가상승요인을 함유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계획의 경우 '91.9.30 사업시행 인가된 이후 '94. 2.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당시 사업중에 건축물이 대부분 철거되어, 재개발사업을 위한 아파트 부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지가의 상승이 있는 바, 전체적으로 고도에 따른 개별 필지 특성등 상이요인이 내재하니 조사요령에는 개발사업지의 경우 일단지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결정된 사항임. 행정소송은 제척기간 3년이 지나서 할 수가 없으나, 민사재판은 가능하고, 강제계약이 아니고, 옛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스스로 매입해서 계약한 사항임.(보충답변 : 개량비는 매각가격 결정 후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공개할 수없고, 공유지 매각 심의는 '95년 2월 14일 실시하여, 홍제3구역내 260필지는 감정평가액의 6%를 상향결정하였고, 홍제4구역내의 114필지는 9.6% 상향결정하였는데, 상향이유는 홍제 3,4구역내 개별공시지가는 입방미터당 90만원임에 비해 감정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음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상율을 결정하였음. 심의 절차는 적법하며, 제척기간이 지난 지금으로서는 취소도 할 수 없고 재심도 할 수 없는 상황임.)</p>
정일수의원	<p>■ 불광천변도로 통행여건 개선책에 대하여</p>	<p>➡ 불광천변 주택의 대문 앞 도로로 많은 차가 다님으로 인하여 주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어, 구청에서는 해당 도로의 일방통</p>



제54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행화와 인도설치, 그리고 노퍽을 넓히는 사항 등을 검토중으로서 토목과,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 등의 유관 과의 협의 아래 교통 체계와 보도 등의 개선을 위해 제반 사항을 적극 추진하겠음.</p>
<p>■ 서울시 버스노선변경에 관하여</p>	<p>➡ '97. 4월에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개혁종합 대책이 마련되어 시달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구 관내 버스통과노선 127개소 중, 32개 노선을 신설, 연장, 단축 또는 경유지를 변경한다는 내용임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의회에 보고드린 바도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 중 9개노선이 문제가 있다하여 2개 노선을 추가로 서울시에 올렸고, 서울시에서 150번 버스노선이 161km로 너무 장거리 노선이니 까, 자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주민 수천명의 진정서 등 여러 경로로 뜻을 전하였으나, 전입 시장이 사임하는 등으로 인하여 결정사항이 무기연기된 상태로서, 150번 노선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p>	
<p>■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에 대하여</p>	<p>➡ 쓰레기봉투 판매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이윤과 상인유치 등에 상당한 기대를 하였으나, 현재 판매이윤이 2% 밖에 안되며, 투자비가 많이 들어 상인들이 봉투판매 취급을 기피하는 실태임에 따라, 봉투판매 이윤도 인상시키고, 판매대금회수방법도 검토해서, 업소의 봉투판매 기피로 인한 주민불편과 쓰레기종량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p>	

I. 區政質問

제54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정혜연의원	<p>■ 자력재개발지역 유보지의 토지매입을 개발 당시 시가로 매입토록 조치할 수는 없는가?</p>	<p>➔ 유보지 설치 목적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환지누락토지 발생시와 환지소유자간에 합의 등 건축촉진을 위한 환지계획변경을 대비, 보유한 토지로서 현재 총 유보지 13필지(892㎡) 중 9필지(575㎡)를 매각하였고, 5필지(466.5㎡)는 매각대상으로 남아 있는데, 유보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개소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균가액에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실가에 매각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p>
	<p>■ 자력개발지역 유보지, 환지 내에 있는 공동필지에 단독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가?</p>	<p>➔ 연희3자력자력재개발사업은 연희동182번지 일대 5만평정도의 대지에서 현재 85%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73.12.1(건설부 고시 제470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79.11.23 서울시 고시 제482호로 관리처분된 구역이며,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과소필지 2필지를 1필지 공동환지로 합병하여 건축법에 의한 적정규모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건설부 질의답변(건교부 건축 58070-2337 '95. 6. 7)에 의하면 공동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공동건축주 또는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단독으로 건축을 할 수는 없으며, 단지 건물이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할 때는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 아닌 범위 내에서 수리하는 수</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4회

質問議員	質問內容	答 辯 內 容
		밖에 없음. 주민의 고통을 생각하여 더욱 심층분석해서 법률상의 길을 찾아 좋은 방향으로 수용하겠음.

I. 本會議 運營



■ 제56회 임시회 제2차 ~ 제4차 본회의 ('97.12. 9 ~ 12.10)

質問議員	質問內容	答 辯 內 容
전성장의원	<p>■ 주민이 원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실시에 대하여</p> <p>■ 노인정에 운동기구를 보급할 계획은 ?</p> <p>■ 우리구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율에 대하여 ?</p>	<p>➔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른 주차수요와 주차지의 수요공급이 지역별로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지역확대실시 사항은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사항임.</p> <p>➔ 구청장 나름대로 구정덕목을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로, 신뢰성 있는 행정과 마음가짐 그리고 신뢰감을 주는 구청장이며, 두 번째는 인륜과 도덕이 뿌리내리는 행정구현임에 따라 어른들을 잘 모셔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생각임. 노인정의 좋은 환경조성 등을 비롯하여 노인분들을 잘 모시는 등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음.</p> <p>➔ 우리구 장애인은 총 2,076명으로 지체장애자가 1,481명, 시각장애자가 109명, 언어·청각장애자가 228명, 정신지체장애자가 258명임.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상시고용 종업원 300인 이상업체는 종업원의 2/100 이상을 의무 고용해야하며,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부담금부과를 제외함. 우리구 장애인 고용현황은 직원 총 1,460명 중 장애인은 16명으로 고용율은 1.74%이며, 채용방법은 서울시에서 일괄채용하여 각구별로 배치하였음.</p>
이석문의원	<p>■ 서화류 등 예술품관리에 대하여</p>	<p>➔ 구청장으로 지내 온 동안 가치 있는 기증품은 없었지만 그림 7점, 사진 1점을 별도로 관리하고, 문화체육회관의 무궁화 전도는</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6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 공무원 해외연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p>	<p>▶ 우물안개구식의 행정을 지양하고, 해외 선진국의 선진문물과 행정을 배워야 한다는 판단에, 그간 10여 회에 걸쳐 45명의 직원을 해외 견학을 시켰지만, 나라경제가 어려워지고 온 국민이 여행을 자제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직원의 해외여행도 자제하겠음.</p>	
<p>■ 전산실운용의 문제점과 전산계장 보임문제에 대하여</p>	<p>▶ 구청 4층에 있는 전산실은 주전산기 운영이나 통신망 설계, 행정전산망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자치행정력을 제고하며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전산기 1대를 비롯, 각종 주변기기 및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전산 결재시스템이나 체납프로관리를 운영하고 있으나, 문제점은 장소가 협소하여 장비의 추가 설치가 곤란하며 기계실과 사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어 소음과 전자파 등으로 직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청사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전산실을 확대하고, 사무실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실,국,과 및 동장도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고가로 매입한 전산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또한 구정업무의 전산화 증가에 따른 부족인력 확대 및 전산계장 보임제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겠음.</p>	
<p>이기봉의원</p>	<p>■ 관내 주차장설치 및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p>	<p>▶ 구청 주차장사용료는 "서대문구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 18조2항에 근거하여 받고 있음</p>

I. 本會議 運營



제56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며, 지적하신대로 연간 지출되는 유지비와 연간수입을 비교할 때 많은 적자를 내고 있지만, 이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받고 있는 것이지,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님. 그리고 구청지하를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하가 암반으로 되어있고, 하수관과 정화조가 매설되어 있어, 사실상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함.</p> <p>○ 우리구 공영주차장 : 총 10개소 388구획</p> <p>○ '97 주차장 확충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건립 : 3개동 130구획, 48억2천만원 - 부 지 확 보 : 2개동 60구획, 10억원(시비지원) <p>○ 주차장 부지선정. 확보의 문제점 : 고지대, 저소득층 거주지역은 진입로가 협소하고, 부지규모가 부적합하며 인근주민이 매연과 소음으로 거부</p> <p>○ 향후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부지선정위원회 구성 - 구의원, 관계공무원, 교통전문가 등 - 공공청사, 종교시설, 초등학교 등 주차장 개방 유도
	<p>■ 동사무소 소규모사업에 대하여</p>	<p>➔ 洞 소규모사업은 본래 보안등 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작됐던 사업이지만, 앞으로 각 동장이 도로파손 부분을 고친다든가 하는 등의 주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p>



제56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박덕균의원	<p>■ 파산 등에 의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청약권 부활에 대하여(보충질문 : 흥은동연합주택 조합원 490여명은 입주비의 90%를 납부했으나, 일부는 기 납부한 1억 내지 1억2,000만원 중 3,500만원 정도만 돌려주면 모든걸 포기하겠다는 각서와 공증을 조합에 제출하였음.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항규정을 보면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이 포기하려는 조합원들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기에 내집마련을 위해 다시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해, 구청장께서 주택은행에 이들의 주택청약권부활을 요청하여 달라는 것임.)</p>	<p>진하도록 독려하겠음. 그리고 1년에 보안등 1개에 4만원의 관리유지비를 지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지출이 아니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정도의 경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나, 재확인하여 관리유지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p>
	<p>■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개선방안은?</p>	<p>➔ 흥은3동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아직 파산 선고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으나, 만약 법원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조합원의 청약권이 회복될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음. (보충답변 : 서울시 주택당국과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재청약권을 줄 수 있다는 답변이 오면 노력하겠고, 부정적이면 다시 법률전문가와 검토하여 대책을 세우겠음.)</p> <p>➔ 대부분 어려운 영세계층에게 사용료나 변상금을 높은 비율로 부과하게 되었음은 딱</p>

I. 本會議 運營



제56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한 일이지만, 행정기관으로서 다른 도리가 없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도 어려움이 많으며, 대상자의 누락없는 조사와 일거에 균일한 조치를 못하는 행정상의 한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음. 재경원에 대부료의 요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이미 한 바 있지만, 기타사항(토지가액 산출율, 사용료 적용율, 분할납부연이자율, 연체이자율, 불하 시 편의 방안 등)도 재경원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음.
	■ 재물조사방법 개선책은 ?	➔ 과장, 동장의 보직이 바뀔 시에 하는 재물의 인수인계와 부서별 재물조사제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으나, 수 많은 재물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 사진첩을 만들어 정확한 재물관리 및 조사를 하는 등 앞으로 깊이 연구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음.
김종섭의원	■ 대현동121-25호옆 일명 “굴다리”에 대한 정비대책은 ?	➔ 굴다리에 있는 미화원 대기실은 금년 연말 안에 옮기고, 주변의 보안등을 비롯하여 제반사항을 살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으며, 철도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정비할 부분은 신촌 민자역사의 개발 또는 교외선 복선화 계획에 맞춰 철저히 정비하겠음.
	■ 대현동 관내 도로 및 보도정비공사 추진대책은 ?	➔ 우리구 관내 정비대상 도로 및 보도 현황은 총 61건으로 3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3년간에 걸쳐 완전히 정비할 것임. '97년도 사업으로 진행중인 대현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6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 대현동 주민생활의 최대 애로점의 하나인 어린이 보육 시설 계획은 ?</p>	<p>→ 대현동 관내 보육시설은 52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대복지어린이집과, 인근에 대신어린이집이 있고, 구립시설로서 '97년도에 증축되어 '98년도에 약4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인 창천어린이집이 있으나, 대현동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해결은 이대복지어린이집을 확장하여 구립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민간보육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주민의 보육수요 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p>	
<p>이성배의원 ■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서 서대문구의 건축경제 운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보</p>	<p>→ 경제운영 및 구정수행에 있어 건축경제운영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시성을 버리고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는 선에서</p>	

I. 本會議 運營

제56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충질문 : 신사복 한벌 구입하면 5년에서 10년동안을 입는데, 일용직의 옷을 매년 만들어 주어야 하는가 ?)</p>	<p>조정하겠음. 수정예산을 먼저 제출하여 예산을 조정하자는 의견은 지금으로선 시적으로 적절치 않고, 수정예산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자치단체는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 한두군데에 불과하며, 나머지 자치단체에선 예결위를 통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음. 우리구는 이러한 절차속에서도 '97년도 예산 중에서 금년 연말까지 30억 가까이 줄여 절약집행해 가지고, '98년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였음. 동직원 및 청소원의 피복비를 아껴서 얻는 효과와 다소 낡은 옷을 입고 구민을 맞이함으로 잃어 버리는 등의 득실을 비교하는 사항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보충답변 : 인사이동으로 창구직원들이 자주 바뀜에 따라, 체격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힐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옷이 맞다 할지라도, 가격이 약6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쉽게 낡아지는 옷으로, 옛날 보리고개 시절에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얘기지만, 지금은 낡은 옷을 더구나 남의 옷을 입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과 전국 친절 1위인 우리구로서 다른 구에 비해 다소 부담을 안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 사항은 구청장에게 맡겨 주시기를 바라고, 1회성 물품 등은 철저히 아끼도록 하겠음.)</p>	
<p>■ 건축경제운영의 일환으로 방대한 인원을 줄일 계획은</p>	<p>➡ 상용직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하셨으나,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472명에서</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6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없는가? (보충질문 : 자료를 보면 정원은 1,450명으로, 이중 일용.상용인부는 500명이 넘는데, '97.12. 1 받은 자료에는 일.상용인부가 총443명으로, 청소과 일.상용인부가 344명이며, 여재 받은 자료에는 일용인부가 70명, 상용인부가 95명, 부구청장실 국장실 7명, 총 182명으로 청소과 인원은 없는데, 이들은 과연 어디에 속하며, 자료 중 어는 현황이 정확한 것인가?)</p>	<p>443명으로 오히려 29명이 감소되었고, 일용직의 경우에도 105명에서 90명으로 15명이 감축되었으며, 환경미화원도 30명이 줄었음. 앞으로도 자리가 비면 충원하지 않고 감축하여 나가겠음.</p> <p>(보충답변 : 일용직은 특별사안이 있을 때 마다 고용하기 때문에, 이는 인력차원이라기 보다는 예산차원의 관리이며, 환경미화원과 기타 일용직, 상용직은 별도로 자료화하지 않아 차이가 있었던 같음. 환경미화원은 현재 344명이고, 일용인부와 상용인부는 182명으로 모두 526명임. 이중 환경미화원이 '97년도에 30명, 기타 일.상용직 17명으로 총 47명이 감축하였음.)</p>	
<p>■ 투자사업의 기준에 대하여</p>	<p>➔ 중기투자사업계획에 들어 있지도 않은 것이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고, 또한 들어 있던 사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중장기계획은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 보아 차질없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이나,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주민의 요구, 반발, 자원축소, 확대 등으로 계획이 수정 변경됨에 따라 완벽한 계획이 못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주시면 수렴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음.</p>	

I. 本會議 運營

제56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이진수의원	<p>■ 홍제3,4재개발구역의 '94년도 공시지가 산정의 부적법성에 따른 국.공유지 불하가격의 과다책정에 대하여 (보충질문 :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선행되는 법인데, 구청쪽에 유리한 법은 다 인용하고 재개발조합원에게 유리한 조항은 빼고서 시행함. 구청장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적법성을 신중히 검토하셨다 하셨는데 언제쯤 하실건지?)</p>	<p>➡ 이미 행정행위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이것의 적법여부를 당장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며, 설령 부적법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절차상 신중히 해야 할 부분이라 사료되어 우리구의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같이 합세하고, 자문변호사, 법률전문가, 조합측, 그리고 공무원들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 적법여부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려고 하며, 만약 검토결과가 적법하지 않다 할 때는 그에 맞춰서 제가 적절한 조치를 과감하게 취하겠습니다.(보충답변 : 서울시나 감사원의 감사를 이미 마쳤고, 저희들은 공시지가 산정의 법률적용이 옳게 되었다고 보나, 금번 임시회가 폐회되는 대로 다시 한번 공개적인 확인작업을 실시하여 누구나 납득이 가도록 하겠고, 그래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조치하겠습니다.)</p>
홍성덕의원	<p>■ 맨홀설치 부실공사에 대하여</p>	<p>➡ 지적하신 사항은 차량통행에 의한 맨홀뚜껑주변이 파손된 사항으로 즉시 재시공하였으며, 앞으로는 설치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시공토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맨홀뚜껑 표면부식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철재 맨홀을 재사용함에 따른 것으로 강도에는 지장이 없음. 맨홀설치시 인버터설치로 준설작업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맨홀내 퇴적물이 쌓여 악취가 나고 맨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정화조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여 분뇨를 직투입할 뿐 아니라, 하수도 관로준설보다는 배수분구별</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6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 공사발주금액의 무리한 삭감문제에 대하여(보충질문 : 10%도 아닌 50% 또는 1/3까지 삭감한 것은 탁상행정 결과 아닌가?)</p>	<p>→ 확인한 바, 공사금액 5,000만원 정도가 축소된 것은 환경축소와 업자변경에 따라 발생한 일이며, 안이한 방법으로 설계 또는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음.(보충답변 : 하수시설물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설계과정에서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환경을 변경함에 따라 공사금액이 감액된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하수도공사를 안전하고 정밀하게 시공하여 하자가 없도록 하겠음)</p>	
<p>권재일의원 ■ 남가좌동 152번지 하천부지상의 열악한 주택여건을 언제까지 이대로 둘것인가 ?</p>	<p>→ 구민입장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겠다는 저의 생각에는 추후도 소홀함이 없고 소홀한 일도 없으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주민이다 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겠고, 말씀하신 지역은 상가들이 많은 관계로 주민들의 합의가 되지 않아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재개발 또는 재건축은 주민의 합의 없이 구청장이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남가좌동 152번지는 시유지가 500여평의 매우 협소한 구역으로 5평에서 8평의</p>	

I. 本會議 運營

제56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 남가좌동 262번지 이주민 무허가밀집촌은 주민자력으로 재개발추진이 어려운 지역인데, 앞으로 계획은 ?</p>	<p>➡ 이 지역은 모래내시장 200m 지점에 있는 남가좌 260번지 남가좌제8구역으로 지구지정하여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주변에 상가들이 많아 주민합의가 안되어 추진이 안되고 있음. 구청장이 노력을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추진되는 일로서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림.</p>	
<p>김종철의원</p>	<p>■ 국가경제의 파산위기에 대비하여 '98년도 예산안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보충질문 : 우리구는 어떻게 절감하여 저축할 것인가?)</p>	<p>➡ 70년대에 제가 14년 동안 경제재건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뛰며 눈물도 흘려 보았기 때문에, 국가경제위기에 대해 의원님 못지 않게 가슴이 아픈 심정임으로 떠들썩한 전시효과로 예산을 아끼겠다 하는 그런 피상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스스로에게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 최대한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함. 이미 서울시로부터 26억원의 예산이 감축된 상황으로 예산안을 의회에 송부하여 드렸으니까, 적절히 심의 토의해서 절감시키는 쪽이 현실적으로 옳지 않겠는가 생각함.(보충질문 : 예산절감은 구의회에서 편성해 주는 예산을 '98년 년초에 저</p>



제56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회들이 일반경상비 및 해외경비, 유류비, 기타 모든 경비를 감안한 절약대책을 수립하여 절약할 것을 약속드리고, '97년의 경우에도 재료비라든지 일반업무비 등에서 약 10 ~ 20%를 절감하여 전체 25억원을 절감한 바 있음. 재정문제에 있어 일반경제처럼 삭감하고 저축하는데 적극 매진하였으며, 저축으로 경영투자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경영투자사업 또는 다른 예비사항에 지출할 것이며, 이를 위해 '98년도에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의회에 제출하고 있음.</p>
<p>■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 소규모사업의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p>	<p>➔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에 의해 공사금액은 5,000만원이하, 물품구매액은 2,000만원 이하에 대해 수의계약을 함.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일반공개경쟁입찰시에 행정적 낭비와 부실업체가 선정될 우려있을 때 한해서 억제하며 수의계약을 하고 있음.</p>	
		<p>현재도 수의계약시는 발주부서가 잘못된 일이 없나, 예산낭비는 아닌가 그런 우려에서 회계부서에서는 물가정보지를 참고하여 비교하고, 실세, 거래관계를 비교 검토해서 회계업무를 강화하고 있음.</p>
<p>■ 창천동 100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에 대하여</p>	<p>➔ 우리관내 풍치지구 현황은 총 50만평 중 학교교점유지가 27만평, 주거지역이 17만평, 공원이 7만평이고, 창천동 100번지는 11.932평임. 풍치지구를 서울시나 우리구에서는 건축규제를 완화 쪽으로 변경하는 내</p>	

I. 本會議 運管

제56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용과 용도지역을 일정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배분할 수 있음. 일정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소위 풍치지구 해제라 하고, 나머지는 풍치지구 건축규제 완화라고 일컬음. 용도지역 조정 즉 일정일반주거지역으로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당초 풍치지구 건폐율 30%에서 60%로 조정이 되는 것이고, 층고는 3층에서 4층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며, 용적율은 90%에서 200%로 변경되는 사항임. 창천동 100번지 일대 약 11,932평은 저회구에서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97.9.12부터 9.26 일 까지 공람공고를 했으며, '97.11.7 구 도시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고, '97.11.21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였음. 서울시에서는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상임기획단 등에서 검토 중에 있음. 검토가 완료되면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내년 4월경쯤 결과가 나올 것이나, 우리구에서는 풍치지구해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서 주민의 뜻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력투구하겠음.</p>
강석준의원	<p>■ 재활용센터의 규모와 취급 물품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p>	<p>➔ 생활쓰레기 재활용 문제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내년에는 재활용센터를 150평 정도로 증축하여 재활용센터를 확대운영할 계획임.</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6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 대 구민 장례서비스를 위하여 장례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계획은 없는지 ?</p>	<p>➔ 장례식장은 잔치나 결혼예식장과는 다르게 비록 깨끗한 음식일지라도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거부감이 생기는 만큼, 그 곳에서 사용되는 물건과 음식들은 정결하고 식에 맞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항은 깊이 생각할 문제임. 지금까지 우리구청과 동에서 천막과 접의자, 병풍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를 하겠음. 옛 날과 달리 요즘 장례는 가정에서 보다는 주로 병원에서 치루고 있는데, 우리구도 강남 삼성병원과 같은 장례장을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땅이 충분하지 않아 필경 장례식장이 주택가에 인접하게 됨에 따른 우리 주민의 정서상의 문제 등 형편들을 종합분석하여 연구하여야 할 문제라 생각함.</p>	
<p>■ 의사당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충질문 : 문화체육회관및 홍은3동 주차장부지를 뒤쪽으로 더 확보하여 추진함이 어떨가 ?)</p>	<p>➔ '96.12.24일 제47회 제7차 본회의에서 홍은동 산26-151, 대지 약 1,000평을 매입하여 의회 의사당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심에 따라, 매입을 위하여 '97.5.8 방침을 정하고 지난 7.30 '97년도 1차 추경예산에 30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 예산을 가지고 땅 소유주와 수차에 걸쳐 가격협상을 하였으나, 땅 소유주는 42억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되고, 지난 10월 19일자로 땅 매각에 대한 의사</p>	

I. 本會議 運營



제56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를 완전히 철회한다는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 땅을 매입할 수 없는 실정이며, 대처방안은 2가지로서, 한가지 방법은 다른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과 또한 가지는 보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현청사 전체를 의회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첫번째 방법은 그간 관내의 모든 땅을 여러방법을 통하여 대상부지를 물색한 결과, 현재로선 홍은동 265-439의 3필지 약1,100평의 땅이 있지만, 구청으로선 공인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으로 매입해야 하는 입장으로 땅 소유주들이 그 가격에 팔려고 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으며, 두 번째 방법인 보건소 이전안은 현재 홍은동 271-2에 7필지 약358평의 땅 여기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방안과 구청 앞 연회3동 파출소 부분을 개축하여 이전하는 방안, 그리고 은평수도사업소 청사를 활용한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성숙된 의정활동에 걸맞는 의회청사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보충답변 : 홍은동 271-2의 7필지는 의회를 짓기에 부족하여 주변 땅을 매입하려 하여도 감정가에 의해 협상해야 하는 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니, 그 곳에 보건소를 짓고, 지금 현 청사 전체를 의회에서 사용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겠음.)</p>
기창표의원	<p>■ 도시계획지구의 진행 세부 계획은 ?</p>	<p>➡ 상세구역으로 지정되면 계획수립 시까지는 건축이 제한되는 관계로 일부 주민의 불</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6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편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서서울TV와 협의하는 등, 먼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연구 노력 하겠으며, 홍제,가좌,아현,천연의 4개구역 8,500여평이 상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홍제지구는 상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3개구역은 '98년도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5억 9,000만원 정도를 의원님들이 심의하고 계신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놓았음.</p>
정일출의원	<p>■ 문화회관 운영의 문제점과 민간위탁할 계획은 ?</p>	<p>➔ 세종문화회관 근무시의 경험으로 보아 문화예술영역에 대한 전문기술과 능력을 가진 용역회사에 위탁한다는 문제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 문화회관의 대,소회의실을 주로 구청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료와 연관관계 등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적극 검토하여 문화체육회관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서면답변 : 민간위탁방안은 이미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유익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결정하겠음.</p>
	<p>■ 청소행정을 일대 변화시킬 용의는 ?</p>	<p>➔ 쓰레기소각장 설립에 있어서 종전에 서울시에서는 1구 1소각장을 원칙으로 추진하였는데,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하고 전체적으로 건립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이제는 인접구와 묶는 방법으로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우리구는 몇 개구와 내용적으로</p>

I. 本會議 運營



제56회

質問議員	質 問 內 容	答 辯 內 容
		<p>대화를 하고 있으나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구에는 소각장을 세울만한 곳이 없어 쓰레기소각비가 다소 인상되더라도 역시 인접구와 협의해서 소각장을 인접구에 세워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청소행정을 100% 민영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도적인 입장에서 시간을 두고 미화원을 점점 감축하는 것과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조합하여 시기적으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100% 민영화해야 된다고 생각함. 사실 구에서 하는 청소가 예산은 많이 들지만 민영화 쪽 보다는 서비스면에서는 낫지 않는가 생각함.</p>
	<p>■ 자치시대 감사제도의 발전적 방향제시는?</p>	<p>➔ 지금까지의 감사업무는 공직사회의 부정 부패를 방지하고 처벌위주의 소극적이고 틀에 매인 감사기능만을 유지하였으나, 사회구조가 복잡, 다양해지고 고도화된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기존의 감사에도 경영기법 도입한 효율적인 감사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고소득수준에 맞는 생활문화 환경의 조성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 보다 강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앞으로의 감사기능은 지역경제의 회복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문화환경 창출 등 현장위주, 구민위주로 전환하여야함. 앞으로는 자치단체의 인.허가 업무 중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제반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상시 감사를 확대 운영하여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행정을 지원하며, 대형 공사장 기</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6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동점검반을 활성화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야간 순찰 등 구정 기동처리반을 활성화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며, 구정의 시책과 방침이 정확히 침투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는 등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각종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소신있는 업무추진 등으로 인한 과오는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과감하게 관용을 베풀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할 것임.</p>
허준구의원	■ 예산절감 및 행정간소화에 대하여	<p>→ '98년도 우리구 예산(안)은 건축재정운용 기조하에 일반회계의 경우(1,189억원) 경상비 71.7%(853억원), 투자비 28.3%(336억원)로 편성하여 '97년 경상비 75.9% 보다 4.2% 감소한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함. '97년의 경우 예산절감계획을 수립, 일반회계 예산 1,039억원 중 일반수용비, 재료비 등은 10%, 일반업무추진비는 20% 정도 절감하고 일용인부임 등 3개 비목은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절감토록하여 총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음. '98년도에는 경제살리기종합재정대책을 마련하여 불요불급한 해외여행 억제, 전기, 유류 등 에너지절약과 각종 의례적인 행사경비 등 경상비를 대폭 절감하고, 투자사업의 경우도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중기재정계획 연동계획을 수립, 사업의 타당성 및 공정분석</p>

I. 本會議 運營



제56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김정현의원 ■ 청소행정에 대하여	<p>➔ '97년도 예산은 세입(규격봉투 판매대금) 20억원, 세출예산은 173억원으로 자치구 청소재정자립도가 11.5%이며,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인원현황은 청소과 직원 20명, 운전원 88명, 환경미화원 345명으로 총 453명이며, 청소장비 현황은 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이 42대(김포수송차량11, 쓰레기수집차량 31), 가로청소차가 5대, 재활용수집차량이 22대, 살수차 3대, 로우더 1대, 순찰차 1대로 총 74대이고, 압축기가 3대 있으며, 시설물 현황은 공중화장실이 61개소(고정식 12, 이동식 49)이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25개소, 청소차량 차고 1개소, 쓰레기 적환장 3개소(직영1, 대행2) 재활용집하장이 1개소임.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적자로 청소행정의 합리화 방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p> <p>첫째, 직영으로 운영중인 청소업무를 청소대행업체에 년차적으로 확대운영하는 방안으로,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자연감축으로 유도하고 년차적으로 청소대행업체에 지역을 확대운영케 하며,</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6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둘째, 종량제규격봉투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세수증대와 쓰레기감량화를 유도하고,</p> <p>셋째, 우리구 차고가 '98.3월중 직영적환장 이전과 함께 이전이 불가피하여 능동적인 대체와 예산절감의 효과를 위하여 쓰레기 압축 및 수송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처리 하고자함. 예산절감의 효과는 차량8대, 압축기 3대와 작업인원 16명의 감축 등으로 약 298백만원의 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청소행정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주부환경봉사단, 노인회, 부녀회 등 각종 직능단체와 공동으로 쓰레기줄이기 범주민운동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생활환경오염방지과 청소분야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아울러 '97.8.10에는 대신동, 북아현2동, 연희1동, 홍제1동 일부를 청소대행업체에 이관하였으며, '97.8.1에는 가로환경미화원 10명을 줄여서 늘어나는 재활용수집에 투입하였고, '97.11.28에는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을 22% 인상한 바 있음.</p>
<p>■ 440번 순환버스 관리 및 교통시설물에 대하여</p>	<p>▶ 440번 순환버스 인.허가는 서울시 교통관리실 소관업무이며, 관내 차고지와 운행차량 현황은 현대교통(대표 김창규, 홍은동 405-1) 8대, 서부운수(대표 김진형회 1, 북가좌동 323-1) 2대, 북부운수(대표 박희서, 중랑구 면목동 378 - 3) 2대임. 향후 관리계획은 기존 인가대수에 비해 차고지가 부족한 현대</p>	

I. 本會議 運營



제56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교통, 서부운수에 대하여 차고지 확보 안내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으며, 북부운수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중랑구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겠음.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 제58회 임시회 제3차 ~ 제5차 본회의 ('98. 3.19 ~ 3.21)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전성장의원	<p>■ 실효성없는 사업에 대한 책 임소재 및 대책은 ?</p>	<p>➔ '96년도부터 재정관리기본제도 운영에서 예산편성전에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하여, 예산을 반영하며 계상되었다 할지라도 집행전에 투자사업이 적기에 효율성있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사업과 구입물품의 비효율성 방지를 위하여 분기별 투자심사보고회와 물품 및 공사의 행정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사전제도장치로 구청에서 예산편성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과학적인 예산편성 등을 확인하면서 사후로 감사체제를 강구해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93년도 자전거 구입과 '96년도 소화전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효율성 증대 방향이 없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담당자를 엄중히 문책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고, 그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효과증진에 노력하겠음. 모든 투자사업에 대하여 행정실명제를 도입하여 담당자, 사업목적 등을 나타내서 주민이 지적하고 목적대로 집행되는지 등 사후 관리실태 등을 살필수 있게 함으로 사경제 보다 더욱 실효성 있고 효율성 있게 집행하겠음.</p>
	<p>■ 보건소의 무료한방진료 횟 수를 늘릴 계획은 ?</p>	<p>➔ 무료한방진료를 1월과 2월, 8월, 1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월2회 실시하고 있으며, '97년도 서대문구 한의사회 소속 개업의 57명 중에서 42명으로부터 자원봉사를 받아</p>

I. 本會議 運營

제58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총14회에 걸쳐 904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이에 필요한 의료소모품비는 우리구예산 2,784,000원으로 충당하였음. 진료횟수를 늘리는 사항은 한의사들의 병원환자진료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이 있어, 우리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실을 한방진료실로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넓은 장소를 확보함으로써 많은 환자를 동시에 진료할 수 있도록 대처할 계획임.</p>
	<p>■ 증가하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를 50% 할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p>	<p>➔ 관내 65세 이상 노인은 약 2만명으로 이분들께는 분기별 3만원씩의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는 월 2만원의 이.미용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 2,153명으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는 생계비, 자녀교육비와 보장구를 지급하고 있고, 자립자금대여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p>
이기봉의원	<p>■ 청소행정의 민간 위탁 제의에 대한 의견은 ?</p>	<p>➔ 청소에 따른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감하는 바이나, 청소행정 전체를 일시에 민간위탁할 경우, 현재의 미화원을 노사의 협조없이 일방적으로 내몰게 되는 등의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러한 부작용 없이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22개동 중 천연동, 대신동 등 7개동은 이미 전량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는 5개동을 추가로 민간위탁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8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 북아현동 공영주차장 공사 지연에 대하여</p>	<p>➡ 북아현1동 915번지 250㎡(76평)의 대지에 자주식 평면노상주차장을 22구획을 설치토록 계획되었는데, 한전측에서 서대문구와 마포구가 발전함에 따라 전력수요가 부족하여 그 자리에 전력구를 설치할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우리구에 도로점용을 요청하면서 평면주차장은 자기들의 자비로 설치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와 작년말까지 도로점용을 허가를 했는데, 2호선 지하철이 그 곳 땅속을 통과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년 6월까지 점용기간을 연장하였고,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음으로 6월 까지만 참아 주시면 쾌적한 환경과 주차장이 조성될 것임.</p>	
<p>■ 적십자회비의 수납방법 개선대책은 ?</p>	<p>➡ 적십자회비는 국민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는 뜻에서 모금하는 성금으로 모금절차와 방법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고 형평성에 맞고 사후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겠기에 '97년도에 연희3동을 자율납부동으로 선정하여 모금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천연동, 북아현2동 등 7개동을 자율납부동으로 선정하여 '98.8.16부터 9.30까지 모금할 계획임. 저희구 모금액은 27,000만원으로 전액을 적십자사 본부에 송금하면 적십자사에서 0.5%의 수수료를 저희구에 지불함.</p>	

I. 本會議 運營

제58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박덕균의원	<p>■ 중앙정치권에 대한 민의 전달 방법에 대하여</p>	<p>➔ 구청장이 정치인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출되었지만, 행정인으로서 철저히 행정적인 차원에서 법규에 따라 구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지방자치가 후퇴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음.</p>
	<p>■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p>	<p>➔ '71년도에 그린벨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구면적의 10%인 약1.8km²의 홍은1,2동과 홍제3,4동 지역으로 건물 384동, 565가구가 그린벨트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사항은 정부차원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구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정부에서 해제지침이 내려오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 겠음.</p>
	<p>■ 시내버스 89, 161번의 운행중 지에 따른 대책은 ?</p>	<p>➔ 삼화상운이라는 회사가 문화촌에서 성북구 월계동까지 161번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이회사가 '95년 7월부터 적자노선이다 하여 무단 폐쇄하였고, 범진여객이 사당동에서 문화촌을 경유하는 89번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금년 1월 21일에 운전수들이 노사분규를 일으켜 운행은 거의 못하고 있어, 지역 주민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나, 우리구에서 이 사항을 해결하는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음. 161번 버스 사무실이 노원구에 있고 89번 버스 사무실은 동작구에 있어, 우리구에서는 이미 시와 관계구에 양 회사의 문제를 제기하여 노원구에서는 삼화상운에 18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8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동작구도 89번에 과징금 100만원, 270만원을 부과했음. 성진특수교통을 통하여 마을버스를 운행토록 하고 있으며, 유원하나아파트에서 유진상가쪽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 관할 경찰서와公安협의회도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음.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점들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음.</p>
최광진의원	<p>■ 일률적인 예산절감은 일면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p>	<p>➔ IMF사태로 인하여 올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위축될 전망에 있어 각종 세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낭비요인을 버리고 과감한 절약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며, 절감형태는 일률적인 절감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등의 경상비 분야를 절감할 것이며, 사회복지 분야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분야는 절감대상에서 제외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고용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투자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p>
	<p>■ '98년도 사업계획현황 및 발주건수와 미발주건수는 어떻게 되며 미발주 사유는 무엇인가 ?</p>	<p>➔ '98년도 건설사업 투자계획은 총59건으로 174억 4,400여 만원정도임. 이 중 구비사업이 46건 111억 3,500만원 정도되고 시비사업은 13건 63억 1,400만원 정도 됨. '98.3월 현재 총54건에 154억 4,183만원 정도가 발</p>

I. 本會議 運營

제58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주를 완료하였고 5건 20억 800만원이 미발주 상태로서 세부내역은 먼저 15억원을 투자하여 폭12m, 길이 500m를 개설하는 안산순환도로의 시비사업공사로 설계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나 예산배정이 지연되고 있어 3월 20까지 예산배정을 요청하여 3월 말경에 발주가 되겠음.</p> <p>다음은 홍은3동 315번지 도로정비공사로 도로확장구간이 급경사로 옹벽 등 구조물의 시공검토 관계로 지연되고 있지만, 3월 말까지 발주토록 추진하겠음. 다음은 성산음은 공원녹지 분야가 2건으로 마을마당 조성사업인데, 시에서 용역설계 중으로 7월경에 발주될 것으로 추측됨. 다음은 안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임. 현재 판단으로는 '98. 7월중 발주가 될것으로 보고 있음. 계약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해서 기한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겠으며, 저회에게 부여된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음.</p>
김정현의원	<p>■ 연희동 444, 187, 188번지 일대 풍치지구를 해제할 용의는?</p>	<p>➔ 우리구 풍치지구는 총 1,649,711m²로 '97.7.11 서울시에서 시달된 풍치지구 조정 기준에 따라 연희동 433-44일대(920m²)와 창천동 100번지 일대(42,752m²), 천연동 120번지 일대(531m²) 등 3개 지역은 풍치지구 해제, 연희동 444번지, 187번지, 188번</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8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지 등 12개 지역(182,807m²)은 풍치지구 건축규제 완화대상(건폐율 30%→40%, 층고 3층→4층, 용적을 90%→160%)으로 판단되어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97.11.21 서울시에 결정요청하였으나, '98.3.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의 검토결과, 우리구 요청 지역인 총15개 지역 중 창천동 100번지 일대 42,752m²(풍치지구해제), 천연동 120번지 일대 531m²(풍치지구해제), 연희동 433 일대 920m²(풍치지구해제), 연희동 149번지 일대 7,040m²(풍치지구완화), 연희동 6-59 일대 5,658m²(풍치지구로 보도 정비공사인데, 시의 억제지침에 따라 '98년도 사업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다구완화), 연희동 6-19 일대 5,203m²(풍치지구완화), 연희동 195번지 일대 7,390m²(풍치지구완화), 연희동 339번지 일대 13,453m²(풍치지구완화), 연희동 93-16 일대 2,263m²(풍치지구완화) 9개 지역은 반영되어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풍치지구 관리기준에 부적합하여 재검토 지시된 6개지역 중 의원님의 요구지역도 포함되어 있음. 연희동 69번지 일대 23,143m², 연희동 200번지 일대 12,430m², 연희동 188번지 일대 13,000m², 연희동 444번지 일대 28,200m², 북아현동 1번지 일대 46,000m², 연희동 141-34 일대 19,027m² 6개지역에 대하여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98.4월 중 서울시로 재결정요청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임.</p>

I. 本會議 運營



제58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 연희동 446, 413번지 일대의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p>	<p>➔ 전용주거지역은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을 규제하고 있음. 우리 구 관내 전용주거지역은 총340,000m²로 전용주거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 '95년부터 '97년까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합동으로 연희동 일대의 전용주거지역 해제를 검토한 바, 상업활동이 활발하고 통과 교통이 많아 전용주거지역 지정 목적인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가 어려운 지역으로 검토된, 연희동 사리가슈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완료되었으며, 연희동 446번지, 413번지 일대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어 전용주거지역으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해제는 곤란한 실정임.</p>	
<p>이성배의원</p>	<p>■ '98년도 예산절감과 실천내용 및 '98년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p>	<p>➔ 한달여 사이에 60억 정도의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구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10% 내지 30%을 절감하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음. 서울시로부터 저희 예산이 70억정도 줄어들 걸로 보며, 예산절감과 관련한 구조조정 문제는 현재 자체진단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 지침도 고려하여 조정할 계획임.</p>
<p>■ 노점상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p>	<p>➔ 현재 약300여개의 노점상이 있는데, IMF 사태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주민의 쾌적한 환경과 거리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기</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8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때문에 구청에선 기동반과 취약지에 초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근무자들이 임무수행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면도 있고, 이면도로의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생계와 직결된 측면을 고려하여 시에서 단속완화정책을 펴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앞으로 노점상의 경제적인 측면과 노점상의 마음가짐, 그리고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는 주민들로 인하여 일시에 처리될 사항이 아닌 복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일대 간선도로변 면적 42,607m²는 서울시 고시 제 392호('97.12.8)로 전용주거지역에서 일여 효율적이고 탄력성 있게 관리처리하겠으며, 유진상가, 흥제지하철, 영천시장, 모래내시장 주변의 노점상에 의한 통행불편사항에 대해선 강도있게 조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p>
조재구의원	<p>■ 재해대책에 관한 중장기계획과 도시가스, LPG 시설문제 및 동절기 제설작업 특별대책은 ?</p>	<p>➔ 우리구에 도시가스시설은 총153개 중 LP가스가 15개 즉 충전소가 1개소가 있고, 판매소가 14개, 도시가스시설은 98개임. 지역정압기가 19개, 전용정압기가 79개, 고압가스 저장소가 1개소, 시민아파트 및 지하업소가 1,732개소가 있음. LP가스와 고압가스는 구청과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에 연3회 반복 점검하고 있고, 도시가스시설과 지역정압기는 도시가스시설업체에서 매주 1회이상 점검하고</p>

I. 本會議 運營



제58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특정점검 정압기는 월1회 이상 구청과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음. 시민아파트에 대해선 연2회 구청에서 안전요원을 확보하여 점검하고 있음. 안전관리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가스공급에 대한 교육을 연3회 이상 실시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유선방송, 지역신문, 서서울케이블 TV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음. 가스사고 상황실을 구청 지역경제과와 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음. '97년도에 1,770건을 점검, 68건을 적발하여 경고 2건, 현지지정 15건, 시정지시 51건으로 조치하였음.</p>
<p>■ 동별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특별대책은 ?</p>	<p>➔ 관내 소년소녀가장보호세대는 23세대 34명임. 지원내용은 학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비, 부교재비, 영양급식비, 의약품비, 이.미용비, 운동화비, 효정신 함양비 등 연간 1인당 중학생은 834,000원과 거택보호자는 생계비, 학비 전액이 국.시비로 지원됨. 구청에서는 지원기준외 별도 예산을 조치하는 건 없고, 자매결연 사업을 활성화시켜 1세대당 평균 2 -3 명 정도의 후원자를 연결하여 월 평균 19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으며, 정부 및 민간 지원금이 중학생 1인당 월 38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음.</p>	
<p>■ 관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방안과 대량 정리해고에 따른 취업알선 대책은 ?</p>	<p>➔ 관내에 110개의 중소기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자금 융자로서 업체당 이자 연 8%로 2억원 까지 융자해 주고,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p>	

제58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지원을 위해 서대문구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을 시카고에 설치하여 '96. 6.25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금성공업사 외에 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서남아지역에 자기상품 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에 힘쓰고 자함. IMF 한파로 물건을 만들어 놓고도 판매가 안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지난 6월에 우리 문화체육회관 지하 1층에서 중소기업제품 베품시장을 운영한 바 있음. 앞으로 분기별 한번 정도 운영하여 좋은 제품을 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함. 실직에 대한 대출을 위해 몇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위탁교육을 금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음. 특히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대종합복지관이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주부교육을 위해서 160명 정도 여러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실직자를 위해서 취로사업도 확대 시행하고 있음. 당초에는 예산이 6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시에서 4억원이 추가 지원되어 연간 6만명을 고용할 계획임. 그리고 신규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생업자금을 1,200만원 내지 2,500만원까지 용자를 해주는데 연리 8%며,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임. 구청의 정보센타를 기왕에 운영해 오</p>

I. 本會議 運營

제58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정혜연의원	<p>■ 연희제3차력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 위한 대책은 ?</p>	<p>고 있지만 더욱 활성화시키고, 또 금년 3월에 충청로동사무소 2층에 장소를 마련하여 실직자들이 와서 쉬기도하고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도록 오투기쉽터라는 사무실을 개설하였음. 소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실시하고, 또 상담도 실시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음.</p>
		<p>➡ 건축물 및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은 주민 스스로 시행하고 관공시설은 행정청이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재개발사업으로서 1979년 11월 23일에 관리처분계획이 스로 하고 있는 건물개량은 총339필지에서 275필지가 개량 완료되었으며, 68필지가 미개량되어 있는 상태임. 문제점은 총380동 중에서 90동이 개량이 안돼 가지고 개량한 사람과 개량하지 않는 사람의 이중선이 발생한 것이 127필지고, 도로를 침범한 것이 12필지가 있으며, 90평방미터 이하, 즉 27평 이하의 과소토지가 발생한 것이 6필지가 있고, 녹지를 침범한 게 20필지가 있음. 이런 문제로 현재 준공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 개량완료한 주민들이 분양지 소유권,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조속하게 환지 확정처분을 바라고 있음. 이를 해결키 위해 구청에서는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 12월24일 환지확정처분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제58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중으로 과업기간이 금년말까지고, 현재는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용역을 하는 목적은 연희3자력재개발사업지구확정 처분을 위한 제반작업으로, 이 과업을 완수해서 성과를 제출을 받을 목록을 보면 종전 토지원부라든가 소유자들 기본조서, 신,구 지번대조서, 환지확정조서, 환지확정설명서, 환지확정재정서 환지확정에 필요한 12가지를 제출받게 되고, 용역성과가 나오게 되면 환지확정을 위해 제반절차가 진행되겠음. 이중선 등은 환지계획대로 상호 협의 처리할 것이고, 도로 점유부분의 필지는 분할해서 환지확정의 점용료를 부과 처리한 다든가 미개발건물에 대해선 수시로 개량인가 난 이래 지금까지 19년째 진행되고 있음. 현재 진도를 보면 공공시설은 시설녹지조성과 도로공사가 완료돼 있고, 주민이 스측구공문을 발송해서 개량을 수시로 독려 하겠으며, 보류지에 포함된 필지는 보류지 매각으로 개량을 촉구하는 등 처리대책은 일부 서 있지만 용역성과에 의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처리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노력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음.</p>
	<p>■ 연희제2동 홍연아파트 23개 동 등기필을 위한 대책은 ?</p>	<p>▶ 연희3지구 자력재개발지역은 토지구획정리법에 의한 환지지구로서 일부만을 따로 부분 준공 및 부분등기를 할 수 없고, 전체를 대상으로 준공을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p>

I. 本會議 運營



제58회

質問議員	質 問 內 容	答 辯 內 容
		<p>임에 따라 흥연아파트(24개동 400세대)만 따로 준공할 수 없으며, 자력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주민들의 경제사정 등으로 미개발한 곳이 64필지가 있고, 환지 예정선을 침범한 대지가 128필지가 있어 환지확정처분이 불가능함에 따라 준공이 지연됨. 미준공으로 재산권행사의 지장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7.12.24일자로 환지확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99년까지 추가예산을 확보, 확정측량 및 지적부 등기, 토지 대장을 작성하여 조속히 재개발을 완결하여 재산권행사의 조기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p>
기창표의원	<p>■ IMF 이후 자체 대비책은 ? ➡</p>	<p>구청에서는 IMF 구제금융 신청이후,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수입은 줄었으나, 물가가 오르는 등 주민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 내핍과 절약하는 생활 자세가 요구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구에서도 현재 제7회 신촌문화축제 개최를 잠정적으로 유보 결정, 직원 하계휴양소 제도의 폐지, 직원생일 또는 자녀 졸업, 입학 축하 선물 폐지 등 초긴축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음. 낱알이 늘어나는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총정로 청사에 오투기 컴퓨터를 개최한 바 있으며, 무료 창업스쿨강좌를 개최하고 구민 알뜰장 등 직거래시설을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 등 다방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환차손에 대한 대처방안은 ?</p>	<p>▶ 고물가대책에 대해서는 당초 '98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대략 물가인상률을 3%내지 4%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IMF사태 이후 현재는 9%를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소폭으로 더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우리구에서는 고통분담차원에서 소비성경비는 더욱 절감하고 있으며, 투자사업비라 하더라도 세입결손에 대비 해서 당초 예산기조에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상사업비를 축소조정하는 실행 예산을 현재 편성하고 있고, 단,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실행함. 고금리 환차손에 따른 경우는 우리구 재정이 현재 수입면에서 볼 때 차관이라든지 지방채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 직접적인 재원의 추가부담은 발생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가요인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절감으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강구하겠음.</p>	<p>작고 효율적인 구 조직을 운영키 위해 2월부터 전부서에 대한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하였고, 정부조직 축소계획이 구체화 되면 진단결과를 토대로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p>
<p>■ 공공용지도로 부당이득금 부과고지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p>	<p>▶ 개인의 프라이버시 손상이 없도록 연명으로 부과고지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매건당 개별적으로 고지토록하겠으며 동사무소 직원의 교육을 통해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하며, 비밀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음.</p>	

I. 本會議 運營

제58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오환인의원	<p>■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p>	<p>➔ 재무국장인 제자신도 국민의 어려운 입장에서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 문제에 대하여 담당직원들과 함께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보았으나, 이는 국가위임사무로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음. 국공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주민은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임관리청인 구청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96년도에 서울시를 경유해서 재정경제원에 변상금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를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하여 주도록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다시 회시 촉구동의서를 올릴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에 서서 국.공유재산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적극 연구 노력하겠으며, 구의원, 법조인, 교수, 주민대표, 전문인으로 하는 국유재산관리제도 쇄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안되는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음.</p>
	<p>■ 도시가스공사의 경제성 유무에 따른 선별적인 공사행태를 시정조치할 방안은?</p>	<p>➔ 도시가스공급규정에 “공급관연장 100m당 30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 이하는 업체의 재량</p>

제58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보충질문 : 도시가스공사의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가스공사촉진위원회라도 구성하여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p>	<p>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공급승락 의무규정 완화를 위해 건의를 하였고, 금년 3월 6일자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서 시 관계과와 시의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음. 도시가스회사와 적극 협조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통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음.(보충답변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1항에 의해 공급규정을 정하여 서울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강제로 요구할수 없으며, 공사측은 손해를 보는 공사는 않겠다는 주장을 일관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여 촉구한다면들 실익이 있겠는가 하는 것임. 서울시에서 본 규정의 개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공사측에서도 이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민원이 많이 해소되리라 봄)</p>	
<p>김종섭의원</p>	<p>■ 홍은동 노인복지센터 신축, 천연동 경로식당 설치, 홍은동 정원단지 경로당 설치,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 교환부지 매입, 금화 어린이집 신축, 연희제3동 어린이집 신축, 청소년 수련원 건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사업추진 우선순위와 사업별 예산절감범위는 ?</p>	<p>➔ 순수 시비지원사업인 청소년수련원은 "안산테마공원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건립이 '99년도 이후로 연기되었고, 다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됨.</p>

I. 本會議 運營



제58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권재일의원	<p>■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도시 계획 상세계획(아현, 가좌, 천연)지역에 대한 설계 등 기본 조사 실적 및 설계일정은 어떻게 되는가?</p>	<p>➔ 금년 2월초에 공고를 내서 3월 18일날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3월말에 계약이 완료되어 설계용역에 들어 갔고, 내년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서울시 승인을 받아 토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겠음. 입찰의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업체 선정 뿐만 아니라, 업체의 용역수용 능력, 기술수준, 실적과 가격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하는 방식이기 때문임. 가좌지구상세계획용역은 약 25,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8개업체가 응찰하여 1차로 상위 5개 업체를 선정하고, 다시 입찰가가 가장 낮은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아현지구와 시민생활권 상세구역 2개 구역을 한 건으로 하여 역시 같은 절차로 1개 업체를 선정함. 3월말까지 계약을 완료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음.</p>
	<p>■ 주택가 주차선을 무시한 불법주차가 날로 증가하는데 단속을 기피하는 이유는 ?</p>	<p>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으나 현실적으로 한계점이➔ 현재 등록차량이 68,000여대로 이중 43,000여대는 주차공간이 있고, 37%인 25,000여대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 골목에 차가 많게 되었는데, 구에서는 2개조 8명이 22시까지 주차단속을 하고 있으나, 거의 간선도로의 주차만 단속하고 있고, 뒷 골목은 일손이 부족하여 단속을 거의 못하고 있</p>

제58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시범 실시지역 확충계획은 ?</p>	<p>➡ 조건이 6m이상 도로이어야 하고, 주차수요와 공급수요가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 하는 관계로, 작년에도 확충실시를 시도하였으나 다가구 주택등과 같이 차가 많은 지역은 실시할 수가 없었는데, 우선 동마다 적지를 찾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동이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p>김종철의원 ■ 날로 증가하는 결식 노인에 대한 대책은 ?</p>	<p>➡ 구정의 상당부분을 노인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있음. 독립문 경로식당에서 약150명, 독립문 무료급식소에서 약 150명, 지명교회에서 무료급식을 주1회, 서부경로 식당에서 80명, 충신교회에서 50명 등 약 500명에게 무료급식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에서 노인들에게 무료급식과 음료 등을 제공하고 있음. 흥은2동 노인복지관을 만들면 역시 급식소도 같이 설치하여 노인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하겠음.</p>	

I. 本會議 運營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이석문의원	<p>■ 무허가건축물은 일단 신발생하면 철거하기도 쉽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무허가건축물의 신발생을 사전에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p>	<p>있다고 보며, 작년 11월10일부터 금년 2월28 ➔ 무허가건축물 단속체계는 구청에 기동반이 1개와 각 동사무소 통담당 직원으로 되어 있고, 순찰을 통하여 적출되면 1차 예방단속을 하고 적출되지 않은 건축물은 1년에 2회에 걸쳐 실시하는 항공촬영에 의해 적출하여 조치하고 있음. '97년도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적출 현황은 항측에 의한 적출건이 288건, 순찰에 의한 적출은 59건이며 기타 66건인데, 이 중 337건을 처리해서 85.6%는 철거되었으며, 적발시기가 늦어서 이미 사람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든 가 구조가 2층이라 든가 하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철거가 곤란한 건물은 유예기간을 두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주자가 일단 이주한 후에 철거하는 식으로 하고 재래식 철거가 곤란한 것은 기계식장비를 구입해서 말끔히 철거하도록 하겠음. 지금까지는 무허가건축물이 적발되면 건축주에게 구두로 시정을 요구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제도가 개선되어 지금은 위법 건축주에게는 정비통보서를 발부하고 건축물에는 위법건축물 표지를 붙여서 누구든지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건물주가 정리해야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고 있음.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여 철거하면 재산상의 손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철저히하여 무허가건축물은 반드시 철거된다는 인식을 심어 나가겠음.</p>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 건축물 100㎡ 이하 건축은 대부분 영세서민이 절대 필요 주거확보를 위한 신축의 경우가 많아 동사무소 신고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아직도 규제가 까다로워 법 개정의 근본취지가 미약하니, 상부에 건의하여 규제를 더욱 완화함으로써 서민의 애로점을 해소할 용의는 ?</p>	<p>➔ 동사무소에 신고로써 허가를 대신한 건축물은 바닥면적 50㎡ 이내의 증,개축, 대수선 그리고 도시계획안에서 연면적 100㎡이하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음. 대부분 기존건물이 건폐율에 적합하게 건축되어 있어 신축보다는 50㎡ 미만의 증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규정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민원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p>	
<p>■ 서대문구 산하 공무원의 친절도가 전국 1위라고 하나 동사무소 일선 민원창구나 구청 각 부서에서 내방인을 대하는 자세에서는 친절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는데, 구청 산하 전공무원이 근무 현장에서 친절을 실천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용의는 없는지 ?</p>	<p>➔ 친절을 총10단계로 구분한다면 저희들은 현재 겨우 3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비유할 수 있는 정도이며, 나머지 7단계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고, 아직도 구민이 100% 만족할 친절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첫째, 민원인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풀어 줄 만큼의 업무숙지가 미약하기 때문이고, 두번째로는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감동과 만족을 줄 만큼의 친절과 서비스를 베풀어야 한다는 마음자세가 결여된 탓으로 생각되어 매일 30명씩 전직원을 문화체육회관에서 하루 종일 친절교육을 시킴. 주민을 웃음으로 맞이하는 친절한 태도와 개인의 인격과 품성에 기초된 친절의 당위성과 친절의 견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p>	
정일출의원	<p>■ 건축허가에 대한 담당자의 무성의한 허가결과에 따른</p>	<p>➔ 건축 인.허가시에는 각종 제출서류와 관련규정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 처리하고 있</p>

I. 本會議 運營

제58회

質問議員	質問 内容	答 辯 内 容
	주민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으며, 인.허가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의 피해 등은 각종 감사 등을 통해 엄중히 조사, 조치하여 피해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아울러, 건축법 제23조(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규정 등에 의해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은 건축사에게 일괄위임하여, 건축사가 현장확인하여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건축사가 불성실한 현장조사 및 허위도면을 작성할 시는 해당 건축사에게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있고, 앞으로는 담당직원 등의 전문화를 위해 수시로 전문교육을 실시, 공정하고 정확한 행정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남가좌제1동 152번지 백조아파트 재개발 이후 재산권 보호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 남가좌3차력재개발사업은 '73년도에 구역이 지정됐고 '80년9월에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81.8월에 아파트 2개동 100세대가 건립되어 준공되었는데, 땅이 시유지로 '81년도에 10.4평씩 분양되었고, 당초 구역지정 시에는 총1,040평이었으나, 사업완료 후 측량해 본 결과 896평밖에 되지 않아 당초 관리처분 사업구역면적이 결정될 때 도로라든가 인접지역에 편입되었다 든가하여 144평의 땅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되어 시에서 개별적으로 분양한 면적이 미달됨으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확정처분이 지금까지 지연됨. 문제핵심은 매매계약 약정에	

제58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면적이 감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의 금액에 연 5% 이자를 가산해서 환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시 계약금액이 평당 24만원이니까 현시가로 보면 1/20정도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음. 주민들께 현실에 부합한 금액을 환불할 수 있는지와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 등을 통해 연구해보겠지만, 이 사항은 서울시장과 개별적으로 계약했고 약정서에 명기되어 있어 구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원만히 해결되면 앞으로 확정측량을 하고 자력재개발 변경인가 고지를 거쳐 예산을 받아 청산금을 내주고 확정측량에 의해서 사업처분을 완료하는 절차가 되겠음.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환불한다는 조건이라면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8,600만원으로 시 주택사업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받으면 문제해결에 별 애로점이 없다고 생각됨.</p>
<p>■ 남가좌제1동 155-77, 173번지 주차장 매입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용의는 ?</p>	<p>➔</p>	<p>시비지원사업으로 98동을 6억원을 들여 샀음. '97.12.24 시의 돈을 받아 토지를 매입한 후 도시계획시설의 주차장으로 묶였는데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시비를 지원받다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24구획은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민의 주차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고 현재 주차장 거리에서 120m 지점에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임.</p>

I. 本會議 運営



제58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이진수의원	<p>■ 홍제4구역 주택 재개발지역 내의 사유지 불하감정가에서 개량비의 공제를 위한 구청의 계획은 ?</p>	<p>➡ 홍제4구역 재개발에 따른 사유지 매각대금 결정의 절차가 잘못되었으니까, 원상태로 되돌린다든지 매각대금이 비싸니까 싸게한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와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의원님께서 계속 걱정하여 지난 번에 검토위원회를 만들어 그 자리에서 함께 충분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나 형식적이고 법규에 맞지 않는 것을 합법화하는 회의운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하여 이해가 안되며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고문 변호사와 다시 한번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홍제3,4구역 재개발 경우는 소송이 진행중이기에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함.</p>
홍성덕의원	<p>■ 정화조 청소방법에 대하여 (인분수거 후 물을 채워 균이 생성되어 정화조가 제기능을 발휘토록 해야하나 수거 후 물을 주입하지 않는 잘못된 청소방법에 대하여)</p> <p>■ 주민이 정화조 청소원과 환경미화원에게 주는 봉사료에 대하여</p>	<p>➡ 정화조의 구조를 보면 망이 있고 그 밑에 자갈과 물이 깔려 있으며, 청소는 그 망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시 발효 박테리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님.</p> <p>➡ 팁을 받아서는 안되므로 행정적인 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주민들께서 미화원들이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미화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팁형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나, 앞으로 미화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p>



II. 行政事務 監査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의 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촉구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매년 정기회 기간중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7년도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議會運營委員會

가. 監事期間 : 1997. 12. 1 (1일간)

나. 監事對象 : 구의회사무국

다. 監事班 編成 : 위원장 정연식 의원, 간사 이성배 의원

구분 반별	감 사 위 원	대상	사 무 보 조	비 고
제 1 반	반장 : 이석문의원 위원 : 기창표, 정현철, 김종철 의원	의정계	전문위원 이상헌 의사계장 박천기 직 원 권오상 장혜경 정선경	
제 2 반	반장 : 정일출의원 위원 : 오환인, 정혜연 의원	의사계		
제 3 반	반장 : 정일수의원 위원 : 이성배, 권재일 의원	의안계		

II. 行政事務 監査

라. 監事結果

1) 총괄 : 시정요구사항 6건(의정계 3건, 의사계 1건, 의안계 2건)

2) 시정요구사항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의 정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물제작 실태 ○공문서 편철실태등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안내지 등 각종 의정활동 홍보는 즉시 제작 배 포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추진의지 미흡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의회사무국은 모든 사무처리에 있어 집행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각종 공문서 서류 편철, 사무실 환경정비 등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모든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시 무절제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가 필요함.
의 사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록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록 발간이 지연되므로 향후에는 신속하게 발간 배부하여 의정활동 보좌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교정을 철저히 해서 오자가 없도록 할 것.
의 안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의안문서 접수 및 배부 ○공문서 보안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의 요청, 각종 의안문서의 접수 및 배부에 있어 의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일을 두고 배부하여야 함에도 회의당일 또는 기일 촉박하게 배부되고 있음. 향후 각종 자료의 준비 및 배부에 있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료배부에 만전을 기할 것. - 의원개인 신분에 관련된 문건은 의장 승인을 득한 후 제출토록 하고, 무단 제출시는 관계 직원을 문책 요구하기로 함.

2. 總務委員會

가. 監事期間 : 1997.11.26 ~ 12. 2 (7일간)

나. 監事對象 및 事務範圍

- 감사대상 : 1실 2국 1소 5개동사무소
 - 기 획 실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 총 무 국 : 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 재 무 국 :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 보 건 소 :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 동사무소 : 북아현1동, 홍제제3동, 홍제제4동, 흥은제3동, 북가좌제2동
- 사무범위 : 1997년도에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

다. 監事班 編成 : 위원장 기창표 의원, 간사 박덕균 의원

구 분 반 별	감 사 위 원	대 상	사무보조
제 1 반	반장 : 전성장 의원 위원 : 이석문, 정일출 의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전문위원 이상헌 의사계장 박천기 직원 박영갑 장윤희 이영순 성기주 김종일 정선경
제 2 반	반장 : 이기봉 의원 위원 : 조갑현, 김종철 의원	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제 3 반	반장 : 권재일 의원 위원 : 정혜연, 박덕균 의원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제 4 반	반장 : 김정현 의원 위원 : 송영우, 조재구 의원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 약 과	

II. 行政事務 監査



라. 監事結果

1) 총괄

구 분	계	우수사항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 고
계	60	4	46	10	
기 획 실	17	1	13	3	
총 무 국	18		17	1	
재 무 국	11	2	6	3	
보 건 소	5		5		
5개동	9	1	5	3	



2) 우수 및 장려사항

부서명	우수 및 장려 사항
<p>기획예산 담당관</p>	<p>○ 자치법규집 전산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부서에서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190건을 책2권으로 관리하면서 법규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의 추록·가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법규활용에 현실성이 떨어지고 민원처리 및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전산실의 협조로 '97. 3월부터 8개월간의 작업 끝에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앞서 자치법규집을 전산화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법규행정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 또한 법규집 전산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신속하게 추록할 수 있으며 자치법규를 P.C를 이용 여러 직원들이 동시에 열람토록 하는 효과와 주민들에게도 인터넷 등 공중전산망을 통한 공개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므로 - 각부서에 확산과급시키고 관계공무원인 행정8급 박우석을 표창 상신토록 건의함.
<p>세무2과</p>	<p>○ 제도개선 제안 공무원 표창상신 등 건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 개선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인도 명령"은 서대문구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제도로써 2개월 동안 4억여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상신 등 우대 요망
<p>지적과</p>	<p>○ 솔선수범 공무원 표창상신 등 건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맡은바 업무에 열의를 가지고 징수에 대한 창안과 지속적 노력으로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에 대한 누락분을 추적하여 44건에 16억 8천여만원을 부과 징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상신은 물론 보상금 규정을 신설검토 요망

II. 行政事務 監査



부 서 명	우 수 및 장 려 사 항
홍제3동	<p>○대민친절봉사 모범</p> <p>- 홍제3동에서는 대민친절봉사의 일환으로 사무실내 공중전화기 1대를 설치하고 전화카드를 비치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세금고지서 등 전달시 맞벌이 부부등 부재중인 경우 전달이 잘되지 않아 이의 개선을 위하여 부재중 방문안내 스티커를 제작하여 민원인이 잘보이는 곳에 부착 방문경위를 알림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있음.</p> <p>상기와 같이 민원위주 친절봉사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하고 있으므로 타동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확산 전파하기 바람.</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3)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기획예산 담당관	각종위원회 현황과 운영실태	<p>- '95년 이후 서대문구에 49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운영실태를 보면 연간 5회 미만 운영이 대부분이며, 또한 한번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도 다수 있으므로 운영 실적이 없거나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함.</p> <p>특히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위원회(보육, 아동, 모자복지)는 기능이 유사하여 행정력, 예산절감 등 측면에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함.</p>
	안내 홍보책자 발간 실태	<p>- 각종 홍보책자 발간시 중복되는 내용으로 2중 이상 발간하여 행정력 낭비는 물론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97년도에 발간한 예산 개요서와 중기 투자 재정계획 내용을 보면 일부 차이점은 있으나 예산구조 현황등 다수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음)</p>
	일반 및 특수시책 추진비 집행 실태	<p>- 기관공통 경비인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구 전 부서에서 편성 집행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일부부서(총무과)에서만 예산을 편성집행되고 있는 바 기관의 공통목표와 구정을 위하여 전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이 정착될 수 있음.</p>
	예산 편성 실태	<p>- 매년 각부서의 예산편성 요구 내역을 보면 '98년도 일반회계 새출예산의 경우 총재원이 1,189억원에 불과하나 무려 1,832억원을 요구하여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부족액 643억원을 삭감 조정하기 위하여 짧은 작성기간에 밤 늦게까지 업무 처리를 하는 실정인바 각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서 작성 제출시 자책심의를 철저히 하고 무리한 예산편성을 자제하여 이와같은 사례를 방지하여야 할 것임.</p>

II. 行政事務 監査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기획예산 담 당 관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 편성 실태	- 공무원의 해외여행 예산편성 실태를 보면 '95년도에 1억원이던 것이 '96년도에는 1억 5천만원 '97년도에는 2억원으로 매년 30% 이상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전문을 넓혀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지금과 같이 외화난이 심각한 때에는 해외여행의 유보 또는 계획을 축소하는 등 외화 절약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전산실 운영 실태	- 전산실이 주전기가 가동중인 기계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무실과 같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과 전파 등으로 직원들의 고충이 심하고 업무의 능률도 떨어지고 있어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임.
감사담당관	민원접수처리 실태	- 민원접수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공문서 없이 대장상에 조치, 시정, 지시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처리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근본적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현장 확인감사를 위주로 하는 방법으로 대장서식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
	진정민원처리결과 처리 실태	-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피민원과 민원인간에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종결할 경우 단순히 민원인의 취하서에 의하여 현장등 확인 없이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관의 행정처리에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민원 종결 처리시 담당부서에서는 현장확인 등 합의 유무를 조사하여 감사담당관실에 통보 종결처리하여야 할 것임.
문화공보 담 당 관	구소식지 「해답는 마을」 명예기자 운영 실태	- 해답는 마을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명예기자 각 동 1명씩 총 22명이 지역소식 전달 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감사 현재까지 5명의 명예기자만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알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주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명예기자 교체 위촉 등 재정비가 필요함.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문화공보 담당관	문화의 집 운영 실태	- 문화의집 운영실태를 보면 기능 등 문화체육회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문화체육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례 및 규칙에 맞게 문화체육회관 관장제 실시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관 공사 추진 실태	- 서대문독립공원은 항일정신과 자주독립의 의지가 배어 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옥사, 사형장 등 청사가 현존하고 있으며, 역사의 산 교육장은 물론 관광명소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 시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는 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원형 보존이 잘 되고 있으나 전시시설로 꾸며지는 구 보안과 건물의 1-2층은 기능상 최소한 훼손이 불가피하더라도 체험의 장으로 꾸며지는 지하층만큼은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문화체육회관 주차장 운영실태	-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주차장 유료화 사업은 주차난 해소 및 재정수입 측면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는 있으나 주차관리직원은 방문하는 손님에게 기분이 상하지 않게 맞이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 그렇지 않으므로 친절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현재의 주차 초소는 가건물로써 냉난방이 되지 않아 근무직원이 애로가 있어 벽돌 스라브등의 건물로 재건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차요금은 공무원들이 현금 취급하고 있어 부조리가 우려되므로 민간인에게 대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신촌문화축제 운영방법 개선	- 건전한 대학문화 정착과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대명제하에 신촌문화축제가 '92년부터 개최되고 있는바, 운영실태를 보면 해를 거듭할 수록 축제규모가 방대해지고 있으며 축제 본연의 의미와는 달리 인근 대학생들의 무관심과 불참속에 먹고 마시는 축제, 상업적인 축제라는 일부의 비난을 받아 왔으며, 추진위

Ⅱ. 行政事務 監査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원회는 민간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관주도의 축제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 추진위원회를 법인화하여 집행함으로써 축제 본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임.
총 무 과	공무원 인사발령실태	- 헌법에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지방공무원 정원에 명시되어 있는 5급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문책사항이 없음에도 6급 전문직으로 강등시켜서 본연의 업무도 아닌 재개발아파트 사무실로 발령하는 것은 빠른 시일내 시정되어야 할 것임.
	안전점검 관리실태등	- 구청사 재난대비 종합계획 재검토 시정 요망 <주요 추진사항> ·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및 자율 소방대 편성지침 이행 요망 · 소화기 정위치 재편성요망 · 보안점검 일지 작성 및 기록유지 · 민방위훈련 계획에 맞도록 시행 요구 · 주요 시설물 규정에 의한 점검 철저등
	직원식당 운영실태등	- 직원식당이 협소하여 중식시간에 줄을 서서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개선요망 -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운동시설이 필요하며, 기능직(운전원)사무실 정수기 설치요망 -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용인부 감원 요망 - 청사 뒷편 폐자재를 재활용하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목수고용 등 조치 바람.
	일반행정직 및 기술직 보직 발령 실태	-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주민의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직에 맞도록 직렬별로 인사발령토록 하여야 함에도 도시정비국 소관 국장 및 일부 과·계장은 주택 및 재개발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고 행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일부 동사무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므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일부 동사무소 토목, 건축 업무직원이 행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기술직 공무원으로 즉시 시정하여야 할 것임.</p>
	지방공무원 전보 실태	<p>- 공무원의 전보 발령시 지방공무원 임용에 의거 현부서 근무 1년 이내의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발령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95년부터 '97년까지 3년동안 95명의 직원에 대하여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실시하여 전보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사전 심의권을 남용하여 전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p>
시 민 과	민원실 운영 실태	<p>- 민원이 가장 많은 시민과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환경개선, 정보센터 설비, 민원서류 요금 자동납부제, 호적 전산화 실시 등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임.</p>
	민원처리 실태 등	<p>- 호적 등·초본 접수 공무원이 서고에 드나드는 동안 자리가 비어 있어 민원인이 문의를 할 수 없으므로 대체 방안이 필요함. 또한 종류별 증지판매에 대하여 월별 년별 분석을 하여 많이 판매되는 증명발급 업무직원을 증원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에 기하여야 하겠음.</p>
	민원 휴게실 운영실태	<p>- 민원 휴게실이 협소하여 공중전화, 흡연실이 같이 있어 구민들의 불평이 많으므로 공중전화 박스 칸막이를 설치하고 흡연실을 별도 설치하는 등 명랑하고 쾌적한 민원휴게실로 개선 바람.</p>
공통사항	문서관리 편철실태등	<p>- 문서관리 및 서류의 편철 등은 정부공문서 관리규정에 의하여 서류편철의 경우 200페이지를 기준으로 문서목록을 업무처리 즉시 작성 관리하여야 함에도 대부분 부서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류 편철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겠음.</p>

Ⅱ. 行政事務 監査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사회진흥과	새마을지원단체 운영실태	- 새마을협의회 구지회에 활동비 명목으로 년 4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치므로 지원금액은 전액 삭감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여 충분히 지원하든지 개선 방안이 필요함
	약수터 운영 실태	- 관내 34개의 약수터에 대하여 오염여부 등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으나 귀중한 생명의 약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주변 시설 관리 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실태	- 새마을 장학금을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구민중에서 새마을 정신 이념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바람.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용 실태	-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이 폐지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전체 도서 중 약 24%가 회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도서회수에 철저를 기하고 회수된 도서에 대하여는 전 구민이 유효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새마을 단체 지원 운용 실태	- 정책적인 일환으로 관내에서 바르게살기 협의회 단체에 예산을 지원 운용하고 있는 바, 예산은 관계법 절차에 의거 정확히 집행하여야 함에도 '97년도 행사사업의 일환으로 육교에 설치한 현판 제작비 850,000원을 지출함에 있어 타견적서 등 증빙자료 및 산출근거도 없이 처리한 것은 명백히 예산회계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또한 각종 캠페인 등의 행사비 예산지출도 관련규정에 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향후 모든 행사종료 후 사용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개선 요망.
민 방 위 재난관리과	민방위대장 위축실태	- 민방위 대장인 통장의 연령분포를 보면 총 581명 중 60세 이상이 98명으로 노령화되어 대원의 사기와 통솔에 큰 지장을 초래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여 민방위대장인 통장을 정예화시켜 40만 서대문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민방위훈련 장비 운영 실태등	구민의 최일선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방독면 등 재해(재난)장비를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각 동에 방독면 보급시 인구분포에 의거 최대한 보급할 것이며, 방독면 착용방법을 전직원에게 숙지토록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민 방 위 재난관리과	안전점검 관리실태등	- 구청사 재난대비 종합계획 재검토 시정 요망. <주요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소방업무 처리 규정 및 자율 소방대 편성 지침 이행 요망 · 소화기 정위치 재편성 요망 · 보안점검 일지 작성 및 기록 유지 · 민방위훈련 계획에 맞도록 시행 요구 · 주요시설물 규정에 의한 점검 철저 등
재 무 과	서화류 등 예술품 보관 관리 실태	- 서화류 등 예술품의 관리는 물품에 준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자의 교체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는 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물품대장상 처분상황 등 기록, 관리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재물조사 실태등	- '96 정기 재물조사 실태를 보면 서류위주의 형식적으로 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바 앞으로는 관리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 확인조사 등 개선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동 조사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확인실사도 여직원 1인이 실사 · 라벨부착은 형식적으로 일부만 실시 · 장부와 현물이 일치하지 않음 · 사장방지, 재활용증진의 물품 사용 (재배치 및 보수 확대)

II. 行政事務 監査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법 정확 신속한 불용처분 · 각 부서별로 조사단 편성하여 교체 점검 실시 · 각 부서별로 물품관리 전산화 운영 · 물품 출납사항 지속적 관리 등
	변상금 부과 실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지 점유자에 변상금 부과시 일괄 조사하여 일률적으로 고지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임. ·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의 120/100적용 ├ 분할 납부시 잔액 연 8% 적용 └ 연체료 년 15% 적용 ※ 산출요율 2.5%(5%에서 인하) 1%대로 인하요구 · 무주부동산 및 누락재산 신속히 파악 · 기타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한 애로사항등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 위주 정책을 위한 대책 강구
	재물관리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관리의 법적용에 있어서 민법규정에 의한 분류를 정확히 하고, 소유와 관리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재산관리 요원을 전문화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변상금, 매각, 소송 담당제도를 동별 책임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재무과 세무 1과 세무 2과 지적과	공문서 및 문서접수 (발송) 관계철 운영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공문서철에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편철하지 않고 있으며, 문서접수(발송)철에는 인수자의 확인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어 공문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것임.
지적과	민원실 운영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과는 시민과 업무가 일부 이관되어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 사무실은 협소하고 조명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민원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도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임.
보건소 행정과	진료 운영 실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 보건소 진료 이용자를 보면 타지역 주민이 일부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제하고 서대문주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바람. 또한 기획계는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방역 운영 실태	<p>많은 업무량에 비해 직원이 부족하므로 직원 배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p> <p>- 방역소독 작업은 대체로 잘하고 있으나 실적에만 급급하였을 뿐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구민의 불평이 있으므로 앞으로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p>
보건지도과	보건교육 운영 실태	<p>- 구민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청각 자료에만 의존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하므로 보건의로 전문가를 채용 정보를 직접 전할 수 있는 현장 실습 교육 등을 대폭 늘려서 운영하는 방법 등 개선 요망</p>
	정수물품 운영 실태	<p>-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물품에 대하여 내구년한이 경과한 것은 폐기처분하여야 함에도 예방접종실 등에 비치된 공기청정기는 내구년한이 지났음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치 바람.</p>
의 약 과	상담실 운영 실태	<p>- 구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97년 4월부터 스트레스 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에게 홍보 부족으로 실적이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지역신문 등 홍보를 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p>
북아현제1동	수혜자에 대한 운영 실태등	<p>- 노인 교통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일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전출입자 등에 대한 사전홍보 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정 바람.</p> <p>- 동사무소에 각종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통합 통장으로 관리함으로써 각 분야별 예산 지출에 대한 구분이 어려우므로 각 사업별 개별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p>
홍제제3동	민방위관리 장비 보관 실태	<p>- 민방위 관련 장비의 보관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관리 대장상에 수령일자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 시정하여</p>

II. 行政事務 監査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야 할 것임.
홍제제4동	보안등 관리 실태	- 보안등 스위치가 일부 수동식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 점멸등으로 교체 바람.
	전산업무 실태	- 현재 동사무소에 컴퓨터는 보급이 되어 있으나 일부 직원들의 경우 사용방법을 모르고 있으므로 전산 전문직 직원으로 하여금 주 3회정도 방문 교육 실시 등 개선책이 요구됨.
각 동 공통사항	소규모사업 예산 집행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절기에는 부실시공등 각종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예산배정시 1/4분기에는 현 예산의 50%만 배정 집행하고 2/4분기에는 나머지 예산을 배정 집행하므로써 이자 수입의 효과가 있음. - 소규모 사업비 중 약 30% 정도가 불용처분이 예상되는 바 향후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을 철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4) 건의사항

부 서 명	내 용
<p>기획예산 담당관</p>	<p>○재원확보를 위한 역량 발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재정의 확보가 중요하며, 확보에 있어서는 구세 및 세외 수입 등으로 징수함으로써 인위적인 증가는 한계가 있음. · 재정확보에 대한 현황을 보면 '96년 예산 674억이었으나 4년후 98년도에 1300억원으로 674억원이 증가하여 서대문구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향후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지, 환경, 도시개발(지역 분야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역량을 발휘하기 바람. <p>○전산직 공무원 보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업무는 대표적인 전문분야로써 업무 총괄하는 계장은 당연히 전산직으로 보임되어야 함에도 전산계 설치 이래 '97. 12. 2 감사, 현재까지 행정직으로 보임이되고 있으므로 향후 전산직렬이 보임될수 있도록 건의하며, 또한 '98년도 민원관리 프로그램과 지방세 시스템의 가동으로 인해 업무가 증가하여 전산직원을 최소한 5명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3명뿐이므로 2명을 더 확보함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 대비 적절한 인력관리라 사료됨.
<p>감사담당관</p>	<p>○감사방법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사후관리나 적발 위주의 감사보다는 공직자의 부조리 및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사전감사 및 예방감사 위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주민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주민의 억울함을 해소하여 줄 수 있는 효율적 감사방법 운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p>총 무 과 민방위재난 관 리 과</p>	<p>○구청사 재난대비 종합 계획 수립 시행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 소방 업무 처리규정과 자율소방대 편성지침에 의한 운영실시 요망 - 주요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 소방서 및 관리기관에 지도점검 요구 의뢰
<p>재 무 과</p>	<p>○물품(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관장의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각 부서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 및 책임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재물조사 방</p>

II. 行政事務 監査



부 서 명	내 용
재 무 과	<p>법에 있어서 전박적 재검토 조사와 실사에 대한 실명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임. ※원위치, 정리정돈, 실물, 장부일치 강구</p> <p>○재산관리제도 및 변상금 부과 방법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관리 제도에 있어서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변상금, 매각, 소송 담당제를 동별 책임자 제도로 할 필요가 있으며, 재산관리 요원도 증원하여야 할 것임. - 변상금 부과 및 고지에 있어서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무주부동산 및 누락재산을 완전히 파악한 후 일괄 고지하여야 할 것이며, 부과에 있어서 산출요율 2.5%를 1%로 하고, 사용료 적용율 120/100을 50/100으로 분할 납부시 잔액이자 연 8%를 연 4%로, 연체요율 연 15%를 5%로 각각 하향 조정하도록 건의요망.(재경원, 서울시) <p>○단체 수의계약 방법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수의계약의 경우 법 제26조1항6호 나목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대한 단체 수의계약을 선호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여서도 아니되며 물품구매 계약의 경우 일괄계약하지 않고 분할계약하는 사례가 일부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할 것.
홍은 제3동	<p>○민방위장비 관리 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장비인 방독면을 관리함에 있어 내용년수가 지난 것을 폐기 처분하고 교체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조치 바람.
각 동 공통사항	<p>○소규모 사업 계약방법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소규모사업 계약을 관습적인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음. 이 수의계약 실태를 보면 주관부서에서 원가계산 설계서에 의거 예가 결정 후 지정된 1개업체에 입찰서 제출 가격 결정후에 계약을 체결하므로 업자와 결탁할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 요망 <p>○동사무소 직원 복장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무소에서도 구청 시민과처럼 직원에게 통일된 복장을 지급하여 민원인에게 친절 봉사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3. 市民建設委員會

가. 監事期間 : 1997.11.26 ~ 12. 2 (7일간)

나. 監事對象 및 事務範圍

- 감사대상 : 3국 16과
 - 시 민 국 :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 도시정비국 : 주택과, 주택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 건 설 국 :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 사무범위 : 1997년도에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

다. 監事班 編成 : 위원장 기창표 의원, 간사 박덕균 의원

구분 반별	감 사 위 원	대 상	사 무 보 조
제 1 반	반장 : 정연식 의원 위원 : 허준구, 정일수, 이진수 의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전문위원 한중현 의안계장 이수식 직원 권오상 조희동 장혜경 신성윤
제 2 반	반장 : 김영일 의원 위원 : 김종섭, 김동덕, 강석준 의원	주택과 주택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 축 과	
제 3 반	반장 : 최광진 의원 위원 : 이성배, 정현철, 홍성덕 의원	건설관리과 토 목 과 하 수 과 공원녹지과	

II. 行政事務 監査



라. 監事結果

1) 총괄

구 분	계	부서명	
우수 사항	2	사회복지과(1), 토목과(1)	
시 정 및 처리요구 사 항	25	시 민 국 : 사회복지과(2), 가정복지과(2) 산업과(3), 환경과(1), 청소과(3) 도시정비국 : 주택과(2), 주택개량과(1) 교통행정과(1), 교통지도과(1) 건설 국 : 건설관리과(2), 하수과(3) 공원녹지과(1) 기 타 : 총무과(1), 사회진흥과(2)	
건의사항	9	가정복지과(3), 환경과(1), 주택개량과(1) 교통지도과(2), 건축과(1), 건설관리과(1)	

2) 우수 및 장려사항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우 수 및 장 려 사 항
(시민국) 사회복지과	도우미활동 사항	- 도우미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음. 특히 정명숙, 허명희, 이정애, 김경애씨는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주변의 수혜노인들을 돌보아드리고 거동동행 및 빨래 등을 해주며 여러 가지로 불편한 노인분들의 손과 발이 됨은 물론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다하여 공무원의 귀감이 됨으로 표창을 상신함.
(건설국) 토 목 과	도로포장 공사 등에 대하여	-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로 포장공사 현장확인을 한 결과 설계도면 및 내역서대로 아스콘 표층도 5cm 이상, 아스콘 중층 7.5cm, 혼합기층 20cm, 보조기층 30cm 등으로 정확하게 시공하여 오차범위 0.2% 이내로 공사를 한 토목과를 행정사무감사 우수과로 선정함.

3)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시민국) 사회복지과	이웃돕기 성금운동에 대하여	- 이웃돕기 성금의 운영은 보건복지부 「이웃돕기성금 및 운용 관리지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로효친 선양회 격려금 지급,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배달사업 등에 성금이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음. 또한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배달사업은 월 500천 원씩 지원을 하고도 정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불우 이웃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기금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웃돕기 성금운용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진료비 대불금 체납자 현황 등 조사	- 진료비 대불금 고액 체납자 중 20명을 대상으로 재산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홍은 2동 김경수(체납액 1,582,570원)와 홍은 3동 안상필(체납액 361,880원) 등은 차량까지 소유하고 있음에도 1년에 독촉고지서 한 번 발송하는 정도의 체납독려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보다 적극적인 체납독려 및 강제징수 방법 등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가정복지과	구립 어린이집 운영실태	- 구립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우리 어린이집과 동방 어린이집의 경우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판공비 명목으로 월 20~30만원까지 부당하게 지출된 사례가 있으며, 가좌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장부에 기입되지 않고 별도의 통장에 입금 필요시마다 출금하여 지원금의 입·출금을 확인할 수조차 없는 실정임. 향후 행정지도를 통하여 정부보조금의 지원 내역이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영유아 시설 개· 보수에 대하여	- 구립 어린이집 중 '97년도 개·보수한 5개소의 어린이집을 확인한 바 '96년도에 개·보수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들이었음 1년도 되지 않아 개·보수 공사를 재차 실시한다는 것은 일관된 계획성 없이 문제 돌출시마다 땀질식 보수 공사를 시행 결과라 할 것임. 해당부서의 감독소홀로 인한 부실공사와 예산상

II. 行政事務 監査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의 낭비가 없도록 향후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p>																				
산 업 과	<p>시카고 상설 전시판매장 영업활동 및 계약체결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1996. 6. 25 - 설치지역 : 미국 시카고 - 규 모 : 35㎡(매장당 700\$×5×12월) - 참가업체 : 10개업체 - 추진실적 : 상담액 7,846,060원 계약액 922,896원 - 전시장을 설치한지 얼마되지 않은 점도 있으나 관내 중소기업 111개 업체중 10개 업체만 참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참여도가 매우 낮으며, 상담액 대비 계약 실적이 극히 부진한 상태임.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시카고 상설전시관의 현지운영 실태에 대한 구청의 확인 등이 있어야 할 것임. 																				
	<p>'97년 쥐잡기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1차 쥐잡기 사업 - 투약지역 : 서대문구 전 지역 - 예 산 액 : 1,079,700원 - 수 량 : 60,300포 - 동별 구서약제 배부사항(예시임)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동 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가구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구서목표</th> <th style="text-align: center;">배부량</th> <th style="text-align: left;">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현저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291</td> <td style="text-align: center;">2,450</td> <td style="text-align: center;">450</td> <td>5마리×1포</td> </tr> <tr> <td>홍제4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1967</td> <td style="text-align: center;">21,450</td> <td style="text-align: center;">2,150</td> <td>10마리×1포</td> </tr> <tr> <td>북아현3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2302</td> <td style="text-align: center;">950</td> <td style="text-align: center;">450</td> <td>1마리×3포</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제 공급기준에 구서목표별 약품배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제배부에 전혀 기준이 없는 상태임. 예산절약 및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성 있는 행정이 요망됨. 	동 명	가구수	구서목표	배부량	비 고	현저동	291	2,450	450	5마리×1포	홍제4동	1967	21,450	2,150	10마리×1포	북아현3동	2302	950	450	1마리×3포
	동 명	가구수	구서목표	배부량	비 고																	
현저동	291	2,450	450	5마리×1포																		
홍제4동	1967	21,450	2,150	10마리×1포																		
북아현3동	2302	950	450	1마리×3포																		
<p>도·농간 자매결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과 22개 각 동사무소는 도시와 농촌간 상호이해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및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	<p>를 증진시키기 위해 관내 49개 농협과 자매결연을 맺어 농수산물 직거래 등을 추진하고 있음.</p> <p>- 하지만 49개 자매결연 농협중 9개동 18개 농협은 실적이 전무한 상태임. 도농간 현 실정을 무시한 형식적 사업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p>
환 경 과	오수·분뇨 등의 처리	<p>-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화조 청소 및 수수료 징수를 대행업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수수료징수 고지서의 발부 및 청소 안내서, 청소촉구서의 우편요금을 구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대행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예산상의 낭비라 사료됨.</p> <p>(’97년도 우편요금 : 약 4,680,000원 수수료 징수고지서 4,316,170원 안내서 및 촉구서 370,000원)</p> <p>- 향후 조례개정 및 재계약을 통하여 상기사항을 대행업체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함.</p>
청 소 과	재활용품 수집 운반 등	<p>-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동사무소에서 재활용품 수거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p> <p>-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운행일지를 점검한 바 점심시간도 없이 운행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으며, ’97. 10. 29 15:00부터 교육이 있었으나 운행일지상에는 일부동을 제외하고는 16:00까지 운행한 것처럼 운행일지를 허위작성하고 있음.</p> <p>- 또한 오전 04:00부터 06:00 사이에 일반적으로 출근하여 14:00까지 작업한 것처럼 일률적인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있는 것도 일지작성상의 허구라 할 것임.</p> <p>- 앞으로는 모든 기록 및 일지 작성에 있어 상기 내용과 같은 허위 기록을 지양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사무소 재활용품 수거작업에 직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재활용 차량이 동원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함.</p>

II. 行政事務 監査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체납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투판매 및 체납액('97. 10.1 현재) <table style="margin-lef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right: 20px;">연도</td> <td style="padding-right: 20px;">봉투판매액</td> <td>체납액</td> </tr> <tr> <td>'95년도</td> <td>26억3천만원</td> <td>23,542천원</td> </tr> <tr> <td>'96년도</td> <td>19억5천만원</td> <td>5,914천원</td> </tr> <tr> <td>'97년도</td> <td>13억6천만원</td> <td>35,329천원</td> </tr> </table> - 청소과 연간 예산이 153억여원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봉투판매액은 청소과 예산의 10%밖에 되지 않는 실정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체납액이 엄청난 금액에 이르는 것은 구청 및 동 청소담당들의 안이한 근무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임. 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연도	봉투판매액	체납액	'95년도	26억3천만원	23,542천원	'96년도	19억5천만원	5,914천원	'97년도	13억6천만원	35,329천원
연도	봉투판매액	체납액												
'95년도	26억3천만원	23,542천원												
'96년도	19억5천만원	5,914천원												
'97년도	13억6천만원	35,329천원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캔 압축기 활용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황 : 22대(22개 각 동사무소 설치) - 예산액 : 32,670,000원 (대당 가격 1,485,000원) - 각 동사무소에 설치된 캔 압축기 22대중 6대가 고장으로 사용치 못하고 있으며 가동중인 것도 능률이 오르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동이 대부분임. 당초 계획과 구입상의 문제로 인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것임. 각 동사무소에 설치된 캔 압축기의 일 제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용과 활용이 요망됨. 												
(도시정비국) 주 택 과	무허가 건물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으로서 무허가 건물 철거 후 재발생 무허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철거한 사후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96년도 무허가 건물 단속현황을 보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시정을 강력히 요구함. 또한 순찰 등을 강화하여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힘써야 할 것임. 												
	시민아파트 관리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제2동 시민아파트 내 부속건물 1동이 구청에 기부체납되어 있으나 관리하는 부서도 없이 그대로 방치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되고 있는 상태임.</p> <p>'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였으나 공무원들의 태만한 근무로 여전히 방치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p>
주택개량과	주거환경 및 위험물 관리	<p>- 재개발지구 및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의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 등의 위험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됨.</p>
(도시정비국)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의 설치	<p>- '97. 3 공영주차장 설립을 위해 흥은3동 271~2의 7필지에 대한 부지매입을 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97. 12. 1 현재까지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집주인도 아니고 땅주인도 아닌 거주자1가구의 민원 때문에 13여억원을 들여 부지를 구입한 후 8개월 이상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열악한 서대문구 재정에 비추어 엄청난 재정적 낭비라 사료됨.</p> <p>또한 연희1동 노외 주차장은 19억원을 들여 '97. 5. 30 노외주차장을 완공하고도 사업성이 없어 위탁관리인을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임. 당초 계획 수립시에는 무엇을 검토하였으며 방치됨으로 인한 예산상의 낭비는 어떻게 보전할 계획인지 분명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p> <p>위와 같은 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현재 공영노외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한 부서로 통합하여 일원화시킬 것을 건의함.</p>
교통지도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p>-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에 따른 대장관리를 조사한 결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권 수불대장과 구청 주차요금 수납대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p> <p>연희2동의 경우 수불대장보다 오히려 주차요금 수납대장의 납입건수가 9건이나 더 많은 상태임.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건수보다 주차요금 납입건수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정관리의</p>

II. 行政事務 監査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p>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며, 향후 정확한 대장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p>
<p>(건설국) 건설관리과</p>	<p>가로정비 초소의 운영부실</p>	<p>- 우리구 관내에서는 5개소의 가로정비 초소를 설치하여 11명의 단속원이 근무하고 있음.</p> <p>서울시 노점상 단속지침을 보면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으로 구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절대금지구역에서는 노점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상대금지구역에서는 18:00이후 부터 기존 노점상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하지만 신발생 노점상들을 단속한다는 명목하에 하루 한두건 정도만 형식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통행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부정의 여지마저 내포하고 있음.</p> <p>실효성도 없는 가로정비 초소를 폐쇄토록하고 서울시 노점상 단속지침에 따라 순찰을 강화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p>
	<p>가로판매점의 관리실태 조사</p>	<p>- 현재 우리구에는 총 71개소의 가로판매점이 있으나 당초 허가내용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 감독 또한 매우 소홀한 상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개소 중 19개소 가로판매점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당초 가로판매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특히 여름철에는 환경 청소상태까지 불결하여 음식물 부패 등 보건위생상 많은 문제가 있음. 또한 가로판매점 옆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LP 가스통은 위험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할 것임. · 가로판매점은 허가받은 사람만이 운영할 수 있음에도 TV 등에서 추적 보도된 바와 같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임의로 전매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해당과장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하 수 과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관 매설 후 아스팔트 포장공사시 동상 방지층을 굵은 골재 30cm, 고운골재 20cm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97년도 시공부분에 대해 현장조사한 바 보조기층을 약 10cm로 시공하여 도로의 부실이 우려됨. 또한 보조기층이 위와 같이 약한 상태에서 아스팔트 기층은 5cm임에도 불구하고 아스팔트 기층을 오히려 10cm로 시공하여 공사의 부실 및 예산상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콘크리트 도로포장시에도 잡석 및 모래갈기를 20cm 이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3cm 정도로 시공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콘크리트 포장시 잡석 및 모래갈기를 20cm이상 되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여야 할 것임.
	공사발주 계약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발주시 계획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상위에서 설계되고 있어 당초 예산액 대비 공사계약금액이 1/3정도에 그치고 있음. 이에 따라 무 계획한 예산 책정 및 시공사의 사기저하,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음.
	맨홀 설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홀 설치공사시 맨홀 하단부에 흠을 만들지 않아 준설작업시 준설토등이 하부방향으로 유입되는 등 준설작업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향후 맨홀 설치공사시 반드시 맨홀 하단부에 흠을 설치토록 할 것.
공원녹지과	'96 감사지적 사항 시정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문 소공원에서 무의탁 노인분들을 위해 점심 시간마다 독지가가 빵과 우유를 지급하고 있는데, 추운 겨울날 노인분들이 공원 벤취에 앉아 음식을 먹는 모습은 민선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됨. '96년도 정기회 구정질문시 구청장이 노인분들을 위한 장소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97. 11. 30현재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연로한 노인분들을 위해 조속한 장소마련을 촉구함.

II. 行政事務 監査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총무국) 총 무 과	구청 주차타워 이용실적 및 관리상태	<p>-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5. 3. 20 서대문구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구청 주차난 해소의 일환이라는 명목하에 구청을 내방하는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해오고 있는 상태이며,</p> <p>'95. 9.13 훈령 제51호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설주차장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나 사용료의 징수는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사항이라 판단됨.</p> <p>청내 주차타워의 경우 공사비 249,600천원을 들여 건축한 후 2명의 직원이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타워의 유지보수비로 연간 8,244,500원이 소요되고 있음. 하지만 이용실적은 구청직원 정기이용이 월 15대(월 300,000원), 민원인 이용이 월 평균 575대(월 925,000원)임.</p> <p>구청직원 및 내방객의 편의도모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지만 연간 수입은 13,179천원밖에 되지 않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는 연간 37,482천원이나 소요되고 있으므로 열악한 서대문구의 재정을 고려할 때 시급히 주차타워 운영방법의 개선이 요구됨.</p>
사회진흥과	체육시설 관리	<p>- 현저동 산복도로 옆에 위치한 테니스장은 관리가 상당히 허술한 상태임.</p> <p>부설 화장실에서는 오수가 정화되지 않고 흐르고 있으며 파손된 세면장에서 내려오는 물은 축대를 타고 흘러내려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음. 또한 각종 쓰레기들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쌓아놓고 있으며 심지어 소각까지 하고 있는 상태임.</p> <p>토·일요일에는 테니스장에서 취사행위까지 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항들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함.</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부 서 명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약수터 관리 상태	<p>- 우리구 관내에는 용천 약수터외 33개소의 약수터가 있으며 이에 대해 년 4회(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p> <p>하지만 '97. 11. 현재 3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약수터 관리카드에는 2회 검사('97. 4. 4. '97. 7. 1)결과만 기록하고 3/4분기 검사('97. 10.10)결과는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음.</p> <p>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 수질관리 및 약수터 주변 환경관리에 좀더 세심한 관리가 요망됨.</p>

II. 行政事務 監査

4) 건의사항

부서명	건의 및 기타 사항	비고
(시민국) 가정복지과	<p>- 산업의 발전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음.</p> <p>우리구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45개 어린이집에 11억 여원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구립 어린이집에 입학한 아동들의 현황 및 내역, 변동사항들을 감독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종사자, 등록 아동별 지원사항, 시설 개보수비 지출 등에 있어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을 건의함.</p> <p>또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린이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설치를 건의함.</p>	
	<p>- 관내 15개 구립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들의 매월 출석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으나 어린이들의 출석율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건의함</p> <p>또한 구립 어린이집 아동들의 경우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이 많으므로 분기별로 보건소에서 출장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p>	
	<p>- 청소년 공부방의 대체적 활용</p> <p>'96년도 행정 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사항이었으나 '97년도 청소년 공부방 이용율을 보면 47%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할 실정임.</p> <p>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 청소년 공부방을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유아시설 또는 노인복지 시설로 변경 운영할 것을 건의함.</p>	
환 경 과	<p>- 환경과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97. 10. 31 현재 33,709건에 2,779,484천원이 부과되었으나 환경 개선비용 부담금 모두가 국고수입으로 되고 부담금 부과에 따른 제반경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일임</p>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부 서 명	건의 및 기타 사항	비 고
	<p>로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건의함.</p> <p>환경개선비용 부담금액중 최저 30% 정도는 구비에 편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p>	
(도시정비국) 주택개량과	<p>-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새입자 등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대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13평형 임대아파트를 계속해서 건축한다는 것은 재정과 자원의 낭비라 사료됨.</p> <p>우리구에서 먼저 시대변화 맞게 상향조정하여 주민들의 주거욕구를 적극 반영할 것을 건의함.</p>	
교통지도과	<p>- 우리구청에서는 불법주차로 견인한 차량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견인 차량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으나, 견인차량 보관비에 관한 위 계약 제5조 2항 나목(납입시기)의 내용을 검토한 바 분기별 위탁관리비를 분기 초에 선불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용료 성격상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후불지급하여야 할 것임.</p> <p>- 또한 상기 위탁 관리계약서 제5조에 의거 불법주차 견인차량 보관비를 '96. 1. 1~'98. 12. 31(3년간)까지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열악한 서대문구 재정을 고려할 때 과대한 부담이므로 자체 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 운영하여 경영수지 개선과 예산 절약 효과를 꾀할 수 있기를 건의하니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p> <p>※ 우리구 견인차량 보관비 분담액</p> <p>1996년 99,886,000원</p> <p>1997년 132,574,500원</p> <p>1998년 161,172,000원(예정 분담액)</p>	
	<p>- 버스전용차로 단속원들은 매연 등으로 인한 열악한 조건하에서 눈이오나 비가오나 가림막 하나 없이 근무하고 있음.</p> <p>도시미관과 사후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속원 초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Ⅱ. 行政事務 監査



부 서 명	건 의 및 기 타 사 항	비 고
건 축 과	<p>- 우리구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만성적인 장기미준공 건물이 많이 있음.</p> <p>위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도 필요하지만 구민화합의 차원에서 미준공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민원이 없고 경미한 사유로 인한 미준공 건물에 대해 담당 국장의 책임하에 준공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건설국) 건설관리과	<p>- 불법 현수막등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지나치게 훼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관내 22개동중 6개동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설치 되어 있으나 지역별 형평에 맞지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p> <p>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추가 설치와 불법 현수막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건의함.</p>	

Ⅲ. 民願處理

○ 請 願

請願은 주민이 地方議會에 일정한 意見 또는 希望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權利 또는 利益이 侵害되었다고 할때 구제를 호소하는 하나의 住民權利이다. 請願은 議員 1인의 紹介가 있어야 하며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은 의회의 審議議決대상이 된다.

○ 陳 情

진정은 주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서는 지방의원의 소개없이 자유로이 제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은 아니다.

1. 現 況

총 계	청 원				진 정			
	소계	처리	미처리	반려	소계	처리	미처리	반려
15	3	2	.	1	12	12	.	.



2. 請願處理

■ 문화촌아파트재건축공사로인한피해대책요구청원

가. 청원요지

- 접 수 : 1997. 4. 4
- 청 원 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3동 10 - 10 이성규외 9인
- 소개의원 : 홍성덕
- 청원내용
 - 홍제동 문화촌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발주하고 고려산업(주)에서 시공하는 아파트공사로 인한 폭음과 진동으로 주변 건물이 균열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 청원인들 및 책임질 수 있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답사 실태를 파악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 대책 요구
 - 시공사측의 책임자와 구청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원만히 해결하여 달라는 청원임.

나. 심사경과

- '97. 4.26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다. 심사결과

본 청원건은 청원인과 시공사측대표와 우리구의회 의원 3명(김영일 의원, 정연식 의원, 최광진 의원)으로 구성하여 양측과 합의하도록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재석위원 9명 전원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



■ 홍제3구역내일부토지제척요구청원

가. 청원요지

- 접 수 : 1997. 4.25
- 청 원 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4동 109 - 1 김충태외 1인
- 소개의원 : 이진수
- 청원내용
 - 홍제4동 109-11 홍제3구역 재개발조합 진입로가 당초 20m로 서울시에 신청하였으나 서울시의 심의에 의거 18m로 축소 결정되어 종전대지가 구역 경계선과 진입로 18m 도시계획선 사이에 위치하게 된 면적 32㎡가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음.
 - 위 면적 32㎡는 조합에서는 별 효용이 없으나 홍제동 109-1호 대지 150㎡와 합하여 신축을 해야만 이용가치가 있으므로 위 면적 32㎡를 하루빨리 홍제3재개발구역에서 제외(구역변경)하여 청원인에게는 재산적 손실이 없도록 하고, 조합의 효과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결하여 달라는 청원임.

나. 심사경과

- '97. 4.26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다. 심사결과

본 청원건은 홍제3구역내 일부 토지 제척요구 청원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고 구청으로 이송하기로 재석위원 9명 전원만장 일치로 의결하였음.

Ⅲ. 民願處理

3. 陳情處理

접 수		건 명	진 정 인		처 리 결 과
연번	년월일		성명	주 소	
1	'97 2.11	서대문 독립공원 확장 보상에 대한 이의	정낙용	서대문구 현 저 동 62-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에 관한 시행령에 의해 평 가된 보상금액에 대해 이 해관계인의 입회하에 재감 정하기로 통보
2	'97 4.11	상가 신축공사로 인 한 다세대주택 건물 피해 구제 요구	황학모 외 5인	서대문구 홍제1 동 158- 39	홍제동 158-33의 건축물에 대한 반복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당사자간 보수비등 은 건물구조안전진단 결과 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3	'97 4.16	학교법인 인창의숙 정문에 신축예정인 건물의 학교환경 저해 예상에 따른 진정	인 창 의 숙 이사장	서대문구 충정로2 가 70	학교정문앞에 신축예정인 건축물의 앞에 부지를 매 매토록 의견조정 하였으나 민원인과 건축주간의 민사 적인 사안임
4	'97 7.24	북가좌동에 종점을 두고 있는 150번 버 스노선의 단축.개편 에 대한 반대의 주 민 집단진정	여중구 외3632 인	서대문구 북가좌 2 동 5-204	이용시민 및 시.군.구의원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50 번 버스의 노선개선안에 대한 자치구 반대의견서 (기존노선 존치)를 서울시 에 제출함
5	'97 8.14	홍제동 10-8 신축 공사로 인한 피해 구제 요청	김인수	서대문구 홍 제 동 10- 12	서울시에서 직접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될 예 정임
6	'97 12. 8	서대문구 북가좌동 에 보건소 분소설치 에 대한 반대 진정	김우정 외91인	서대문구 북가좌동 108- 1	보건소 분소 설치계획이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임을 통보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접 수		건 명	진 정 인		처 리 결 과
연번	년월일		성명	주 소	
7	'97 12. 8	서대문구 대현동 럭키아파트 문제해 결에 대한 질의	나동일 외143 인	서대문구 대 현 동 럭키아 106-111	주택개량과에서 '85.5월까지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통보함
8	'98 3. 3	무허가 영업 당구장 폐쇄 요청	김동수 외6인	서대문구 충정로3 가 189-8 삼오당구 외6개소	· '98.3.4관계규정에 의거 경찰서 고발 · '98.3.9서대문 세무서에 미신고영업 신고 · '98.3.9한국전력공사 및 수도사업소에 단전 단수 조치 요청
9	'98 3.13	토지소유주의 주거 이주(철거) 요청에 따른 이주비, 건축 (가옥)비 보상 요구	강신완 외150 인	서대문구 홍은3 동 산11-17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요구는 민사소송상의 재산권 행사로 보상 불가
10	'98 3.18	상가 신축공사로 인 한 다세대주택 건물 피해 구제 요구	황학모 외 5인	서대문구 홍제1 동 158- 39	홍제동 158-33의 건축물에 대한 반복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당사자간 보수비등은 건물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11	'98 3.20	홍제4구역 재개발 아파트공공임대주택 입주권 요구	이복지	은 평 구 응암1동 73- 19	입주전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어 관계규정에 의거 입주권 상실
12	'98 3.28	남가좌제6구역주택 재개발사업인접도로 폐쇄등 담장공사 중지 및 구도로 복원 요구	정상연 외23인	서대문구 남가좌동 80-43	해당 도로는 재개발사업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역부지로 되어 있어 도로 원상 복구는 불가능하나 조합과 민원인간 협의하에 원만한 합의 검토

IV. 議員 海外訪問視察 및 세미나

1. 議員 海外訪問視察

가. 시찰현황

시찰기간	시찰국가	시찰목적	시찰인원	비 고
(제 1 차) '97.10. 5 ~ '97.10.10 (5박6일)	중 국 · 북경시 해전구 · 길림성 훈춘시	국제자매결연 우호증진 및 중국의회 제도 운영 실태 견학 등 상호 협력 체제 기반 조성	(11명) · 의원 10명 · 직원 1명	
(제 2 차) '97.11.15 ~ '97.11.20 (5박6일)	중 국 · 북경시 해전구 · 길림성 훈춘시	국제자매결연 우호증진 및 중국의회 제도 운영 실태 견학 등 상호 협력 체제 기반 조성	(10명) · 의원 8명 · 직원 2명	

나. 일반현황

(중국 북경시 해전구 인민정부)

- 위 차 : 북경시 서북부
- 지형형세 : 서고동저(西高東低), 평지가 4분의 3 점유, 그 이외는 산지와 구릉지역
- 면 적 : 426km²(서대문구 면적의 약 23배)
- 인 구 : 144만 3천명
- 행정구역 : 13개 鄉 17개 街道 事務處
- 공무원수 : 1,911명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 조 직 : 구장 1명, 부구장 8명, 국급영도 41명
- 교육기관 : 550개소
(소학교 194개소, 중등교육학교 83개소, 고등교육학교 136개소, 대학교 10개소, 과학연구소 138개소)
- 문 화 재 : 100여곳(명승고적 포함)
- 특 성
 - 과학연구단지 밀집 : 138개소 (과학연구 인원 38만명)
 - 신기술개발 시험구 육성
 - 중관촌 전자중심가 형성 (중관촌 과학지구)
 - 북경시 신기술산업 개발 시험구(100 km) [88년 5월 국무원 지정]
 - 신기술 개발 기업체 육성 (기업수 3,000여개)
 - 지역별 경제개발
 - 북부 : 신농촌 경제지구
 - 중부 : 과학기술 산업지구
 - 남부 : 상업 경제지구
 - 북경시의 부식 식품기지
 - 명승지 및 문화재 밀집지역
 - 명승고적지 : 이화원, 원명원, 조어대, 원대토성유적지, 향산, 옥천산, 벽운사, 와불사, 대종사, 오탑사등
 - 문 화 재 : 국가중점 보호급(3개소), 시급(28개소), 구급(8개소)
 - 관광역행업 발달
 - 대외 여행업체수 : 80여개소(북경시 여행업의 25%)
 - 외국인 관광객 유치수 : 340만명('96현재)
 - 여행업체 연간수입 : 2.1억원
 - 문화교육 발달
 - 타아유치원 : 400여개소
 - 소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 550여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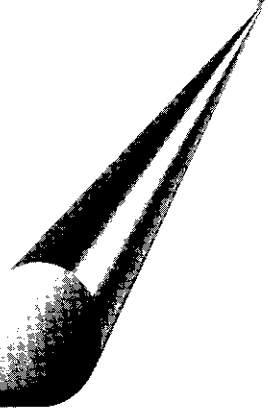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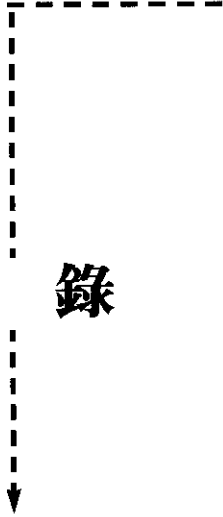
IV. 議員 海外訪問 및 세미나

2. 議員 세미나

기 간	장 소	주 제	강 사	참석인원
'97. 3.24 ~ '97. 3.27 (3박4일)	· 강릉시 의회 · 삼척시 의회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및 자치단체의 행정 업 무추진 등에 대한 비교 시찰	부산외국어대 김수일 교수	(16명) · 의원 12명 (운영위원회) · 직원 4명
'97. 4. 8 ~ '97. 4.11 (3박4일)	· 여수시 의회 · 해남군 의회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및 자치단체의 행정 업 무추진 등에 대한 비교 시찰	목포대학교 서용석 교수	(16명) · 의원 12명 (시민건설위) · 직원 4명
'97. 4.14 ~ '97. 4.17 (3박4일)	· 경주시 의회 · 광양시 의회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및 자치단체의 행정 업 무추진 등에 대한 비교 시찰	부산외국어대 김수일 교수	(16명) · 의원 12명 (총무위원회) · 직원 4명
'97. 7. 3 ~ '97. 7. 5 (2박3일)	일성콘도 (강원도 속초시 소재)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능률적인 의정 활동 제고	경동대학교 이민성 교수	(40명) · 의원 27명 · 직원 13명
'97.11.22 ~ '97.11.23 (1박2일)	수안보상록호텔 (충북 충주시 소재)	97년도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98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원 세미나	국회의정 연 수 원 최민수 교수	(36명) · 의원 27명 · 직원 9명



附 錄



서대문구의회 · 구청 전화번호

구의회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의 장	364-5900	사 무 국	의 정	364-5902, 390-4460
부 의 장	364-5901		의 사	364-5903, 390-4461
사 무 국 장	364-5904		의 안	364-5904
전 문 위 원	364-5903~4		F A X	364-5049

서대문구청

관 · 과		일반전화	행정	관 · 과		일반전화	행정		
구 청 장		324-5994		총 무		324-6343			
		336-5878				330-1310	310		
		330-1303	303			330-1311	311		
		330-1333	333			인 사	330-1312	312	
부 구 청 장		324-7742		무		330-1323	323		
		330-1304	304			330-1329	329		
		330-1334	334			자 치 행 정	330-1313	313	
감 사 담 당 관	감 사	330-1470	470	과		330-1314	314		
		330-1471	471			330-1629	629		
	조 사	330-1472	472			대 외 협 력	330-1630	630	
		330-1473	473			사 회 진 흥	330-1320	320	
	민 원 관 리	330-1566	566			(FAX)	330-1321	321	
		(FAX)	330-1565				(FAX)	330-1449	
		구청기동처리반	330-1414			414	기 획 예 산 과		기 획
민원자동응답	330-0120		330-1316	316					
행 정 관 리 국 장		324-7455		예 산	330-1317	317			
		330-1305	305	법 제	330-1318	318			
		330-1335	335	전 산	330-1319	319			
				(FAX)	330-1442				
				전 산 실	330-1369	369			
				330-1460	460				
				자 료 실	330-1439	439			
				330-1459	459				

부 록



관 · 과		일반전화	행정	관 · 과		일반전화	행정	
문화체육관광	공보	330-1410	410	민재난방관리위과	민방위	330-1324	324	
		330-1411	411		재난관리	330-1325	325	
	문화관광	330-1412	412		교육훈련	330-1326	326	
		330-1577	577		안전지도	330-1328	328	
	(FAX)	330-1430			병사	330-1327	327	
	시설운영	391-9032		재무국장		330-1306	306	
	생활체육	330-1322	322-4			330-1336	336	
	체육회관	395-8231		재무과	재산관리	330-1340	340	
	문화회관	330-1551	551				330-1341	341
		330-1560	560		계약	330-1342	342	
	330-1561	561				330-1343	343	
	(FAX)	391-9031			지출	330-1344	344	
	문화의집	3217-0359					330-1553	553
	독립공원	330-1626	626	(FAX)	330-1429			
민원봉사과	문서관리	330-1435	435	세무과	세무 1	330-1345	345	
		330-1436	436				330-1346	346
		330-1437	437		세무 2	330-1347	347	
	민원처리	330-1421	421				330-1348	348
		330-1422	422		세무 3	330-1349	349	
		330-1423	423				330-1554	554
	호적	330-1424	424		조사평가	330-1557	557	
		330-1425	425	(FAX)		330-1707		
		330-1426	426	세무과	정리	330-1350	350	
	(FAX)	330-1596				330-1351	351	
	333-4409		과징 1		330-1352	352		
	전화민원	332-3001					330-1353	353
		333-3001				과징 2	330-1354	354
		330-1301	301	과징 3	330-1575		575	
330-1302		302	지식과		지정	330-1450	450	
1회민원	322-8282			330-1451		451		
자동응답(ARS)	330-1114			토지관리	330-1452	452		

부 록

관·과		일반전화	행정	관·과		일반전화	행정
지 적 과	지 적 관 리	330-1495	495	청 소 행 정 과	서 무	333-6000	
	지 가 조 사	330-1496	496			330-1375	375
	건 축 물 관 리	330-1497	497		작 업	330-1376	376
	(FAX)	330-1498			재 활 용	330-1377	377
생활복지국장		330-1307	307		장 비 관 리	330-1378	378
		330-1337	337		폐 기 물 관 리	330-1564	564
사 회 복 지 과	사 회	330-1355	355		(FAX)	330-1712	
		330-1356	356		청 소 차 고	373-2773	468
	복 지	330-1357	357		재 활 용 센 타	394-8272	
		330-1358	358		도 시 관 리 국 장		330-1308
	가 정 복 지	330-1490	490		330-1338	338	
		330-1491	491	주 택 과	주 택	330-1380	380
	부 녀 청 소 년	330-1492	492			330-1381	381
		330-1493	493		주 택 관 리	330-1382	382
(FAX)	330-1619		주 택 정 비		330-1383	383	
			(FAX)		330-1634		
환 경 위 생 과	식 품 위 생	330-1360	360	주 택 개 량 과	대 기 실	330-1463	463
		330-1361	361			개 량 1	330-1384
	공 중 위 생	330-1362	362				330-1455
		330-1363	363		개 량 2	330-1456	456
	위 생 관 리	330-1364	364			주 거 환 경	330-1457
	환 경 관 리	330-1370	370	(FAX)	330-1624		
		330-1371	371	추 진 반	330-1587	587	
	수 질 보 전	330-1372	372	도 시 정 비 과	도 시 계 획	330-1385	385
대 기 보 전	330-1373	373				330-1386	386
(FAX)	330-1597		광 고 물 관 리		330-1387	387	
지 역 경 제 과	상 공	334-0700			보 상	330-1401	401
		330-1365	365				330-1402
	유 통 관 리	330-1366	366		가 로 정 비	330-1446	446
	연 료	330-1367	367		(FAX)	330-1636	
	(FAX)	330-1368	368	중 기 등 록	330-1559	559	
취 업 정 보	330-1419	419	대 기 실	330-1573	573		
			신 촌 초 소	320-3864			

부 록

관 · 과		일반전화	행정	실 · 관 · 과		일반전화	행정
건 축 과	건 축 관 리	330-1390	390	공 원 녹 지 과	대 기 실	330-1394	394
		330-1391	391			330-1622	622
	건 축 1	330-1392	392			330-1572	572
	건 축 2	330-1393	393	수 경 제 배 장	330-1576	576	
	영 선	330-1448	448	교 통 행 정 과	교 통 행 정	330-1481	481
	건 축 민 원 실	330-1567	567			330-1482	482
		330-1568	568		교 통 시 설	330-1483	483
(FAX)	330-1440		자 동 차 정 비		330-1627	627	
건 설 교 통 국 장	330-1309	309	330-1628		628		
	330-1339	339	자 동 차 등 록	330-1444	444		
토 목 과	토 목	330-1405	405	330-1484	484		
		330-1406	406	(FAX)	330-1445		
	도 로 관 리	330-1407	407	교 통 지 도 과	주 차 관 리	330-1485	485
		330-1562	562			330-1486	486
	도 로 조 병	330-1563	563		교 통 과 징	330-1487	487
	(FAX)	330-1615	330-1617			617	
금 화 터 널	363-6866		운 수 지 도		330-1618	618	
대 기 실	364-5965		(FAX)	330-1638			
하 수 과	하 수	330-1415	415	주 차 단 속 원 실	330-1432	432	
		330-1416	416	330-1595	595		
	하 수 과 징	330-1417	417	버 스 전 용 차 선 실	330-1582	582	
		330-1418	418		330-1589	589	
	관 리	330-1399	399	실			
		330-1400	400	구 정 연 구 위 원 실	338-0712		
	(FAX)	330-1547	330-1499		499		
대 기 실	330-1580	580	330-1500		500		
공 원 녹 지 과	공 원	330-1395	395	종 합 상 황 실 (당 직 실) (FAX)	333-4599	300 330	
		330-1396	396		337-2000		
	녹 지	330-1397	397		330-1300		
	조 경	330-1433	433		330-1330		
	(FAX)	330-1750			336-0425		
녹 립 공 원	330-1398	398					

부 록

실·외부기관	일반전화	행정	외부기관	일반전화	행정		
실			서대문경찰서	362-2345	465		
대회의실	330-1431	431	서부경찰서	359-4100	466		
기획상황실	330-1570	570	홍연파출소	334-0112	467		
지하상황실	330-1434	434	서부건설사업소	303-8461			
공직자윤리위원회	330-1438	438	은평수도사업소	730-3852			
전화기계실	330-1331	331	서대문구의료보험조합	326-0658	571		
	330-1332	332	서대문등기소	382-0153			
전기실	330-1374	374	서대문세무서	287-4200			
기관실	330-1474	474	서무세무서	380-0200			
등사실	330-1475	475					
운전기사대기실	330-1477	477	보 건 소				
	330-1478	478	소 장	362-3534			
위생원실	330-1359	359		390-4421	421		
주차타워	330-1420	420	보건행정과	보건기획	390-4422	422	
청사정문	330-1593	593			390-4410	410	
청사후문	330-1594	594		운영	390-4411	411	
증대본부	330-1479	479		방역	390-4412	412	
증지판매	330-1409	409		(FAX)	392-2137		
구내식당	330-1591	591	보건지도과	보건지도	390-4424	424	
	330-1592	592			390-4425	425	
청소노조지부	324-7685	464			가족보건	390-4426	426
구내약국	330-1488	488			건강관리	390-4427	427
구내상업은행	324-1318	428	의약과	의무	390-4423	423	
여행사	3142-2500				390-4440	440	
체력단련장	330-1598	598		약무	390-4441	441	
				검진	390-4442	442	
외 부 기 관			결핵관리실	390-4428	428		
갑구선거관리위원회	330-1379	379		390-4429	429		
	324-5841		예방접종실	390-4430	430		
을구선거관리위원회	330-1389	389	검진실	390-4431	431		
	335-5203						
민주평화통일협의회	330-1590	590					
	324-3467						

부 록

보 건 소	일반전화	팩정	동	일반전화	팩정
영 · 유 아 실	390-4432	432	북아현제3동 (FAX 363-4916)	363-4913 ~5	511 512
	390-4433	433			
모 성 실	390-4434	434	대 신 동 (FAX 363-7545)	363-7542 ~4	513 514
가 족 계 획 실	390-4435	435	창 천 동 (FAX 363-5850)	363-5851 ~3	515 516
내 과	390-4443	443	연희제1동 (FAX 322-1384)	322-1381 ~3	517 518
치 과	390-4444	444			
물 리 치 료 실	390-4445	445	연희제2동 (FAX 322-3349)	322-3346 ~8	519 520
임 상 병 리 실	390-4446	446	연희제3동 (FAX 322-3124)	322-3121 ~3	521 522
	390-4447	447			
방 사 선 실	390-4448	448	홍제제1동 (FAX 394-4544)	394-4541 ~3	523 524
약 국	390-4449	449	홍제제2동 (FAX 733-2794)	733-2791 ~3	525 526
민 원 안 내	390-4414	414	홍제제3동 (FAX 394-3274)	394-3271 ~3	527 528
당 직 실	390-4415	415			
기 사 대 기 실	390-4416	416	홍제제4동 (FAX 391-6573)	395-0201 ~3	529 530
기 관 실	390-4417	417	홍은제1동 (FAX 3216-4494)	3216-4491 ~3	531 532
전 화 기 계 실	390-4300	300			
동	일반전화	팩정	홍은제2동 (FAX 396-4214)	396-4211 ~3	533 534
충정로동 (FAX 363-2145)	363-2142 ~4	501 502	홍은제3동 (FAX 396-4814)	396-4811 ~3	535 536
천연동 (FAX 363-2536)	363-2533 ~5	503 504	남가좌제1동 (FAX 375-7504)	375-7501 ~3	537 538
북아현제1동 (FAX 363-4254)	363-4251 ~3	507 508	남가좌제2동 (FAX 375-6225)	375-6222 ~4	539 540
북아현제2동 (FAX 363-4276)	363-4273 ~5	509 510	북가좌제1동 (FAX 374-7244)	374-7241 ~3	541 542
			북가좌제2동 (FAX 375-4184)	375-4181 ~3	543 544

서울시 민원전화는 국번없이 120번으로

서울시 행정과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 또는 궁금한 사항을 전화로 상담·문의하고자 하실 때에는 서울시 「120 민원전화」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 본 청 : 국번없이 120번
 - └ 자치구 : 해당국번 + 0120번

전화번호 및 코드 번호	민원내용
1번+#→	수도민원
2번+#→	교통민원
3번+#→	의학정보제공
4번+#→	행정법규상담
5번+#→	주택상담
6번+#→	관광안내
7번+#→	도시계획상담
8번+#→	지방법률상담
9번+#→	지방세세무상담
10번+#→	건축상담
11번+#→	중소기업지원및구인구직안내
12번+#→	시정안내
13번+#→	공직자부조리신고
14번+#→	생활관련신고및고발
15번+#→	시설물훼손신고

- [이용요령] • 버튼식(전자식) 전화기로 국번없이 120번을 누르십시오.
 •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이용코드번호와 전화기 0번 오른쪽의 “#”을 누르시면 해당상담센터에 전화가 연결됩니다.

- [운영시간] • 상수도민원, 교통민원, 의학정보제공은 24시간 운영하고 그밖의 민원신고 및 상담은 근무시간중에만 운영합니다.

서울시 각 구청 전화번호

구 청	구청장실	대표전화	당직실	일반민원 (시민봉사실)	총무과	보건소	각구의회
중 로	731-0333	731-0114	732-2000	731-0435	731-0310	725-6982	723-6813 ~ 5
중 구	260-1303	260-1114	266-2000	260-1301	260-1310	250-4401	269-3103 ~ 7
용 산	710-3333	710-3114	710-3300	710-3301	710-3422	710-3422	790-4381 ~ 6
성 동	290-7333	290-7114	290-7300	290-7435	290-7422	290-7422	299-1544 ~ 7
광 진	450-1333	450-1114	453-0001	450-1301	450-1422	450-1422	450-1441 ~ 7
동 대 문	920-4303	920-4500	920-4300	922-3001	920-4420	920-4420	214-8040 ~ 5
증 랑	490-3303	490-3114	490-3300	433-3001	490-3422	490-3422	3423-2091 ~ 4
성 북	920-3333	920-3500	920-3300	920-3301	941-2672	941-2672	927-8094 ~ 7
강 북	901-6333	995-0120	901-6300	901-6435	901-6422	901-6422	901-6441 ~ 7
도 봉	901-5333	903-3001	901-5300	901-5301	901-5422	901-5422	997-8813 ~ 8
노 원	950-3333	950-3114	950-3300	938-3301	950-3422	950-3422	950-3441 ~ 7
은 평	389-2000	350-1399	389-2000	350-1301	350-1691	350-1691	350-1441 ~ 7
서 대 문	330-1333	330-1114	330-1300	332-3001	390-4411	390-4411	364-5900 ~ 4
마 포	324-2000	330-2114	330-2300	330-2301	330-2422	330-2422	325-1987 ~ 8
양 천	650-3333	650-3114	650-3300	645-3001	650-3422	650-3422	652-7234 ~ 5
강 서	603-0001	600-6114	602-2000	600-6435	3664-6932	3664-6932	654-0920 ~ 2
구 로	860-2333	860-2114	856-2000	853-3001	860-2266	860-2266	852-0272 ~ 4
금 천	890-2303	890-2114	890-2300	890-2435	890-2422	890-2422	896-5765 ~ 7
영 등 포	670-3333	670-3114	633-2000	634-3001	630-0311	630-0311	670-3446 ~ 7
동 작	814-2000	820-1114	814-0001	820-1301	820-1422	820-1422	823-6492 ~ 4
관 악	888-0001	880-3114	874-2761	877-3001	874-2761	874-2761	880-0600 ~ 4
서 초	570-6333	570-6462	588-2000	570-6301	570-6572	570-6572	570-6670 ~ 80
강 남	510-1333	510-1114	545-2000	510-1420	3451-2510	3451-2510	561-9947 ~ 9
송 파	415-0881	410-3114	410-3300	410-3434	410-3422	410-3422	203-1811 ~ 4
강 동	478-2000	480-1114	477-0001	476-3001	224-0710	224-0710	224-9001 ~ 2

※ 기타 전화번호는 “대표전화”에 문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특별시 의회

직 책	전 화 번 호	직 책	전 화 번 호
의 장	723-6981~2	의 사 담 당 관	3702-1298
사 무 처 장	3702-1236	의 안 담 당 관	3702-1366
의 정 담 당 관	3702-1241		

시의원 명단

선 거 구	성 명	소속상임위원회	전화번호
제1선거구 (충정로동, 천연동, 현저동, 북아현제1,2,3동, 대신동, 창천동)	주 세 만	운영, 교통위원회	362-8860
제2선거구 (연희제1,2,3동, 홍제제1,2,4동)	이 강 옥	운영, 건설위원회	322-0678
제3선거구 (홍제제3동, 홍은제1,2,3동)	김 옥 원	교통위원회	302-8820
제4선거구 (남가좌제1,2동, 북가좌제1,2동)	신 경 식	행정자치위원회	754-0058

유관기관 및 각종 안내전화

서울지방경찰청 서부지청

(마포구 공덕동 105-1)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국민 생활 침해 사범 신고	773-3333	3 호 수사관실	711-4387
지청장실	706-1691	공안과장실	711-4382
차장검사실	706-1692	공안과	711-4383
형사제1부장실	706-1693	사건과장실	706-8656
형사제2부장실	706-1694	사건과	706-8657
특별수사부장실	706-1695	집행과장실	706-6740
사무국장실	706-8291	집행과	711-4381
서무과장실	706-8292	법률구조공단	
수사과장실	711-4384	서부직할출장소	
1호수사관실	711-4385	자동상담실	700-2080
2호수사관실	711-4386	법률상담실	713-6009
		전담번호사실	707-3749

서대문경찰서

(미근동 163)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서장실	635-2345	형사과	393-1683
경무과	363-0310	교통과	313-9395
민원실	362-4400	경비과	362-2546
위민실	362-7000	정보과	362-4450
방범과	362-6443	보안과	361-0113
방범순찰대	312-2418	경우회	362-2368
수사과	362-2548	경목실	363-1313

부 록

서부 경찰서

(은평구 녹번동 177)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서	장	실	359-4100	정	보	과	387-0326
경	무	과	357-2527	보	안	과	384-0113
민	원	봉 사 실	358-0112	경	목	실	355-8956
경	비	과	385-9191	방	범	순 찰 대	386-5210
교	통	과	359-0663	청	소	년 지 도 육 성 회	359-4941
방	범	과	384-0672	청	소	년 상 담 실	359-7000
수	사	과	386-3766	경	우	회 모 범 운 전 자 회	355-8876
형	사	과	386-0330	모	범	운 전 자 회	372-2578

파 출 소

파출소명	관할지역	전화번호	파출소명	관할지역	전화번호
충정로파출소	충정로일부	362-3557	연 공 파 출 소	연희2동	334-0113
의주로파출소	충정로일부, 미근, 합동	362-3558	연 회 파 출 소	연희3동 일부	334-5169
독립문파출소	영천, 옥천동	363-5316	홍 연 파 출 소	연희3동 일부	334-0112
천 연 파 출 소	냉천, 천연동	363-2513	홍 은 1 파 출 소	홍은1동	3216-9947
현 저 파 출 소	현저동	363-6696	홍 은 2 파 출 소	홍은2동	395-1775
북아현1 파출소	북아현1동	362-1615	홍 서 파 출 소	홍은3동 일부	303-9902
북아현2 파출소	북아현2동	362-4476	홍 남 파 출 소	홍은3동 일부	391-5568
북아현파출소	북아현3동	362-3559	홍 제 파 출 소	홍제1동	396-5247
대 신 파 출 소	대신동일부 신촌, 봉원동	393-0113	안 산 파 출 소	홍제2, 4동	735-8254
대 현 파 출 소	대신동일부	363-0469	문 화 촌 파 출 소	홍제3동	379-6737
신 촌 파 출 소	창천동	392-2113	남 가 좌 1 파 출 소	남가좌1동	373-4762
연 회 1 파 출 소	연희1동일부	336-0113	남 가 좌 2 파 출 소	남가좌2동	373-4113
서 연 파 출 소	연희1동일부	324-7110	북 가 좌 1 파 출 소	북가좌1동	372-5488
			신 가 파 출 소	북가좌2동일부	372-0520
			북 가 좌 파 출 소	북가좌2동일부	302-1443

부 록

서대문 세무서

(홍제동 251)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안 내	287-4612~3	재 산 세 과 장	287-4330
당 직 실	287-4611~2	재 산 1 계	287-4331~5
민 원 봉 사 실	379-2100	재 산 2 계	287-4341~4
F A X	287-4674	법 인 세 과 장	287-4400
서 장	287-4201~2	법 인 1 계	287-4401~5
총 무 과 장	287-4240	법 인 2 계	287-4411~5
행 정 계	287-4241~4	법 인 3 계	287-4421~5
징 세 계	287-4251~4	부 가 가 치 세 과 장	287-4500
소 득 세 과 장	287-4260	부 가 1 계	287-4501~5
소 득 1 계	287-4261~6	부 가 2 계	287-4511~5
소 득 2 계	287-4281~6	부 가 3 계	287-4521~5
		부 가 4 계	287-4541~2

서부 세무서

(은평구 응암동 84-5)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안 내	380-0114	소 득 세 1 과	380-0261~9
당 직 실	380-0611~2	소 득 세 2 과	380-0281~6
민 원 봉 사 실	380-0221~4	재 산 세 과	380-0330~6
F A X	352-9294	법 인 세 과	380-0400~5
서 장	380-0201~2	부 가 세 1 과	380-0501~5
총 무 과	380-0240~5	부 가 세 2 과	380-0561~8

부 록

은평수도사업소

(홍제 4동 산1-102)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소 장 실	730-3859	요 금 과	722-0655~7
총 무 과	730-3852~3	공 무 1 과	730-3854~6
민 원 상 황 실	730-3850	공 무 2 과	730-3857~8
상 황 계 (F A X)	722-3602	양 수 기 반	722-7136
관 리 과	720-9262~3		

서부교육청

(대현동 67-1)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교 육 장 실	362-1090	관 리 국 장	362-1201
학 무 국 장	362-1095	관 리 과 장	363-2751
초 등 교 육 과 장	362-0544	서 무 계	363-2755
초 등 교 육 계	364-6613	문 서 수 발 실	313-4507
유 아 교 육 계	392-6586	당 직 실	363-2751
학 사 계	363-2752	관 리 계	362-1420
중 등 교 육 과 장	364-6616	기 획 감 사 계	362-1432
중 등 교 육 계	362-0804	전 산 실	313-4908
교 육 상 담 실	362-5796	재 무 과 장	362-7289
과 학 기 술 계	312-2701	경 리 계	363-2753
사 회 체 육 과 장	362-9490	관 재 계	363-2754
사 회 교 육 행 정 계	362-1729	시 설 과 장	363-0170
사 회 교 육 지 도 계	364-8783	시 설 1 계	364-8784
체 육 청 소 년 계	362-7288	시 설 2 계	364-8785
학 교 보 건 계	364-8782	F A X	364-6057~9

부 록

..... ▲

서부소방서

(은평구 녹번동 48-5)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서	장	실	359-0119	북가좌파출소		372-0119	
소	방	과	355-1119	(북가좌 333 - 9)			
방	호	과	357-8509	연희파출소		336-0119	
F	A	X	382-1149	(연희 81 - 10)			
				홍은파출소		379-0119	
				(홍은2동 11-854)			

중로소방서

(중로구 수송동 146-2)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서	장	실	733-0119	서대문파출소		312-2119	
소	방	과	723-2124	(미근 1 6 5)			
방	호	과	722-0120				

서대문동기소

(은평구 용암동 95-1)

안 내	민원접수	F A X
382-0153	352-0999	355-0458

부 록

우 체 국

우 체 국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서 대 문 우 체 국	창천동 98-3	324-0014
총 정 로 우 체 국	총정로 2가 8-2	362-0014
신 촌 우 체 국	대현동 90-68	362-0205
홍 제 동 우 체 국	홍제1동 158-45	379-3790
모 래 내 우 체 국	북가좌2동 424-29	373-2005
연 회 동 우 체 국	연회2동 90-15	333-6004
연 대 우 체 국	신촌동 134	392-0205
이 대 우 체 국	대현동 11-1	312-0500
명 자 대 우 체 국	남가좌동 50-3	373-0182
경 찰 청 우 체 국	미근동 209	393-2001
홍 제 3 동 우 편 취 급 소	홍제3동 278-10	391-8910
홍 은 3 동 우 편 취 급 소	홍은3동 275-28	395-2749
홍 남 우 편 취 급 소	남가좌2동 338-39	307-2005
독 립 문 우 편 취 급 소	현저동 52-3	312-0225
홍 은 미 성 우 편 물 취 급 소	홍은3동 189-33	3216-6161
미 근 동 우 편 물 취 급 소	미근동 94-1	365-0315

전 화 국

전 화 국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광 화 문 전 화 국	홍제동 전지역	국번 + 0000
불 광 전 화 국	홍은, 남가좌, 북가좌지역	국번 + 0000
신 촌 전 화 국	기타지역	국번 + 0000

부 록

의료보험조합

(연희동 134-5 한일은행 2층)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대 표 이 사			338-1307	징 수 과			3141-2752~4
관 리 과			3141-4386~9	급 여 과			3141-4386~9
총 무 과			326-0658				

서대문도서관

(연희동 산2-113)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관 장 실			396-3156	열 략 과			396-3159
서 무 과			396-3157	관 의 대 출 실			379-8619
사 서 과			396-3158	F A X			391-6172

초 등 학 교

학 교 명	소 재 지	설립년도	전화번호
미 동 초 등 학 교	미근동 36	1896	364-6524
경 기 초 등 학 교	충정로2가 70	1965	336-2908
금 화 초 등 학 교	천연동 13	1924	364-9275
대 신 초 등 학 교	대현동 67-1	1965	363-1564
이 화 여 자 대 학 교 사 범	대신동 20	1955	312-5227
대 학 부 속 초 등 학 교			
창 서 초 등 학 교	창천동 53-1	1961	332-9531
북 성 초 등 학 교	북아현 2동 215	1941	362-0669
추 계 초 등 학 교	북아현 3동 190-1	1965	312-7701
연 회 초 등 학 교	연희3동 88-1	1968	336-4597
고 은 초 등 학 교	홍제1동 320	1971	395-6034
안 산 초 등 학 교	홍제2동 산 44	1962	735-3069
홍 은 초 등 학 교	홍제3동 286-5	1974	391-2196
홍 인 왕 초 등 학 교	홍제3동 245-1	1962	391-5972
홍 제 초 등 학 교	홍은1동 산 48	1937	3216-3354
홍 연 초 등 학 교	홍은3동 305	1975	379-6528
연 가 초 등 학 교	남가좌2동 224-228	1973	309-0587
명 지 초 등 학 교	남가좌2동 50-3	1967	309-1839
북 가 좌 초 등 학 교	북가좌1동 376-17	1969	372-4042

중 · 고등학교

학교명	소재지	설립년도	전화번호
인창중 · 고등학교	충정로 2가 69	1922	363-3393
동명여자중학교	천연동 31-1	1921	363-5042
금란여자중 · 고등학교	대신동 113	1960	392-4368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 · 고등학교	대신동 47	1955	392-2062
한성중 · 고등학교	북아현 1동 170-1	1928	363-4943
중앙여자중 · 고등학교	북아현 3동 190-1	1940	393-5128
서연중학교	연희1동 산 267-1	1985	332-7376
서울외국인학교	연희3동 55-1	1958	334-3660
신연중학교	연희3동 산 2-6	1987	379-9233
연북중학교	연희3동 산 141	1985	332-7377
한성화교중 · 고등학교	연희3동 89-1	1968	324-0664
홍은중학교	연희3동 186-3	1984	3216-0512
정원여자중학교	홍은3동 산 11-97	1969	379-4310
명지중 · 고등학교	홍은3동 354-1	1948	305-5953
명지여자중 · 고등학교	홍은3동 354-1	1969	303-9230
연희여자중학교	남가좌2동 368-1	1975	372-2992
한성과학고등학교	현저동 산5	1992	365-2851

대학교

학교명	소재지	설립년도	전화번호
경기대학교	충정로 2가 71	1957	390-5114
감리교신학대학	냉천동 31	1895	361-9114
연세대학교	신촌동 134	1885	361-2114
이화여자대학교	대현동 11-1	1886	360-2114
서울간호전문대학	홍제3동 287-89	1954	395-8012
명지대학교	남가좌2동 50-3	1970	300-1700
명지실업전문대학	남가좌2동 50-3	1974	300-1000
추계예술학교	북아현3동 190-1	1974	362-4513



지 하 철

역 명	전화번호	역 명	전화번호
신 촌 역	334-7001	홍 제 역	736-0517
이 대 역	313-9713	무 악 재 역	736-0518
아 현 역	313-9712	독 립 문 역	733-7457
충 정 로 역 (2호선)	313-9711	서 대 문 역	392-5927
충 정 로 역 (5호선)	362-2866	서 울 시 지 하 철 공 사	520-5114

기 차 역

역 명	전화번호	역 명	전화번호
신 촌 역	363-7788	가 좌 역	373-1280

관내소재 기타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경 찰 청	363-0112	서 대 문 형 무 소 역 사 관	363-9750-1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	3708-2525	종 합 사 회 복 지 관	375-5040
프 랑 스 대 사 관	312-3272	금 화 터 널 관 리 사 무 소	363-6866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390-7302	동 아 일 보	334-3689